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위촉연구원 : 송의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이주노동자·초국적 결혼·다문화·저출산·가족해체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중 하나는 가족유형의 다양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친부모가족은 안정적이고 그 외의 가족은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시각은 우리사회에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친부모가족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가족 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족유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가족유형에 속하는 자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자녀가 받는 심리적 소외감과 생활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 관심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이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망과 문제의 분석 그리고 대응책에 대한 포괄적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는 구체적으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할 정책내용을 학교생활 지원 정책, 가정생활 지원 정책, 지역사회 안전망 지원 정책, 위기가정 아동·청소년보호 지원 정책, 여가생활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고, 개발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 시행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다양화된 가족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됨으로써, 우리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성장동력으로 자라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구를 담당한 성운숙 박사와 김영한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주요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등이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분석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양친부모가정의 경우를 보면 가족과 학교에서의 생활 등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양친부모가정의 경우 맞벌이에 따른 가정문제 발생방지대책과 이혼, 별거 또는 가정폭력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복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장 문제되는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정이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역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모든 조사 분야에서 다른 가족유형의 자녀들에 비해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조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비교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삶이 현저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손가정 자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심각한 일탈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 양친부모가정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긍정적인 경우도 확인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긍정적이었다. 무엇보다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폭력, 협박, 갈취, 그리고 욕설 등 반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조손가정 자녀들의 빈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더욱이 폭력이나 갈취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조손가정 자녀들의 비율이 2~3배 정도까지 낮은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교육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유형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족유형별 맞춤형 정책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가족유형, 가족구조,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양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가족유형별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개별적 특징뿐만 아니라, 가족유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과 관련된 국내 및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문헌고찰과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실태조사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국내 및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의 비교·평가 분석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및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가족유형에 따른 외국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비교 분석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족유형이 변화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정책 및 제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7주의 모성휴직이 주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이 시행되고 있음. 독일의 정책이 특히 유의미한 것은 2011년 통과된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현장”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증시하고 있다는 점임. 일본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소하고자 예방적 가족복지정책이나 취업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책을 시행중에 있음.

○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의 경우 공통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필요가정 한시지원제도(TANF)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취하고 있음. 특히 TANF는 모자가정의 취업률 증가, 전반적인 가정수입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한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각 주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는 가족유형의 분류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나 지원보다는 가정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로부터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음. 즉 ‘전망 재취업’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미래지향적인 책임공동체로서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임. 일본의 경우는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한부모가정의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 분석

○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3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실태조사영역은 크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분하였음.

○ 가정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조손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그러나 한 달 용돈의 평균 금액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족관계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에 비하여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가출시도경험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학교생활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음. 반대로 학업중단 생각, 가해(욕설, 폭력, 따돌림) 경험 등 부정적 행위의 빈도는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았음.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불만이 편이나,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생활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수는 낮았음.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켜 가장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확인되었음.

○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음.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았음.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컴퓨터보유정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시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었으며 한 달 휴대전화이용요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기할만한 사실은 조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에 비해 아동·청소년들의 삶이 현저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조손가정 자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심각한 일탈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 양친부모가정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긍정적인 경우도 확인되었음.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긍정적이었음.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폭력,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에 있어서도 조손가정 자녀들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았음.

4. 정책제언

○ 양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과 청소년기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정책이 요구 됨. 또한 부모의 자녀이해를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부모·조손가정에 대한 반편견교육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설을 개편·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활동지원체계를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여 주말의 경우에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학교는 주말에 청소년 기관·단체 등에 학교를 개방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한 시설운영, 종사자 처우여건 등을 주말활동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첫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므로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인 18세미만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 및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여 통신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교육서비스, 부양서비스, 가사서비스, 가족관계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함.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한부모의 취업시간대에 게임중독 등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체계도 확보할 필요가 있음. CYS-Net과 같은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중심 지원체계에서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 지원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임. 셋째, 폭력·흡연·음주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문화활동, 정서함양,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간과하고 있는 재혼에 대한 장려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다섯째, 한부모가정 문제 중 자녀의 인성함양은 부모의 근로시간 중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책적으로 부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등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함.

○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체계내에서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며, 조부모의 학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학습지원, 건강악화를 감안한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함. 각 부처별로 노인, 아동·청소년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접근과 서비스가 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 학습증진, 조부모 가사 돌봄 서비스,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 외 조손가정 지원 정책은 양육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하

며, 학교생활 및 문제행동 부분에서는 세대간 차이에 의한 손자녀 이해한계 등 돌봄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해 부모의 역할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대리위탁 시행과 대부대모 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9
1. 현대사회와 가족구조 유형의 다양화	11
2. 가족유형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20
제3장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 분석 ...	27
1.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	27
2. 가족유형에 따른 해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 및 제도	43
제4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115
1. 조사 개요	117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26
3. 조사결과 분석	130
4. 소결	220
제5장 결론 및 제언	225
1. 결론	227
2. 제언	237
참고문헌	243
부 록	253

표 목 차

〈표 II-1〉 가구구성 및 가족형태	14
〈표 II-2〉 가구구성별 증감 추이	15
〈표 II-3〉 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16
〈표 II-4〉 이혼율 및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비율	17
〈표 II-5〉 한부모가구 분류 및 추이	17
〈표 II-6〉 조손 가구 시·도별 현황	18
〈표 III-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책 정부지원체계 현황 및 주요업무	31
〈표 III-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장지원체계 현황 및 주요업무	41
〈표 III-3〉 독일 자녀비 인상년도와 인상액 추이 상황	69
〈표 III-4〉 제 외국의 연령(3구분)별 인구의 비율	86
〈표 III-5〉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책의 개요	95
〈표 IV-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118
〈표 IV-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119
〈표 IV-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120
〈표 IV-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121
〈표 IV-5〉 조사 완료 학교 수	124
〈표 IV-6〉 조사 표본 수	125
〈표 IV-7〉 표본 대체율	125
〈표 IV-8〉 조사내용	128
〈표 IV-9〉 응답자 분포표	131
〈표 IV-10〉 가족유형에 따른 경제적수준의 인식 차이	132
〈표 IV-11〉 한달 용돈	133
〈표 IV-12〉 아르바이트 경험	134
〈표 IV-13〉 아르바이트 시기	135

〈표 IV-14〉 가장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	136
〈표 IV-15〉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 여부	137
〈표 IV-16〉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의 검증 결과	139
〈표 IV-17〉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생활의 차이	140
〈표 IV-18〉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141
〈표 IV-19〉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142
〈표 IV-20〉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143
〈표 IV-21〉 가족과의 관계 -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144
〈표 IV-22〉 가출 시도 경험	145
〈표 IV-23〉 가족들의 음주모습 목격 횟수	146
〈표 IV-24〉 가족들의 말다툼 목격 횟수	148
〈표 IV-25〉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	150
〈표 IV-26〉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	151
〈표 IV-27〉 가족 중 장기 치료 환자 존재 여부	152
〈표 IV-28〉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n=5982)	153
〈표 IV-29〉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계속)	154
〈표 IV-30〉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 차이	155
〈표 IV-31〉 학교활동 -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156
〈표 IV-32〉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157
〈표 IV-33〉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158
〈표 IV-34〉 학교활동 -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159

〈표 IV-35〉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160
〈표 IV-36〉 학교활동 -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161
〈표 IV-37〉 학교활동 -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162
〈표 IV-38〉 학교활동 - 나는 친구들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163
〈표 IV-39〉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n=8264)	164
〈표 IV-40〉 아동 · 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경험(요인)	165
〈표 IV-41〉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 차이	166
〈표 IV-42〉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167
〈표 IV-4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68
〈표 IV-4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70
〈표 IV-4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171
〈표 IV-4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	172
〈표 IV-4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73
〈표 IV-48〉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174
〈표 IV-49〉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175
〈표 IV-50〉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176

〈표 IV-51〉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설을 사용하신다	177
〈표 IV-52〉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179
〈표 IV-5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180
〈표 IV-5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181
〈표 IV-55〉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활동 만족도 차이	182
〈표 IV-56〉 학교활동 -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183
〈표 IV-57〉 학교활동 -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184
〈표 IV-58〉 학교활동 -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185
〈표 IV-59〉 학교활동 -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186
〈표 IV-60〉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만족도 차이	187
〈표 IV-61〉 지역사회 활동 -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188
〈표 IV-62〉 지역사회 활동 -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189
〈표 IV-63〉 지역사회 활동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90
〈표 IV-64〉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	191
〈표 IV-65〉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	192
〈표 IV-66〉 이웃들과의 관계	193
〈표 IV-67〉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술을 마신 적	194

〈표 IV-68〉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	195
〈표 IV-69〉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적	196
〈표 IV-70〉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197
〈표 IV-71〉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198
〈표 IV-72〉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친구나 후배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199
〈표 IV-73〉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200
〈표 IV-74〉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201
〈표 IV-75〉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 적이 있다	202
〈표 IV-76〉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보았다	203
〈표 IV-77〉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유흥업소술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을 출입하였다	204
〈표 IV-78〉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추행(강제로 이성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	205
〈표 IV-79〉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206
〈표 IV-80〉 학교 수업 시간외의 활동 시간	207
〈표 IV-81〉 가족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208
〈표 IV-82〉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209
〈표 IV-83〉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210

〈표 IV-84〉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211
〈표 IV-85〉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	212
〈표 IV-86〉 가족유형에 따른 정보화 차이	213
〈표 IV-87〉 컴퓨터 보유 여부	214
〈표 IV-88〉 컴퓨터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215
〈표 IV-89〉 인터넷 이용횟수(일주일 기준)	216
〈표 IV-90〉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이용횟수(일주일 기준)	217
〈표 IV-91〉 휴대전화 보유 여부	218
〈표 IV-92〉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219
〈표 IV-93〉 휴대전화 주 사용용도	220
〈표 V-1〉 외국(미국·캐나다·독일·일본)의 양친부모가정 지원정책	231
〈표 V-2〉 외국(미국·캐나다·독일·일본)의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	233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흐름도	8
〈그림 II-1〉 40세 남성 미혼율 증가 추이	1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이주노동자·초국적 결혼·다문화·저출산·가족해체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가족구조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변화에 대한 단순한 지적은 불충분하다. 가족유형의 변화가 단순한 변화라는 사실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는 가치론적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유형과 관련된 전반적 영역에서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고 통합하는 형태에서 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유기체적 특성상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태에 있어,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물론 사회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사회에서는 대량생산보다 IT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요구된다. 이는 생산을 위한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양식보다 개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흐름을 낳았다. 동시에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과 질서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추구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도 반영되었다. 즉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서 결혼과 자녀양육은 선(善) 또는 정상이며 그것만이 표준화된 삶의 양태임을 주장하고, 결혼을 제외한 독신, 동거, 무자녀, 이혼 등의 양태들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와 같은 이분법적 인식을 단순히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실제 우리사회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족유형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라 각 가족유형내의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2010)의 가구구성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0년 5년 동안 친족가구 중

1세대가구가 17.6%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정도 16.4%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3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 등 사회의 근본적 영역에서 질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유형의 다양성은 개인의 자율적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다양성은 부정적 측면 또한 지닐 수밖에 없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그리고 빈곤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증가는 위기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빈곤가정의 나홀로 아동·청소년은 약 21만 명(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정도로 추산되며, 맞벌이 등의 이유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전체 아동·청소년 수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르며, 평일 야간 시간의 빈곤가정 나홀로 아동·청소년은 약 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2011년 약 1만 4천 가구로 추정(여성가족부, 2011)되는데, 이들 청소년들은 빈곤 및 자녀양육 부담과 함께 학업중단과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10대 출산 자녀수가 연간 2.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통계청, 2010), 10대출산과 청소년 한부모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양육환경이 다르며 그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발달 양상도 달라지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된 바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은 양친부모가정 아동들에 비해 비행정도가 높고(Demuth & Brown, 2004; Flewelling & Bauman, 1990; Hoffmann & Johnson, 1998; Salem et al., 1998; Schroeder et al., 2010; Thomson et al., 1994; Vandewater & Lansford, 1998),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미희·이순형·이옥경, 2005; 윤혜미·박병금, 2005; 이애재, 2000; ÇİVİTÇİ et al., 2009; Jekielek, 1998; Thomson et al., 1994).

유안진 외(2005)의 연구에서도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양친부모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이나 다른 종류의 비행에 있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가정을 연구한 홍순혜(2004)의 연구에서도 양친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성적은 더 낮고,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은 양친이 모두 있는 가족에 비해 빈곤률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은 소득수준이 낮고 물질적 곤궁 정도가 높다(진미정 외, 2005; Kalil & Ryan, 2010). 따라서 한부모가정은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아동발달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쉬우며 아동들

의 학업 성취나 사회성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McLanahan & Sandefur, 1994; Waldfogel 외, 2010).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세대가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조손가정 역시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부적으로 연관되기 쉽다(박미자·이창식, 2008).

기존연구에서는 양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각각의 가정에서 특정발달 영역의 아동·청소년발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접하는 생활실태를 5개 영역, 즉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넘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들이 상호 연계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생활이나 여가생활은 곧 학교생활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문제행동이나 지역사회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연구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각각의 유형이 지니는 개별적 특징뿐만 아니라, 가족유형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분석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모색 및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한국사회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지원 법제도 및 정책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외국의 법제도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외사례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특성에 따른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사회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상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대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관련 현행 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한국사회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생활상의 문제점을 규명하며,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내 행정·통계관련 자료 고찰

한국의 가족유형, 변화된 가족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법제도, 통계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2) 국내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 분석

국내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관련 현행 법제도 및 외국의 관련 정책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과 관련된 정책적·법적 제도에 관한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설문조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크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그리고 기본배경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은 가족경제, 가족관계로 구성하였고,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은 인간(친구)관계, 학교문제, 학교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지역사회 생활의 하위영역은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관계로 구성하였고,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약물비행, 생활비행, 성비행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여가생활의 하위영역은 하루일과, 여가활동, 정보화 생활로 구성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과 관련된 국내 및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문헌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3년·2001년·2004년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조사’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 여가생활 등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2) 설문 조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9,396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 1차 추출 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 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적용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성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조사는 2011년 6월~7월 기간 중에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3) 사례조사

국내외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관련 법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비교,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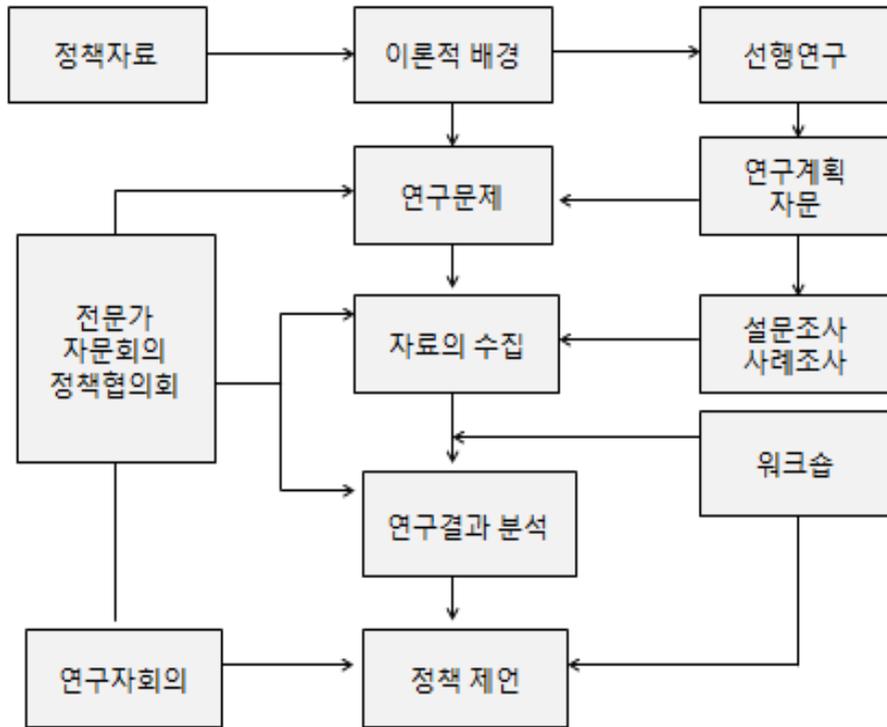
4) 전문가 자문

전문가 의견조사방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학계와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및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지표항목 및 설문문항의 선정 및 확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5) 전문가 워크숍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학계, 행정계, 현장의 전문가들과 정책 도출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 그림 I-1 】 연구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와 가족구조 유형의 다양화
2. 가족유형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와 가족구조 유형의 다양화

1970년대 세계화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결혼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동거생활과 계약결혼, 혼외 내지 혼전 자녀 증가 등 산업사회의 획일화된 가족제도를 벗어난 다양성의 증가를 의미한다(박선영 외, 2008). 그리고 이는 가족구조의 다양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가족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패러다임, 즉 능률과 합리의 기준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농경사회와 달리 경제적 노동의 공간이 논밭에서 공장으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가족은 더 이상 하나의 생산 단위로서 함께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공장에서의 노동이 분업화되고 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주요 기능 역시 전문적인 기관에 맡겨졌다.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에 맡겨지고 노년층에 대한 뒷바라지는 양로원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새로운 산업사회가 근로자의 노동공간의 이동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도시로의 이전과 나아가 일의 종류에 따라 유연성 있게 이동하는 일꾼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가족의 효율성이 떨어지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이 많은 친족, 환자, 장애인, 그리고 많은 아이를 거느린 확대가족의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동자체에 대한 용기도 가지기 힘들었다. 그래서 가족구조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로의 이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통해 가족유형의 효율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술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합리성중심의 가족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결국 비효율적 가족구조원과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적은 수의 아이들만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핵가족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모든 산업사회에서 표준적인 "근대적" 가족의 모델로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구조가 정상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산업사회는 나아가 노동시간과 노동력의 표준화를 요구하였다.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산업사회는

학교를 졸업한 노동력의 사회진출과 정년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퇴출이 규칙적이길 요구하였다. 따라서 핵가족화된 가족구조에 규칙성과 통일성이라는 특징이 부가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에겐 결혼적령기가 자연스럽게 인지되었다. 20대 중반의 여성과 20대 후반의 남성은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 되고, 결혼 후 1~2년 안에 출산하며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중국적으로 산업사회의 노동력으로 내보내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사회는 그러한 흐름을 정상으로 보며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2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미혼이라든지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 가정은 주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정상이 되므로 이 외의 모든 형태의 남녀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치부된다. 일례로 동거나 계약결혼, 사실혼 등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 역시 비정상의 영역으로 이전된다. 나아가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나 미혼모 또는 조손가정은 놀림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이데올로기적 규정에는 이미 언급한대로 산업사회의 요구, 즉 가정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규칙적으로 양산·공급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욕망이 전제되어 있었다. 결혼은 말 그대로 결혼제도로 이해되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의 감성과 다양성이 중시되게 되었다(Lyotard, 1992; Pink, 2005; Toffler, 2006). 지식정보사회의 권력은 더 이상 노동력이 아니며 상품화 혹은 자본화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양산하기 위해 굳이 정시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동일한 유니폼에 동일한 시간대의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근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누군가 유용지식을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다면 그는 사실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칙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가 사무실에 있건, 재택근무를 하건 또는 휴가지에서 일을 하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 된다. '위에서 지시하는' 근무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선택 가능한' 근무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수평적 구조의 사회가 된다.

서구사회이든 한국이든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가부장적 수직구조의 전형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수평적 1인 1적제가 도입되었다. 가족구조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사회의 수평적 구조와 다양성, 상대성의 힘은 산업사회의 가족구조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다. 무엇보다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 하나는 생존이며 다른 하나는 가치, 특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세계화와 함께 19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

먼저 생존과 관련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가정과 직장이 모두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Bianchi, 2011).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무한경쟁을 통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취업자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실업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에 있어 소득의 전체적 양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풀타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불안전성이 늘어나면서 여성에 의한 유급 직업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실제 1975~2009년 사이, 18세 이하 자녀들이 있는 여성들의 노동 인구 비율은 47.4%에서 71.6%로 증가했다. 6세 이하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도 노동인구비율이 39.0%에서 63.6%로 증가했다(Cotter et al., 2004; Sayer et al., 2004). 그리고 현대의 어머니들은 반세기 전에 비해 출산 후 훨씬 빨리 직장에 복귀한다. 나아가 2009년 모든 취업 어머니들의 74%가 주당 최소 36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경우는 94%가 노동인구에 속하고, 그 중 94%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09).

생계의 어려움은 이혼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동시에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자녀양육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한 부부갈등의 단초가 된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후 지속적인 이혼율과 미혼모출산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더 많은 자녀들이 한부모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정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미국 가정의 약 1/4에 이른다. 전체 한부모 중 남성의 비율은 15% 정도이고, 대다수 한부모(85%)는 여성이다(Kreider & Elliott, 2009). 미국 여성들의 10%는 30세가 되기 전 최소 3번의 다른 결혼 또는 동거 관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며, 이는 유럽 국가 여성들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한다(Cherlin, 2009).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 생계를 위한 취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역시 보육과 양육의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어지며, 그 결과 청소년층에 의한 다양한 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09년 한부모 어머니들의 노동인구참여비율은 75.8%였고 실업률이 13.6%였다(Cherlin, 2009).

가정에서 양육의 어려움은 또한 무자녀상태의 증가를 의미한다. 40~44세 사이의 미국 여성들 중 20%는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수치는 30년 전에 비해 두 배에 달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석사학위보유자나 전문직종사 여성들의 경우에는 27%로 늘어난다(Dye, 2008). 나아가 취업문제는 결혼가능성과 연결된다. 남성이 낮은 수입을 가질 때 결혼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Christiansen & Palkovitz, 2001).

한국사회 역시 압축된 형태로 서구와 동일한 길을 걸어왔다. 먼저 산업사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 억제가 국가의 주요현안으로 부상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실시된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 가구원 수는 꾸준히 감소되었다. 가구원 수의 감소는 특히 19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출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는 시기가 맞물려져 한국가족의 핵가족화는 지속적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종원 · 오승근 · 김은정, 2010).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한국사회는 정보화사회의 시작인 김대중대통령시대의 ‘국민의 정부’ 이후 현재의 후기정보화사회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인해 겪은 동일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가족구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표 II-1〉 참조).

표 II-1 가구구성 및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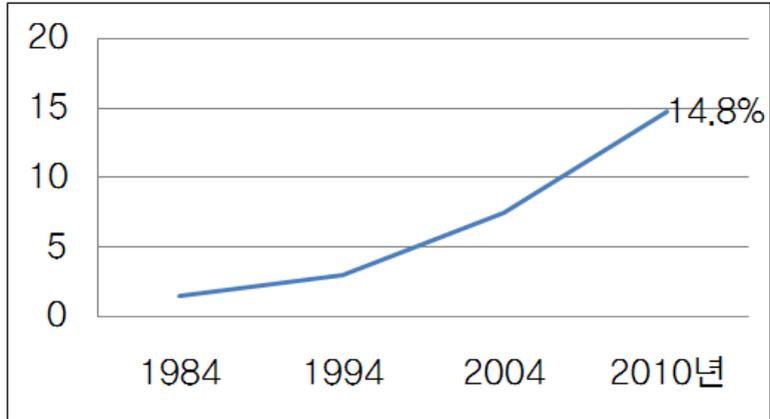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계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친 족 가 구	·1세대가구	2,034	(14.2)	2,575	(16.2)	3,027	(17.5)
	·2세대가구	8,696	(60.8)	8,807	(55.4)	8,892	(51.3)
	부부+자녀	6,892	(48.2)	6,702	(42.2)	6,416	(37.0)
	한부모+자녀	1,124	(7.9)	1,370	(8.6)	1,594	(9.2)
	조부모+손자녀	45	(0.3)	58	(0.4)	51	(0.3)
	·3세대가구	1,176	(8.2)	1,093	(6.9)	1,063	(6.1)
	·4세대이상가구	22	(0.2)	16	(0.1)	13	(0.1)
1인 가구	2,224	(15.5)	3,171	(20.0)	4,142	(23.9)	
비친족 가구		159	(1.1)	226	(1.4)	202	(1.2)

*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자료 재구성

* 단위: 천가구, %

무엇보다 IMF이후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은 취업과 생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였고, 이는 핵가족화를 가속화시켰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가구당 가구원수가 1980년 4.5명에서 2010년 2.5명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계문제는 결혼자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가정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4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그림 II-1〉에서와 같이 1985년 1.4%였던 40세 남성 중 미혼 비율이 2010년엔 14.8%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40세 여성 중 미혼 비율이 1.1%에서 7%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나 많다. 4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45세의 남성 중 미혼 비율이 85년에는 0.2%였던 반면 2010년에는 7.7%로 늘었다. 서울시 통계에도 40대 남성 1인가구가 7만 4630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106.1%) 증가했다. 전체 일인가구증가율도 70.2%에 달하고 있다.

그림 II-1 40세 남성 미혼율 증가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구구성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0년 5년 동안 친족가구 중 1세대가구가 17.6% 증가하였고, 한부모가정도 16.4%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인 가구가 30.6%로 다른 가구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다(〈표 II-2〉 참조).

표 II-2 가구구성별 증감 추이

구 분		증감(2000-2005)		증감(2005-2010)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계		1,575	11.0	1,452	9.14
친 족 가 구	·1세대가구	541	26.6	452	17.6
	·2세대가구	111	1.3	85	1.0
	부부+자녀	-190	-2.8	-286	-4.3
	한부모+자녀	246	21.9	226	16.4
	조부모+손자녀	13	28.5	-7	-12.1
	·3세대가구	-84	-7.1	-30	-2.7
	·4세대이상가구	-6	-27.6	-3	-18.8
1인 가구		946	42.5	971	30.6
비친족 가구		67	41.9	-24	-10.6

* 출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재구성

* 단위: 천가구, %

최근 여성가족부(2010)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형태를 세대구성별로 분류해 보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또는 조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절반을 넘었고(58.2%), 이어 부부나 형제자매와 같이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1인 가구(15.8%), 3세대 이상 가구(4.9%)의 순이었다. 2010년 한국 가족은 2세대 가구가 가장 보편적이며 이 중에서도 두 명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양친+자녀’ 형태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흔히 전통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가족형태라고 여겨졌던 3세대 이상 가구에 비해 1세대 가구나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가족유형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라 각 가족유형내의 부모-자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이다. 과거에는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이혼율은 85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고,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주춤하다가 증가하고 2010년에 다시 감소하였다(〈표 II-3〉 참조). 이처럼 높은 이혼율은 결국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이어진다.

표 II-3 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이혼건수 (천건)	117.4	119.5	134.6	144.9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증감(천건)	1.2	2.0	15.2	10.3	21.7	-27.7	-10.9	-3.5	-0.5	-7.5	7.5	-7.1
증감률(%)	1.0	1.7	12.7	7.7	15.0	-16.6	-7.8	-2.7	-0.4	-6.1	6.4	-5.8
조이혼율*	2.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 출처: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주: 09년 이혼건수(통계청)는 12만4천 건으로 이혼숙려제 도입 후 주춤했던 '08년보다 7천5백여 건이 증가(이혼신고건수는 '07년과 비슷한 수준)

이혼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53.8%(50세 이하)로 이혼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표 II-4〉 참조).

표 II-4 이혼율 및 이혼 당시 20세 미만 자녀 비율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혼건수 (여성, 50세 이하)	65,470	111,974	115,296	110,489	108,413	98,237	104,242	96,006
20세미만 자녀 수	48,743	86,021	82,621	76,346	73,191	63,624	68,917	62,921
20세 미만 자녀 비율	74.5	76.8	71.7	69.0	67.5	64.8	66.1	53.8

* 출처: 통계청, 「2010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단위: 천건, 명, %

한부모가구는 2005년에 137만 가구였던 것이 2010년에는 159만 가구로 늘었다(〈표 II-5〉 참조).

표 II-5 한부모가구 분류 및 추이

한부모가구 분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가구	15,587	16,158	16,417	16,673	16,917	17,339
한부모가구	1,370	1,394	1,421	1,447	1,472	1,594
저소득한부모가족	124	140	148	150	171	185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57	66	73	82	94	107

*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단위: 천가구

또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는 1995년에서 2000년 까지 28.5%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표 II-6 조손 가구 시도별 현황

시도별	조부모+손자녀 가구 (‘05 통계청)	조부모+손자녀 가구 (‘10 행안부 주민전산망)
계	58,101	52,101
서울특별시	7,207	8,634
부산광역시	3,771	3,692
대구광역시	2,685	2,690
인천광역시	2,426	2,604
광주광역시	1,946	1,474
대전광역시	1,530	1,346
울산광역시	699	752
경 기 도	9,599	9,858
강 원 도	3,323	2,177
충청북도	2,661	1,768
충청남도	3,787	2,637
전라북도	3,862	2,894
전라남도	4,711	3,431
경상북도	4,655	3,656
경상남도	4,349	3,768
제주특별자치도	890	720

* 출처: '05년 통계청 통계는 맞벌이를 위해 아이를 맡기는 경우까지 포함, '10년 행안부 통계는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만 파악

* 단위: 가구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생존의 문제가 정보화사회의 가족유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사회의 특징인 핵가족화 된 가족유형이 정보화사회에 접어들어 그 강도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실업과 취업으로 인한 생계문제는 가족유형을 다양한 양태로 재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맞벌이부부의 증가, 독신과 미혼, 만혼, 이혼 등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화사회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가족구조에 영향을 준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수반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구체적인 삶의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결혼제도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결혼'이라는 남녀의 사적영역과 '제도'라는 사회의 공적영역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성의 수직적 구조에 따라 제도 중심적, 즉 공적영역 중심으로 결혼이 이해되어졌다. 결혼은 정상이며 그 외의 모든 현상은 비정상이라는 등식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사회적 결혼이 곧 개인적 행복이라는 등식이 고착됨으로써 옳음과 그름,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결혼과 비결혼, 가정과 가정 외라는 구도와 동일시되었다. 하지만 이성중심의 근대성의 붕괴는 곧 흑백논리의 모순과 허구성을 드러냈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켰다(김희자, 2008).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과 거짓이란 절대적 구분론의 해체, 관점주의의 등장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를 유도하였다. 결혼제도의 중심이 제도라는 공적영역에서 결혼이라는 개인의 사적영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박선영 외, 2008).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동반된 이러한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결혼과 자신의 행복을 비교하도록 만들었고, 결혼자체가 자신의 행복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곧 가족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먼저 독신의 증가를 보면 그것은 가치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양육을 개인의 행복에 대한 대립적 대상으로 이해한 것이다. 남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할 구속체로 이해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가사일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관계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필요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하에 독신으로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독신증가의 둘째 원인은 결혼적령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정상으로 받아들여진 결혼적령기가 일종의 사회적 규례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산업사회에서 가정은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협력업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성인 남녀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사회의 동력인 인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경우 20대 중반이, 남성의 경우 20대 후반이 결혼적령기인 것처럼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개인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고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거나 계약결혼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Coleman, 2002). 한국의 경우 계약결혼은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으나 동거와 사실혼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성의식이 개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대적 성윤리의 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살아보아야 한다’는 예방적 의식을 낳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건 이혼을 선택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은 정상, 이혼은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의 사고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수용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가족드라마가 이혼과 불륜이란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상도 개인의 행복추구가 사적영역의 다양성에 속한다는 후기근대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황혼이혼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사회의 통념에 구속되고 싶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족의 형태도 따라서 변하고 있다. 한부모의 증가는 가족유형이 부모자녀의 삼각구조이어야 한다는 통념을 넘어선 것이다. 적지 않은 한부모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재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역으로 이혼과 재혼의 반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현대사회가 보여주는 현실은 한 마디로 개인화(Ulrich Beck et al., 1990)와 탈제도화를 통한 가족유형의 다양화이다(김승권 외, 2004; 함인희, 2008). 이러한 가족유형의 다원화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나 2인가구는 더욱 보편화될 것이며, 이혼과 재혼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출산 역시 당위가 아니므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다원화 경향은 소수의 3인 이상의 가구와 다수의 2인 가구 그리고 대다수의 1인가구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와 아동·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문제의 포커스를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제도가 요구된다.

2. 가족유형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족체계의 붕괴는 불안정감을 증폭시켜 청소년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성장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김보경, 2001).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가족 및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족해체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인 방임, 폭력, 무관심 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선애, 2007).

최근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유형과 부모 중 한 사람만 있는 가족유형에서 자란 아동들의 발달과

성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DeLeire & Kalil, 2002; Duncan & Brooks-Gunn, 1997; McLanahan & Sandefur, 1994), 주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 차이 혹은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구인회, 2003; 이애재, 2000; 조아미·임영식, 2009).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의 측면(구인회, 2003; 김영희, 2002; 오계훈·김경근, 2001; McLanahan & Sandefur, 1994), 정서적 문제의 측면(김경신, 2002; 권정순·박인숙, 2002; 민하영·이운주·김경화, 2008), 비행행동의 측면(유안진 외, 2005; 정소희, 2006; 조아미·임영식, 2009; DeLeire & Kalil, 2002), 건강문제의 측면(Dawson, 1991)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발달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조손가정 아동의 경우 아버지와의 접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긴 경우가 많다.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나, 손자녀가 나이가 들면서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이영·전혜정·강민주, 2009). 조손가정은 비정상적 가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들이 있으며(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적응 및 정신건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조부모와 손자녀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 및 교육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오계훈·김경근, 2001). 주동범(2009)은 가족구조를 양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였고, 경제적 자원으로 설정한 부모교육 수준과 소득, 사회적 자원으로 설정한 부모기대교육수준, 부모와의 상호작용, 외출지도에 있어서 한부모 가족의 평균이 양부모가족의 평균보다 더 낮았다. 이는 한부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고, 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구조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보면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의 학업성취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부적인 관계는 청소년 특성, 가족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원과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 과중 등은 자녀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한부모가정 아동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정소희, 2006). 정서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복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미희 외, 2005; 윤혜미 외, 2005; 이애재, 2000; Jekielek, 1998; Thomson et al., 2004).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어려움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유지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조성연, 2003). 한부모가정의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은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덜 긍정적이고 덜 개방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특히 중·고등학생의 소외감, 무력감, 사회적 고립 등과 관련이 있다(민하영·이윤주·김경화, 2008). 또한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 간 갈등은 어머니의 우울 증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오남, 2004).

이봉주·김광혁(2007)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족은 한 부 또는 모는 아동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한부모 가족이 빈곤에 처할 경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학대의 강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일관성을 잃기 쉽고,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절대적 양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쉽다(Berger, 2005; Galles, 1992). 특히 한부모 가족이 모자가정일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모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로 인해 이러한 빈곤과 스트레스의 증가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은 양친부모가정 아동들에 비해 비행정도가 높다(Davis & Friel, 2001; Demuth & Brown, 2004; Flewelling & Bauman, 1990; Hoffmann & Johnson, 1998; Tomsonet al., 1994). Davis와 Friel(2001)은 한부모 가정의 여자청소년이 양부모 가정의 여자청소년에 비해 성적행동을 일찍 할 확률이 50% 정도 더 높다고 했다. 유안진 외(2005)의 연구 결과에서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양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 수준보다 더 낮았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가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훈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들 한부모가정의 경우 청소년의 생활을 모니터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혼가정을 연구한 홍순혜(2004)의 연구에서도 양친부모가정 자녀에 비해 이혼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성적은 더 낮고,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희(2006)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모자가정의 경우 총비행정도나 비행의 세부영역에 있어서나 양친부모가정과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음에 반해 부자가정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김영미(2006)의 연구결과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청소년들은 두부모가족 청소년들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비율이 높고 부모와 학교에 대한 유대정도가 낮으며 친구영향력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조는 음주와 흡연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가족구조가 청소년 음주와 흡연의 독립적인 보호요인 혹은 위험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녀 청소년들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의 성별에 따라 사회통제적 요인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의 남녀 청소년들은 모두 친구영향력의 매개효과에 의해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모자가족의 여자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유대문제에 의해 음주와 흡연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창한·강민완(2010)은 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에 비해 비행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해체가족유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모특성 중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의 경우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이 비행행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학대경험을 한 청소년일수록 학대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비행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진미정(2008)은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연구에서 부자가족, 3세대가족의 아동들이 양친부모가족의 아동들에 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고,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의 아동들이 3세대가족의 아동에 비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적었다. 부자가족의 아동은 양친부모가족의 아동에 비해 학습시간이 짧았으며, 조손가족 아동은 양친부모가족 아동에 비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가족체계와 여가유형에 관한 이영관·송진숙(2007)연구에서는 가족의 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 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며 가족 간에 밀착되어 화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라 여가유형 하위영역별(교육체험, 취미지향, 사회친목, 가정지향)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월수입이 많은 가정일수록 여가생활에서 보다 교육적이며 취미 지향적이며 사회친목적이고 가정지향적인 여가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와 여가유형은 가족여가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친목적인 가족여가유형은 생리적, 교육적 여가만족도와 관련이 깊고, 가정지향적 가족여가유형은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양적, 생리적 가족여가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가족체계 중 융통성·경직성, 밀착·분리, 아버지-자녀 응집·소외로 나타났다. 즉 가족의 융통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밀착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응집이 높을수록 가족여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정소희, 2006).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의 가족이 직면한 문제들은 모든 가족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는 현대정보화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단순한 변화로 보는 시각이 타당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 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제 3 장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분석

1.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 아동·청소년지
원정책 및 제도
2. 가족유형에 따른 해외 아동·청소년지
원정책 및 제도

제 3 장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 분석

1.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및 제도

1) 정부지원체계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외 아동·청소년정책 정부지원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1〉 참조).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주로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부서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팀)이 있다.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족정책과와 가족지원과가 있다.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청소년정책과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과의 주요기능은 청소년 활동 진흥·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이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청소년치료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소년보호과에서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등을 맡고 있다. 청소년매체환경과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주요기능은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 환경 점검·단속활동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 등이다.

가족정책과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이 있으며 가족지원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가족서비스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는 청소년자립지원과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과 청소년활동진흥과의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또한 위기가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가족지원과인데 주요기능은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등이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으며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와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이 계획, 진행 중이다. 또한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할 것이며 아동정책기본계획('11년)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이며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두드림존(토탈자활지원서비스 체계)이 확대·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멘토-멘티 연계 활성화 및 기술지원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주로 아동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하는 부서는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사회서비스자원과가 있다.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로 아동복지정책과의 주요기능은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아동권리과의 주요기능은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는 지역개발형 사업관리 총괄(아동발달·정서발달지원,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 방과 후 돌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지역선택형) 실무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정책과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정위탁 지원,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자원과는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¹⁾ 중 일반 아동·청소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강화,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와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를 계획, 진행 중에 있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계획으로는 위기가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및 체계화,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풀 구성 확대가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부분의 교육관련 정책이 진행되지만 그 외에 언급될 담당 관련 부서는 교육복지과, 학교문화과, 대학장학과 등이다.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학교문화과의 주요기능은 Wee 프로젝트, 폭력(성) 예방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문화 선진화 등이다.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장학과에서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초등학생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지원 체제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기·취약계층

1) 제2차 기본계획은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동 계획은 '11년~'15년의 5개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의 시행시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정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과의 내일배움카드제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대상 특성별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현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안전개선과에서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영역 중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찰청과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CCTV 설치 및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여가정책과가 있다. 주요기능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문화바우처 제도)과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등이다.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청소년 활동진흥과	청소년 활동 진흥·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 자립지원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업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청소년 보호과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청소년 매체환경과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가족정책과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가족지원과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및 제도개선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가족 등에 대한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가족서비스의 지원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1.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10년) 기존 종합계획을 포함,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11년)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주요 시책, 자원조달방안 등 포함 - 유사분야 중장기 계획과 추진연도를 조정, 정책방향의 일관성 확보 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미래세대 역량 증진'과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 <p>▣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1.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설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수 프로그램 정례화를 통한 전문역량 강화 - E-러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문상담서비스 교육 실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및 지역 내 인지도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에 개발 연구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두드림존(토달자활지원서비스 체계) 확대·보급 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추진 종합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존(Do Dream Zone)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매뉴얼·교구재를 보급하여 수시 운영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멘토-멘티 연계 활성화 및 기술지원 멘토-멘티 DB 구축 및 실시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마련 멘토-멘티 교육, 슈퍼비전(자문) 등 기술지원과 민간 장학재단 등 민간자원 지속적 발굴, 참여 유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사항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가정위탁 지원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아동권리과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등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자원과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사회서비스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관리 총괄 - 아동발달·정서발달지원(음악회 포함) -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 방과후돌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지역선택형) 실무 총괄
	새로마지 플랜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1.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발달검사 및 발달장애 조기개입 사업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학·관련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아동 정서발달 지원을 위해 36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음악교육과 정서 치료를 결합한 서비스를 표준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 차등화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이용자 비율 증대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 확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국 150여개소)를 활용, 인터넷·게임 중독 여부 진단 및 치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2.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취학 전 아동의 인지발달 촉진을 위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이용 대상자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p>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안전꾸러미 배포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p> <p>■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p> <p>1.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군구별 단계적 확대(현재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인력 증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상담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 표준화</p> <p>2.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고의무자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아동의 학대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 - 아동의 학대상황 인식 및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p> <p>3.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대책 추진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성학대행위자, 알코올·약물남용자, 가해부모)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치료프로그램 실시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 도입 추진 -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처분 이행 의무화</p> <p>4.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아동복지법 개정)</p> <p>■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p> <p>1. 흡연·음주 등 유해 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공원,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정지지역(Alcohol Free Zone) 확대 선정 및 제도화 아동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확대 아동·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및 치료 지원 - 학업 중단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범실시 -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 시술사업(대한한의사협회 등 연계)</p> <p>2.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청소년 저체중·비만예방 및 유발 환경요인 개선 - 학교, 시설, 단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저체중·비만 진단, 처방, 치료 사업 추진</p>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급식 식단관리 효율화 학교 주변지역(200m)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건강저해 어린이 기호식품 규제 및 모니터링 실시 3.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조기발견 및 사례별 맞춤형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자살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 긴급구조 및 위기개입,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5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 아동복지법에 정기적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의 건강·영양·정서·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를 포함 아동복지 관련 통계 정비 - 기·미아, 학대아동, 실종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단편적·부분적 통계에서 보편적 아동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생산 - 현행 통계의 미흡한 항목, 조사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항목 등 검토 <p>▣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가정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우선 전국 시·군·구중 기초수급 아동 밀집지역 207개 지역에 1개소씩 거점지역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자율로 사업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된 기반 구축(~'11년) 사업 전국화에 대비,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기능 확충('12년)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아동복지법'에 자산형성지원((CDA),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퇴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아동 개인의 발달단계·수요를 고려한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약계층 아동 휴먼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멘티 풀 구성 확대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다문화, 새터민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이 높은 멘티 우선 발굴·연계 추진 CEO·은퇴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재외동포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멘토 풀 구축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교육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 등
	학교문화과	Wee프로젝트, 폭력(성)예방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수립 추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등, 학교문화선진화
	대학장학과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의 지원
	새로마지 플랜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1.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대책 추진 안전취약지구로 진단된 '학생안전강화학교'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 2.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지원 체제 구축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인프라 구축('11년~)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3.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하고, 활동시간 연장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하고,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등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환경감시단, 청소년스스로지킴이 활동을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연계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내일배움카드제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새로마지 플랜 ('11~15)	<p>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직업학교(Job School)를 통해 지역 내 대학·기업과 연계한 강의, 전공 체험, 실습 참여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화번호 : 1350</p>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확산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지속 추진
	새로마지 플랜 ('11~15)	<p>어린이 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대책 지속 추진 연령대에 맞춘 아동·청소년 교통안전교육기준, 교통안전교육 교수자료 개발 및 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대책 강화

부처명	관련부서	주요업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구에 CCTV를 조기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여가 정책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문화바우처 제도)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2) 현장지원체계

가족유형에 따른 국내의 아동·청소년정책 현장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표 Ⅲ-2〉 참조).

(1)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으며, 설립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시·도 및 시·군·구) 138개로 전국에 총 1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통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각각 진행 중이다.

일반가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봄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있다. 가족교육사업에는 생애주기별 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성장 아카데미가 있고 가족상담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상담사업이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에는 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가족,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날 캠페인, 가정헌법, 가족품앗이가 진행 중이며 가족돌봄지원사업에는 아이돌보미와 장애아돌봄지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인적, 물적으로 폭넓은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기가정을 위한 사업 중 관련 사업에는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조손가족 지원사업이 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에는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물적 자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일대일 맞춤상담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 등을 진행하며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는 부모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문화 프로그램, 자조집단 운영, 고용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조손가족 지원사업에는 손자녀의 학습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사업, 정서지원 및 상담서비스, 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체험 지원사업, 조부모 지원사업 등이 있다.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며 설립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의한 것으로 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을 중심으로 15개 시도지원단이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010년 기준 3,690개소(이용아동 수 100,233명)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및 실적관리,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관리 및 교육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을 원칙으로 주요기능은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이다.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의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 학습 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의 학습지원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지원 등의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지역 내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 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의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이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으로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며 서울시 한부모와 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목표는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강화 등의 종합서비스와 미혼모·부자의 위기상황극복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향상 및 가족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기획팀에서는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 미혼모 부자지원기관운영, 미혼모 취업지원사업, 사회환경조성사업, 실무자 직업역량강화사업,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팀에서는 한부모가족 정보지원 네트워크, 한부모가족 생활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위탁형 대안학교 ‘도담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4)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는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부설로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와 연계된 지원센터이다. 설립 목적은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의 하나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평등한 가족문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한부모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부모가정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 운영, 한부모가정의 구인 및 구직 정보제공 등이 있다.

표 III-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현장지원체계 현황 및 주요업무

기관명	관련사업	주요업무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교육 사업	생애주기별 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성장 아카데미
	가족상담 사업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상담사업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가족봉사단 이웃사촌 한가족

기관명	관련사업	주요업무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날 캠페인 가정헌법 가족품앗이		
	가족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장애아 돌봄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인적·물적으로 폭넓은 가족지원 사업을 수행		
	다양한 가족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생계비, 창업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 물적 자원을 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인적 자원을 연계 일대일 맞춤형상담 및 집단상담, 가족상담, 가정방문상담 등 건강문제,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법률문제 등 관련정보 제공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부모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문화 프로그램 자조집단 운영 고용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지원사업	손자녀 학습활동 지원 사업 손자녀 특별활동 지원 사업 정서지원 및 상담서비스 상시 개별 및 가족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체험지원사업 조부모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기본개념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 내 보호개념 실현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연계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데이터 및 실적관리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관리 및 교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정규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특별	주말·공휴일·일요일 프로그램	

기관명	관련사업	주요업무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랑방 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1318세대 프로그램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기획팀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 미혼모 부자지원기관 운영 미혼모 취업지원사업 사회환경조성사업 실무자 직업역량강화사업 행정지원
	사업팀		한부모가족 정보지원 네트워크 한부모가족 생활문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지원 위탁형 대안학교 ‘도담학교’
한국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한부모가정 부모 및 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 운영 한부모가정의 구인 및 구직 정보제공

2. 가족유형에 따른 국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 및 제도

1) 미국²⁾

(1) 미국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미국은 1960년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페미니즘 운동을 통한 여성 인권 신장 및 여성교육의 확대, 그리고 경제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혼 및 별거가정 증가, 한부모가정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전 이민자들이 주로 유럽지역 출신으로 서구문화권의 백인들이 대다수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남미와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급증하여 인종, 문화, 언어에서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및 가족의

2) 이 글은 정유진(Oregon State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박사님이 집필하였습니다.

구조 변화에 대응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국가차원에서의 가족이나 아동·청소년 정책이 있기보다는 다른 사회경제적 정책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정부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최소한으로 개입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본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가족유형 및 이민 가족 증가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혼가정에 대한 실태 및 정책

196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쳐 미국의 이혼율은 15세 이상 결혼한 여성 1000명 중 12명에서 25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앞서 언급한 사회변화와 함께 1970년 새로운 이혼법령(the Uniform Marriage & Divorce Act)이 발표된 시기와 일치한다. 본 법령은 정부차원에서의 가정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는데, 부부의 이혼이 꼭 누군가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한명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부 간에 평등한 재산 분할 및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내용의 변화 또한 그 주된 내용에 포함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이후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2005년 현재 인구 1000명당 3.6명이 이혼을 경험하고, 2명 중 한명의 아동은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한다.

이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주 정부 차원의 개입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각 자치주정부 법원이나 각 시의 법원과 연결되는 프로그램(court-connected programs)과 지역 사회단체나 학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다(British Columbia Attorney General, 2003). 이혼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의 성격은 부모간의 갈등을 줄이고 자녀양육 시 협력을 늘리는 방향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이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과 그 이후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이혼가정의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무는 법령, 법원이나 행정명령, 또는 지역법원의 규범에 의해 정해지며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설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①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미국의 경우,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1970년대부터 개발, 확대되어 2007년 현재 46개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Pollet & Lombreglia, 2008).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갈등이 아동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발달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육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에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횟수를 늘리고,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높이며, 다양한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주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ACT)³⁾

본 프로그램은 뉴욕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총 4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법적인 절차에 관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육권이나 자녀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결정의 과정과 그 법원명령 이수의 중요성,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 부모의 안녕에 관한 내용으로, 별거와 이혼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⁴⁾

본 프로그램은 오하이오 주내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이혼이나 법정 별거를 하는 모든 부모들이 의무로 참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4시간, 2교시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참석함으로써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첫째 시간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 이혼이나 별거로서 이혼 과정의 단계, 이혼 과정에서 겪은 감정과 어른들이 수행해야 하는 심리적 과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3) <http://www.nycourts.gov/courts/7jd/act/> (2011.8.30)

4) http://www.butlercountyohio.org/drcourt/pages/parent_education.htm (2011.9.15.)

자녀들이 이혼에 대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어떻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교육은 강의, 집단토론, 비디오 시청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② 부모역할 조정(Parenting Coordination)

가장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겪게 되는 관계변화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Steeh, 2008). 부모역할 조정자들은 갈등이 심한 이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겪게 되는 하루 일과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의 즉각적인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권이나 접근명령을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법원에서 부모 역할 조정자들을 지정하면 두 부모 모두가 동의할 경우에 결정되거나 또는 법원이 두 부모에게 부모역할 조정자들을 개입시킬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치료사, 상담가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혼이나 별거 가정의 자녀를 위해 단기로 운영되는 지원 그룹(support group)은 교육적이면서도 치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정이나,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기도 한다(Pollet, 2009).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그룹 프로그램은 감정의 해소, 대처기술의 발달, 변화에 대한 적응, 정보제공, 경험이 일반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는 6가지의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반 가량의 수업이 한번에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토론, 읽기, 역할놀이 활동을 함께 접목하여 더 많은 횟수에 걸쳐 운영하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이혼자녀들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들이 도입하고 있는 두 프로그램의 성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① Kids First⁵⁾

하와이 주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혼을 청구한 부모 및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혼 승인되기 전 참가해야한다. 본 프로그램은 약 2시간 반

5) http://www.courts.state.hi.us/self-help/divorce/educational_video.html (2011.9.20)

기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정법원 판사의 인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부모와 자녀들은 “The purple family” 라는 이혼가정을 위해 제작된 비디오를 함께 시청한 후, 부모 그룹과 자녀 그룹으로 나누어져 전문가의 안내 하에 역할 놀이와 글쓰기의 활동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이혼 청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아이오와 주 내 린 카운티에서도 이혼을 청구한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Kids First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 주에서는 연령에 적합한 역할 놀이, 미술 활동, 게임 및 비디오 시청 등의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며,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한쪽의 부모의 편을 들거나 부모들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Pollet, 2009).

② Sandcastles

인디애나 주의 한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모의 이혼을 겪고 있는 6세에서 17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2시간 반 동안 토론 및 비디오 시청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펜실베이니아 주 내 블레이 카운티에서는 특히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부모가 양육권이나 교섭권으로 갈등이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4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토론 및 워크시트 활동이 포함된다(Pollet, 2009).

나. 한부모가정 현황 및 정책

이혼 및 별거의 증가에 따라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 및 별거 가정에 대한 법률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한부모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 관한 법률도 연방정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통계적으로도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4배 이상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⁶⁾ 특히 모자 가정이 자녀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본문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미국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자녀가 있는 빈곤층 가정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필요가정한시지원제도

6) <http://www.nccp.org/topics/childpoverty.html> (2011.9.28).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와 함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기타의 지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필요가정 한시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⁷⁾

TANF는 1996년 클린턴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1935년부터 실시되었던 이전의 요보호 아동 가족부조 프로그램(Aid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TANF는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에 따라 설립된 포괄보조금으로, 정부는 이 보조금을 각 주 정부에게 부여하여, 각 주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보조를 지원하도록 한다. 각 주마다 ATAP(Alaska Temporary Assistance Program), FIP(Family Investment Program),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Program) 등 다양한 프로그램명 하에 본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일과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제한을 두고 있다. 각 주 정부는 본 보조금을 수입 보조, 양육 보조,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 왔다. 본래 2002년까지만 운용되기로 했던 TANF는 기한연장 및 수정을 거쳐 2011년 12월까지 승인이 난 상태이다.

앞서 설명한 바처럼, 각 주에 따라 TANF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지원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정부 차원에서 노동을 의무화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근로 의무 등의 규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혜택을 박탈함으로써 기본 규칙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각 주는 수혜자의 50% 이상이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6세 미만을 위한 적당한 양육 보호 기관을 찾지 못했거나 1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이 의무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혜택은 개인당 평생 60개월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7) <http://www.acf.hhs.gov/programs/ota/tanf/about.html> (2011.9.27)

다. 맞벌이 부부 보편화에 따른 지원정책

2009년 현재 영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과반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여성 노동인구 중 약 8.3%에 해당 한다⁸⁾. 이러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일과 가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입안 및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신생아 육아를 위한 유상휴가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단지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에 근거하여, 50명 이상의 피고용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할 경우 자녀 출산 및 신생아 육아, 자녀입양을 위해 12주 동안의 무상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일 년 이상 그 직장에서 근무하고, 이전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을 일한 피고용자만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D. C.,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및 오레곤 등과 같은 몇 개의 주들은 비슷한 법령을 확대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의 경우 고용자가 최소 25명인 작은 농장의 근로자들도 FML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중 캘리포니아 주는 2002년부터 피고용인들이 6주기한 내에 주급의 55%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주에서는 2007년 Family Leave Insurance Law라고 하는 부모 휴직 법령이 통과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Williams & Boushey, 2010). 이 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이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5주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자녀양육을 위한 보조 제도로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육아보조금 및 부모 모두가 소득이 있거나 학생일 경우 제공되는 세금혜택(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이 있다(Williams & Boushey, 2010). 현재 정부나 혹은 주 차원에서 피고용인의 병가를 가족을 위해 대신 쓸 수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단, 버지니아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 기관 근무자들은 병가를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쓰는 것을 허락하는 등의 유동성 있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Lovell, 2004).

라. 이민가족과 자녀를 위한 정책

외국에서 태어나 이주한 이들이 전체 인구의 12.5% 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다(Kandal, 2011). 자녀가 이민자이거나

8) <http://www.bls.gov/cps/wlftable6-2010.htm> (2011.10.5)

또는 이민자 부모의 미성년 자녀의 비율은 더욱 높아 2006년 현재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20%로 보고된다(Urban Institute, 2006).

이민자의 경우 비이민자들의 비해 경제적 자본 및 문화적, 사회적 지식이 부족함에 따라 많은 경우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자 부모의 자녀 중 50% 가량이 정부의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200% 아래의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비이민자 부모를 둔 다른 아동 중 33%가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Urban Institute, 2006).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이민자 부모들은 미국 교육 및 사회체계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관한 도움을 주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과 연관 있는 정책이나 사회 통합을 돕기 위한 지원은 이민자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이민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차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각 주나 시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소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할 뿐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거나 저소득층 가정 및 자녀에 대한 정책도 이민자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인 No Child Left Behind(NCLB)와 함께 각 주나 시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민자 부모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그 대상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 ESOL Parent Center

메릴랜드 주 내 록빌 시에서 제공하는 이민자 부모의 학교 참여 및 학교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공한다. 이 센터에서는 이민자 부모들에게 그 지역 학교 시스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학교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생님과의 면담 및 각종 행사에 번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⁹⁾

9) <http://www.montgomeryschoolsmd.org/curriculum/esol/elem/index.shtm> (2011.10.10.)

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① No Child Left Behind(NCLB)

No Child Left Behind(NCLB)는 부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승인되었으며, 2013에서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읽기, 수학, 과학에서 유능한 것을 그 주된 목표로 하는 공립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다(Adolino & Blake 2011). 이 법령은 기대 수준이 높을 때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개개인의 성과가 향상된다는 신념을 기본으로 수립되었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NCLB는 이민자 아동과 청소년 및 제한된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언어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들과 함께 보고하되, 그 학생들의 점수는 따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영어 학습 학생들이 학업발달을 보이지 않을 경우 그 학교에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셋째, 이중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는 수업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가 배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 및 문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부모들의 학교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NCLB 시행을 통해 학교관계자들은 많은 영어학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를 좁혀가거나 같은 수준의 학습능력을 보일 것이 기대되나,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학습하여 유지할 기회를 줄 만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장서영 · 김이선 · 이로미 · 장인자 · 유지영, 2009).

② College Reach Out Program(CROP)

플로리다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소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프로그램으로 마이애미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도와주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⁰⁾ CROP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여름 캠프 프로그램으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교과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③ Hispanic Mother-Daughter Program¹¹⁾

텍사스 주 내 어스틴(Austin)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Junior League of Austin에서 운영하

10) <http://www.fiu.edu/~fiupreco/crop1.htm> (2011.10.15.)

11) <http://www.jlaustin.org/?nd=hmdp> (2011.10.15.)

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히스패닉계 여자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및 고등학교 과정 이수 그리고 대학 입학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6학년 프로그램에 등록 이후, 개인 교습 및 상담을 12학년 때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방문과 같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갈등 해결, 분노 조절 및 학습 습관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단체교육 또한 제공된다.

마.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언급된 가족유형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개인 및 각 가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자치주 또는 시에 소속된 가정법원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주의 법원에서는, 이전 이혼 가정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인 절차를 변경하고 있다. 많은 주에서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혼 절차에 포함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이혼가정을 위한 정책에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모교육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이혼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 부모역할 조정과 같은 제도들은 이혼 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혼이 법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의 연속선상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부모 이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사, 전학 또는 다른 친척들과의 교류의 단절 등과 같은 심리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상황 변화를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TANF 이후에는 부모들의 노동을 전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평생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TANF 제도 시행이후, 1987년 73%에서 2006년에는 84%의 통계에서 보듯이 모자가정의 취업률이 증가하였다(Hoynes, 2007). 특히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모자가정의 부모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전반적인 가정수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TANF의 혜택기간을 한정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원칙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있어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NF의 실행 이후 가장 취약한 경제 상태에 놓여있는

가정의 수입이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한 것으로 보여 그 실질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될 것이다. 특히 TANF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많은 가정의 경우 노동의무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Hoynes, 2007).

마지막으로 이민 가족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높은 이민자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이민가족에 대한 국가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거의 살펴볼 수 없고, 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의 사례와 사회단체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몇 프로그램들의 경우도 주로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의 성취가 앞으로 자녀들의 사회에 통합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Hispanic Mother-Daughter Program과 같이, 이민가족의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흡한 정부의 대처는 이민자들의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캐나다¹²⁾

(1) 캐나다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미국과 함께 북미에 위치한 캐나다의 경우, 1960년대 이후의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 및 인구변화 또한 미국과 비슷하게 겪어왔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연방정부와 주자치정부로 나뉘어져 있는 점에서도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국가가 인구변화 및 특성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소 다른 점들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앞서 지적한 가족유형의 변화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의 높은 유입 현황 및 이에 대처하는 캐나다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족문제나 빈곤에 대처함에 있어 국가적으로 명시화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제도와 함께 녹아들어가 있으며 제도적인 해결책보다는 개개인의 요구를 기본으로 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 또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좀

12) 이글은 정유진(Oregon State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박사님이 집필하였습니다.

더 유럽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국가적인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퀘벡 주의 경우 프랑스의 전통을 따라 좀 더 집중적이고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Baker & Phipps, 1997). 캐나다는 연방 조직 하에 10개의 자치주(provinces)와 3개의 자치구(territories)로 이루어지며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요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며, 각 자치주 및 자치구 정부들은 어떻게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가. 이혼 및 별거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였고, 1940년대 까지도 이혼은 당시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흔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그 이후, 1968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친 이혼법이 통과되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해 관대해지면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Luxton, 2011). 캐나다 통계청은 이혼율을 약 38%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1000건의 결혼마다 380쌍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Statistics Canada, 2004; Luxton, 2001, 재인용).

캐나다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1억 2천만 불 이상을 향후 5년 동안 자치 주정부와 각 자치구에 지원하여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돕는 법령(The Supporting Families Experiencing Separation and Divorce Initiative: SFI)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거한 가족지원기금(Supporting Families Fund)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들이 가정법원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이 기금은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이 마무리 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가족 및 아동·청소년 각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지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¹³⁾

가) 부모 대상 프로그램

① 별거 후 양육 세미나(Parenting After Separation Seminars: PASS)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중 밴쿠버와 빅토리아시, 그리고 리치몬드 등 약 20개시와 앨버타 주

13) <http://www.justice.gc.ca/eng/pi/fcy-fea/abo-apr/index.html> (2011.10.17.)

고등법원과 연결되어 실시되고 있는 부모 대상 의무 프로그램이다(Sieppert, Lybarger, Bertrand, & Hornick, 1999). 양육권을 신청했거나 혹은 양육권을 가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앨버타 주의 경우에는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 전 또는 이혼결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교시 수업으로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모가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강의 및 상호작용, 비디오 시청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한 이혼이나 별거에 따르는 감정적, 경제적, 그리고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자녀양육을 할 것인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이혼 및 별거 후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Parenting after Separation and Divorce information sessions)은 사스캐추완 주에 있는 모든 고등법원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⁴⁾

② 별거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Focus on Communication in Separation: FOCIS)¹⁵⁾ 앨버타 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혼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는 원하는 부모들에 한해 무료로 제공된다. 총 6시간 동안의 수업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혼이나 별거를 한 부모들은 상대 부모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어떻게 화를 조절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③ “자녀를 위해(For the Sake of the Children)”

매니토바 주는 최근 “자녀를 위해(For the Sake of the Children)” 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자녀 양육권을 요청하거나 취득한 부모를 대상으로 의무적 참여를 규정하였다.¹⁶⁾ 이는 가족 협력 서비스 센터(Family Coalition Service Center)에서 운영되는 무료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서 부모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개의 수업이 각각 3시간 동안 총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갈등의 정도에 따라 두 종류의 반이 운영된다.

14) <http://www.justice.gov.sk.ca/parental-education> (2011.10.16.)

15) <http://www.albertacourts.ab.ca/go/CourtServices/FamilyJusticeServices/CoursesSeminarsforParentsandFamilies/tabid/126/Default.aspx> (2011.9.30.)

16) http://www.gov.mb.ca/ts/childfam/for_sake_of_children.html#top (2011.10.11.)

나) 아동 대상 프로그램

① 법무부에서의 책자 제공

SFI에 따른 자금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무부에서는 9세에서 12세에 아동을 위한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본 책자는 아동들이 가족법을 이해하고 부모의 별거에 대한 감정이 정상적임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달력(What Happens Next)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¹⁷⁾

② Caught in the Middle과 Just for Teens

매니토바 주에서는 아동을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8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Caught in the Middle과 14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Just for Teens를 운영하고 있다. Caught in the Middle은 부모가 별거와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모임으로, 6명에서 8명으로 이루어진다. 총 6주간 일주일에 한번씩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Just for Teens는 일반적인 별거 과정, 가족과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는 정보제공 세미나이다.¹⁸⁾

나. 한부모가정 현황 및 대책

캐나다에서의 한부모가정 비율은 196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안정화된 추세를 보인다. 이혼과 동거의 증가를 그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Beaujot & Ravanera, 2008). 1966년에 8.2%였던 한부모가정 비율은, 1986년에는 12.7%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1년과 2006년에는 각각 15.7%와 15.9%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추세로 접어들었다(캐나다 통계청, 2007). 이러한 추세에 상응하여 15세 이하 아동 중 한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도 1986년에 12.4%에서 2006년 18.3%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같은 연령의 아동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1.2%에서 65.7%로 감소하였다(Milan, Vézina & Wells, 2007).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 중 특히 모자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캐나다 모자가정 중 21%가 저소득층으로 양친부모가정이 저소득층인

17) <http://www.justice.gc.ca/eng/pi/icy-fea/lib-bib/pub/cal/2011/index.html> (2011.9.22.)

18) http://www.gov.mb.ca/ts/childfam/caught_in_the_middle.html (2011.9.19.)

경우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따라서 캐나다의 저소득층 가정 및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 캐나다 양육 보조금(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²⁰⁾

캐나다 정부의 사회지원 및 복지에 관련된 정책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아동의 복지는 개혁에 중점을 이루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는 캐나다 양육보조금(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이 있다. 이 제도는 캐나다 세무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이 주관하며,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에게 세금이 면제되는 일정금액을 월마다 지원한다. 연방정부 보조금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지급이 되는데, CCTB와 관련된 보조 프로그램을 각 주마다 세부 사항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온타리오 양육 보조금(the Ontario Child Benefits: OCB)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저소득에서 중산층 가정에게 18세 이하의 자녀 한명 당 약 90불을 매월 지원한다. 연소득이 20,000불이 넘을 경우에는 일부분의 지원만 제공된다. 노바 스코시아 주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 중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CCTB와 관련된 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으나 금액 및 지급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매월 약 45불, 둘째 자녀에게는 약 65불, 그 이후의 자녀에게는 매월 약 73불이 지급되어 자녀의 수에 따라 보조금액을 차별화한다. 또한 금액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연소득도 18,000불에서 23,000불 사이로 그 기준이 다소 다르다.

나) 자녀혜택 국가보조(the National Child Benefits)

CCTB의 한 부분인 자녀혜택 국가보조금(the National Child Benefits),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크게 연방정부와 퀘벡을 제외한 자치주정부의 협력관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NCB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세보조금인 자녀혜택 국가보조금(the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 NCB Supplement)과 각 자치주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그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동 빈곤을 줄이고, 노동참여를 권장하며, 연방정부와

19) <http://www.statcan.gc.ca/survey-enquete/household-menages/3889i-eng.htm> (2011.9.23).

20)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ilyng-eng.html (2011.9.30.)

수 있는 가족활동(Family Drop-In)이나 부모교육(Parenting Workshops)과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아동놀이프로그램(Play to Learn) 등을 제공한다.

다. 맞벌이 부부 보편화에 따른 지원 정책

캐나다의 육아휴직은 주정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퀘벡과 사스캐추완(18주) 그리고 앨버타주(15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17주간의 모성 휴직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일정량을 부담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제도를 통해 월급의 55%, 일 년간 최대 40만 불까지 수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부모는 15주간 부가적인 금전 지원(family supplement)도 지급받게 된다. 만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입이 평소 수입의 25% 이하 또는 주당 50불이 안될 경우에 한해 원할 경우 계속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할 수도 있다(Ray, 2008).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퀘벡 주의 경우 다른 주들과는 차별화된 육아휴직 및 금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자녀의 아버지에게도 5주간의 부성육아휴직(paternal leave) 및 금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Ray, 2008). 또한 퀘벡 주에서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EI가 아닌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QPIP)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년도에 최소 2000불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일정량의 보험금을 납입을 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액수 및 기간에 관해서는 두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수입의 70%, 최대 5만 9천불을 수령하고 18주의 모성휴직 그리고 5주의 부성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simple plan). 또 다른 선택사항으로는 수입의 75%를 조금 더 짧은 기간인 15주의 모성휴직과 3주의 부성휴직을 받을 수 있다(special plan).

대부분의 자치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부모 휴직(parental leave)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유동적으로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 그리고 육아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모성휴직이나 부성휴직과 달리 부모휴직은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37주부터 64주까지 각 주별로 다양한 기간이 보장되는데, 이 부모휴직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Ray, 2008). 퀘벡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EI를 통해 이 기간 동안 부모 중 한명이 모성 휴직과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퀘벡 주에서는 모성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QPIP을 통해 두 종류의 지급기간 및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총 32주간의 기간 중 7주 동안은 이전 월급의 70%를 그리고 나머지 25주 동안은 55%를 받거나(simple

plan) 또는 좀 더 짧은 25주간 동일하게 월급의 75%를 받을 수 있다(special plan).

라. 이민자 현황 및 지원정책

캐나다 200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20%가 이민자로 지난 75년 동안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비율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Chui, Tran, Maheux, 2007). 또한 캐나다에 정착하는 이민자는 200개국에서 온 사람들로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로서,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Hamplova & Le Bourdais, 2010).

미국에 비해 캐나다에서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변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민자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장서영 외, 2009). 앞서 한부모가정에서 소개되었던 CAPC가 지원하는 지역사회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 많은 경우가 이민가정 및 아동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주 자치단체에서는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민자 정착 정책을 살펴보고 각 주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① 이민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ISAP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제해결 중심의 상담, 고용에 대한 서비스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이나 직원교육 등의 간접적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하는 것 역시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²³⁾

23)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evaluation/isap/intro.asp#s2> (2011.10.4.)

② Canada Host Program

캐나다 이민국에서 개발하고 지원해 온 통합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운 영주권자들과 난민들이 새로운 국가로 이주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캐나다 사회에 익숙한 자원봉사자가 이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영어와 불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직장을 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²⁴⁾

③ 이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LINC)

LINC는 이민자와 난민이 빠르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캐나다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LINC의 교과과정은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캐나다 생활방식을 안내함으로써 이민자들이 가능한 빨리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다른 LINC의 구성요소는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접적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²⁵⁾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도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거리 이민여성 연합에서는 사무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 및 고용훈련을 제공한다. 이민 여성들이 사무직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계 및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6개월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기술 및 직장의 요구사항, 그리고 많은 직장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포함된다.²⁶⁾

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① The Settlement Workers in Schools(SWIS)²⁷⁾

SWIS는 정착 지원가(Settlement workers)들이 새로 정착한 이민아동 및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초로 온타리오 주에서 시행한 이후에, 2010년 현재 온타리오에서만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와의 협력 하에 정착 지원가들은 이민

24)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guide/section-04.asp> (2011.10.4.)
 25)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welcome/wel-03e.asp> (2011.10.4.)
 26) <http://www.ciwa-online.com/Services/employment.html> (2011.10.18.)
 27) <http://swisontario.ca/2/About-Us> (2011.10.20.)

부모 및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함으로써 각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름 방학 동안에는 본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내 공공도서관 등과 같은 다른 장소에 재배치되어 일하게 된다. 새로 이민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Newcomer Orientation Week(NOW)은 여름방학의 마지막 주에 약 3일 반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이전에 이민하여 정착한 또래들이 참가자들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게 된다. NOW와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루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Welcome and Information for Newcomers(WIN)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및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하는 비디오와 안내책자,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개발하고 배포하는 일도 SWIS 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진다.

② Literacy Enrichment Academic Program(LEAP)²⁸⁾

토론토 교육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 이주하기 전 정기적으로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던 11세에서 1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LEAP은 영어 말하기와 쓰기, 읽기, 수학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 학생들이 같은 연령대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추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에서는 40개의 초등학교 및 15개의 중고등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960년대 이후 시작한 가족유형의 변화 및 인구의 변화에 대해 미국보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되고 운영되는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돕는 법령(The Supporting Families Experiencing Separation and Divorce Initiative: SFI)의 경우 이전에 몇몇 주에서만 실행하고 있던 이혼부모 및 자녀들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라는데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의 재정이 부족하여 이혼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28) <http://www.tdsb.on.ca/> (2011.10.20.)

부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효율적인 정보를 이혼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 제공하려는 것 또한 시사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매니토바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따로 운영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캐나다의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와 각 자치 주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각 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를 받는 많은 가정의 경우가 모자 가정임을 고려할 때, NCBS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사회부조 혜택을 감소하고 그로 인한 금액을 일을 하는 저소득층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비평도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이민 가족 정책은 특히 다문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한 바가 클 것이다. 연방정부 기관인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을 그 주관기관으로 하여 이민부모 및 그 자녀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며, Canada Host Program이나 SWIS 프로그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 이민가족 또는 개개인이 새로 정착한 국가에서 사회적 지원망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경우, 학교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하는 점에서도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3) 독일²⁹⁾

(1) 독일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독일의 가족유형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중세에는 서부유럽에서 있었던 가족형태로 친족이나 친척들까지도 그야말로 ‘큰 집’에서 함께 모여 사는 형태였다. 다음으로 남동 유럽에서 넘어온 가족형태로 친족들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가계를 공동으로

29) 이글은 이민희(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꾸러가며 모여 사는 소위 ‘대가족’ 형태가 이어졌다. 19세기 중엽부터 1950년대까지는 시민사회적인 ‘소가족’ 형태의 가족유형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도시와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유럽에서 산업 노동자들이 시민계급으로 등장하면서 소가족 형태의 가족유형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가족형태에서는 아직까지 가족 내에서의 전통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보통 가계의 주 부양자로 가정에서 최고의 가부장적 권위를 가졌다. 이 소가족 형태에서는 어머니의 70%정도만 부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주로 가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소가족 형태의 가족유형은 그의 전형이 점차 사회의 변화에 따라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가족규모의 축소, 결혼의 감소, 이혼의 증가, 여성의 출산 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 증가, 가족적 결속의 단축, 가족부양 부담 없는 자유로운 삶의 추구, 이혼의 법적 간소화와 도덕적 무관심, 국가의 다양한 복지혜택, 피임방법의 발전 등이 언급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구조가 와해되면서 다양한 선택적 삶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독신, 한부모 가족, 동거 가족, 무자녀 가족, 별거 가족, 다 가족 공동생활, 동성 가족, 다문화 가족, 주말 가족(commuter family), 이중핵가족(binuclear family)³⁰⁾ 등의 다양한 가족적 형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독일의 연방정부 부처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FSFJ)³¹⁾」는 이러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족의 해체가 증가되고 다양한 구조의 가족형태가 등장하게 되자 마침내 2011년 “가족 우선”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아래와 같은 6대 정강(政綱)을 발표하였다.

- 가족을 가장 미래지향적인 책임공동체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
- 책임과 신뢰와 같은 가족적 가치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수용되는 사회
-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직업인을 지원하고, 노동의 세계가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상이 깊은 사회
- 누구나 가족에 대해 “나에게는 가족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 가족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고,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사회
- 가족이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가족의 요구들에 부응하는 사회

30) 이혼한 부부가 각각 재혼하여 같은 집 또는 이웃에서 사는 가족 형태.

3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위와 같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가족정책의 6대 정강은 향후 독일의 가족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가족 우선”에 관한 세부정책과 이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정책방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의 욕구와 부모경력에 관한 욕구의 공동 성취 정책

가) 부모비(Elterngeld)

부모비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아가 출생한지 1년 안에 산아 출생 휴가 등으로 직업을 중단했을 때에 정부가 수입의 결손을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 부모비는 “출산에 대한 보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젊은 부모 가족들에게 산아와 함께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 아이를 가지기를 결정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적, 재정적인 보호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2007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가 요구하는 사회정치적인 양면은 부모들에게 어린아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일에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상반기에만 20만 명이 부모비를 신청하였고, 그 중 8.5%가 아버지였다. 2010년 5월 현재 독일에서는 아버지 4명 중 1명의 추세로 부모비를 수령하고 있다. 부모비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부모는 최저 부모비인 300€를 받게 되고 소득이 1,000€인 부모는 670€를 받는다. 부모비 최고 수령한도액은 1,800€나 된다.

나) 이니셔티브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독일의 노동세계의 구조, 특히 근로시간은 가족의 일상에 리듬의 공급자로서 가족생활의 질과 부모의 만족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2010년 가을 독일산업무역회의소(DIHK³²)와 함께 이니셔티브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을 만들었다. 이로써 독일 정부는 고용자에게 보다 더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의 모델을 제공하는데 동기를 부여하였다.

32)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그동안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1년 2월 수상과 많은 경제계 총수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현장”을 통과시켰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알렌스바흐(Allensbach)의 ‘2010년 가족생활 모니터’에 따르면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에 77%가 가족과 직업과의 합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집에 돌봐주어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8%의 응답자가 젊은 가족들을 지원해야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프로그램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유럽사회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기업들의 가족친화적인 근로조건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정부가 기업과 함께 ‘가족친화’를 독일 경제계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trade mark)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 기업과 가족을 연계하는 기업의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로 「사업장 아동보육 지원」(Betrieblich unterschützte Kinderbetreuung)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0~2세의 영아를 가진 근무 직원 모(母)들을 위하여 직장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대표적인 ‘가족과 직업의 합일’을 유도하는 정부의 아동 및 가족 복지서비스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천 개가 넘는 경제기업들 이외에도 재단들, 공공 및 개인 법인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방과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청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정과 학업에서 오는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0~2세 아이를 돌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원하는 대학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처음 2년간은 사업장 마다 운영비의 최고 50% 수준에서 년 간 6,000 €까지 지원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를 가진 90%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족친화가 급여와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라) 가족친화적인 가족모델을 위한 보육서비스

독일 정부는 가족친화적인 가족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그들이 일하는 동안 자녀가 좋은 곳에서 교육받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2013년부터 1살 이후부터 어린 자녀들이 보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보육의 확대와 3세 이하 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40억(€³³)를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이 예산이 어떠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예외로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독일 전역에서 공적으로 보육되고 있는 3세 미만의 아동은 총 472,157명에 달한다.

독일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0~13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3세 이하의 아동 보육을 위한 「보육확대 법안」(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의 연방법을 법제화한 보육확대 법안을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여 2010년까지 23만 명의 아동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12월에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된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 아동 지원법」(Kifög)³⁴은 0~2세의 연령의 아동의 보육을 탁아시설에서 양육하는 것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3장은 아동보육의 확장을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의 조항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먼저 제1조에서는 아동보육의 확대를 보장하는 연방특별자산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 제104b조항에 따라 주와 기초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들이 0~2세의 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의 투자에 재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총 21억 5,000만€에 달하고 있다. 2011년 5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중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까지 보육시설의 38%에 해당하는 750,000개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직 필요한 보육시설의 전체 대비 수요 비율은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39%로 나타나 있다. 정부의 목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그들의 책임을 다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을 지원할 때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3) 2011년 10월 현재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자면 약 6조원이 훨씬 넘는다.

34) Kinderförderungsgesetz: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나.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가) 한부모가정 교육보조비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한부모가정에게 매월 교육보조비를 지급하는데 2010년 1월부터 0~5세 자녀에게는 117€에서 133€로, 6~11세 자녀에게는 158€에서 180€로 교육보조비³⁵⁾를 인상하였다.

나) 자녀비(Kindergeld³⁶⁾)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18세까지 지급되는 자녀비를³⁷⁾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괄목할 만큼 인상하였다. 2010년 1월부터 독일 정부는 자녀비를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164€에서 184€로, 세 번째 자녀에게는 170€에서 190€로, 네 번째 자녀부터는 195€에서 215€로 인상시켰다. 따라서 자녀가 4명인 부모는 자녀비로 총 773€³⁸⁾를 받게 된다.

35) 교육보조비 수여조건은 다른 한쪽의 부모로부터 규칙적으로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6) 독일의 자녀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비로 유명하다. 원래 자녀비는 나치시대에 자녀가 많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35년 일회적 '자녀보조비'로 최초로 지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자녀비는 자녀들의 최저생계비의 명목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급되었는데, 1975년 처음으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었다. 독일 정부는 1988년부터 아동비를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면서 복지지원정책에서 출산장려의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37) 자녀가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자녀비가 21세까지 지급되고, 교육 중에 있으면 25세까지 지급된다. 장애자녀에게는 연령에 제한 없이 자녀비가 지급된다.

38) 2011년 10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185,488원 정도이다.

표 III-3 독일 자녀비 인상년도와 인상액 추이 상황

(단위: €)

년도	자녀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상
1975		26	36	61	61
1978		26	41	77	77
1989		26	51	112	123
1990		26	66	112	123
1992		36	66	112	123
1996		102	102	153	179
1997		112	112	153	179
1999		128	128	153	179
2000		138	138	153	179
2002		154	154	154	179
2009		164	164	170	195
2010		184	184	190	215

출처: wikipedia(위키피디아)³⁹⁾

다) 저소득 가정 지원 정책

독일 정부는 사회체계와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하여 마련된 ‘아젠다 2010’의 일환으로 2005년 1월부터 저소득 가정에게는 위의 자녀비 외에 추가로 자녀추가비(Kinderzuschlag)를 지원하고 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녀추가비는 자녀비(Kindergeld)외에 저소득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 1인당 140€까지 3년간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이며 25세 자녀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진작 지원책으로 마련되었다. 2007년 통계로 독일에서 124,000명이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자녀추가비를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 부모들을 위해서 마련된 지원정책들이다.

- 일일 학교나 유치원 소풍 참여
- 2일 이상의 학급 수학여행 참여
-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장비들 지원
- 취학에의 지원

39) <http://de.wikipedia.org/wiki/Kindergeld>(2011. 10)

- 적절한 교육 지원
- 가정의 공동 급식 시 추가 보조비용 지원
-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 지원

라) 중산층 가족 지원 정책

독일 정부는 직업생활과 보다 조화로운 가족의 삶을 위하여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거나 중산층의 가족들에게는 이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정부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증권이나 주식 모델을 기초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 가족의 노인 지원 정책

가) 가족 돌봄 시간 정책

독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업인 91%는 직업과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의 문제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직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 기관인 알렌스바흐가 독일의 25~59세 직업인에게 설문을 한 결과 79%가 독일의 직업과 가족 돌봄의 통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독일에서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80%는 집에서 늙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독일 정부가 미래 독일사회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족적 결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가족적 결속을 통해서 가족 구성세대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기초해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독일 연방내각은 이를 위해 2011년 3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제출한 「가족돌봄시간법」⁴⁰⁾을 통과시켰다.

40) Familienpflegezeitgesetz

나) 새로운 연령상(年齡像) 정립 정책

독일 연방정부의 제6차 ‘노인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고령은 항상 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소위 ‘젊은 노인’들은 그들의 경쟁력과 경험으로 지금 보다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기를 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오늘날 현 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전망들과 기회들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며, 벽을 허물기 위하여 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 다세대 가정집 지원 정책

2006년 11월 독일 정부는 ‘다세대 가정집 I’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세대 가정집’ 제도는 시민적 참여, 자구(自救) 및 직업지원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다세대 가정집은 세대 간의 연결 다리를 형성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07년까지 독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 다세대 가정집이 설치되고,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를 투입하였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세대 가정집 I’에 이어서 새로운 행동 프로그램 ‘다세대 가정집 II’(www.mehrgenerationenhaeuser.de)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연방자원봉사(BFD⁴¹⁾) 차원에서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교차점이 되고 있다. 연방자원봉사 제도는 정부가 모든 세대들이 서로 다른 세대를 위하여 봉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 인프라 구조를 위한 시민봉사의 기회가 없는 모든 연령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려져 있으며, 무엇인가 사회를 움직여 보려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1년 7월부터 이 제도는 사회적, 생태적 영역뿐만 아니라 스포츠, 통합, 문화, 교육, 시민 및 재난보호 등의 영역들에서 수행되고 있다.

41) Bundesfreiwilligendienst

라) 노인 주거 지원 정책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서로 신뢰하는 가족적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바란다. 독일 정부는 “고령은 집에서-사회적 주거”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한 바램을 지원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4가지 테마영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령에 맞는 건축을 위해 수작업 기능의 질적 제고
- 이웃 지원의 강화
- 사회봉사 수행의 장려
- 교양 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자족적 주거를 지원

라. 가족에서의 양성(兩性) 지원 정책

가) 가족을 위한 여성정책

① 단계적 계획 “지도자 위치에 여성을”

직업세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회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는 여성의 저조한 승진기회가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에게 보육정책의 차이 등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도자 위치에 더 많은 여성들을 세우려는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전제조건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계획을 위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단계적 계획은 무엇보다 먼저 기업들이 지도자 위치에 여성의 몫을 위한 할당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발전상황을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데 있다. 기업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규제가 예상된다. 2011년 3월, 30개 기업들의 인력책임자들과 함께 “지도자 위치에 여성을” 계획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기업들은 이미 2011년을 책임질 여성 지도자의 몫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에서 정해놓은 여성 지위의 통합된 몫이 기업의 지사나 기업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적 규칙 없이 승진을 마음대로 하는 문제들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재취업 여성을 위한 가계에 근접한 서비스 수행

가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한 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도 돌보아야 한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들을 위해 가사로 인한 재취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에 있어서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정부는 가계에 접근된 민을 만한 서비스 수행을 통해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통 여성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정부는 이들 가족에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계를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③ 신뢰가 있는 출산

자신의 임신을 감추려하거나 지우려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낙담하게 되는 긴급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매년 독일에서는 유산과 유아살인이 일어난다. 이러한 한계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돕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갓난아이 침대”, “모세의 광주리”, “익명출산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왔다. 정부가 독일청소년연구소(DJI⁴²⁾에 위탁을 주어 2011년 가을에 제출하게 되는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서비스들과 그들의 효과에 대하여 최초로 총망라하여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임산부가 신뢰할 수 있는 출산의 법적 기초를 시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④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전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독일에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연령, 계층, 종족의 여성에게 이와 관련된 지원체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지원 전화” 제도를 시행하도록 공시하고 있다.

⑤ 「어머니보호법」

독일의 「어머니보호법」은 어머니가 될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젖을 먹이는 어머니, 젖을 먹이지 않는 어머니들을 건강에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은 최초로 1952년 2월에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 법의 주요 내용들에는 ‘어머니 휴가’라고 불리는 근로금지에 관한 내용이 속한다. 법 3조에 따르면 임산부는 의사가 임산부가 일을 계속할 시 임산부와 태아의

42) Deutsches Jugendinstitut

생명이나 건강에 해가 된다고 진단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임신부는 산전 6주안에는 자신이 명백히 일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만 일이 허용된다. 산모는 법 6조에 따르면 조산이나 다산의 경우에는 12주, 보통은 8주 동안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다. 법11조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불된다. 법 13, 14조에는 보험에서 해산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서는 임신과 해산 과정의 조사비용이 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⑥ ‘Girl's Day’ 프로그램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4월 4째 주 목요일에 ‘Girl's Day’가 개최된다. 이 날에는 기술부서를 가진 기업들과, 대학교와 연구소들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 과정의 여학생들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날은 여학생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이나 대학 학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여성에게 흥미가 없었던 직업들에 대하여 관심을 진작시켜 여성들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고무하는 날이다. 2007년을 예로 들면 ‘Girl's Day’에 공학적, 자연과학적, 수공업적, 정보 산업적 직업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8,000개가 넘는 관련 행사들과 약 140,000개의 제안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독일 전역의 많은 지역 학교들과 가족들, 매체들, 기업가들, 이니셔티브들이 이 ‘여성 미래의 날’에 함께 참여하였다.

독일 전국 지역단위로 이를 위해 지역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이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기준으로 2002년에 대비해 결성된 네트워크 수는 4배가 넘었고, 총 650,000의 여성 청소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나) 가족을 위한 남성정책

① 독립적 소년정책과 남성정책

시대에 따른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주목하게 하였다. 여성정책과 함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있어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서 떠나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젊은 소년들을 위해 오늘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남성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년정책 자문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소년정책과 남성정책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문회는 학자들과 실천 현장의 청소년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의 일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 자문회에 6명의 남성 청소년을 참여시켜 이들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② 프로그램 “더 많은 남성을 유치원으로”

이와 함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직업선택의 전망을 확대하려고 하고 이를 유치원의 아동에 있어서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남성을 유치원으로”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많은 남성들을 교육자로 직업을 가지도록 고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독일 전역의 1,300개 시설에 16개 모델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1,300만€가 지원되고 있다. 2010년 4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유치원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의 56%, 운영자의 77%, 실무책임자의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프로그램 “Boy's Day”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1년 4월 처음으로 “Girl's Day”와 마찬가지로 남성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Boy's Day”를 개최하여 남성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스테레오타입과는 다른 스스로 정한 결정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개최된 전국 “Boy's Day”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부터 이전까지 직업선택에 있어서 드물게 있었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하여 알게 하였다. 90개의 관련 시민단체들과 34,000명이 이 행동의 날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로서 미래 남성 청소년의 날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동력을 얻어 고무되어 있다.

다) 가족을 위한 양성(兩性) 정책

① ‘전망 재취업(Perspektive Wiedereinstieg)’ 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의 일로 여러 해 동안 쉬고 있는 여성 모(母)들을 직업으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여성 모들은 출산 후 집에서 쉬다가 직업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상담제공을 하여 취업기회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노동청과 함께 협력하여 2009년 3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독일의 전국 20개 지역에 28개의 참여 주체단체가 형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그룹은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3년 이상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다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주부들이다.

이를 위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2년 2월까지 1,400만€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를 위한 정보제공 홈페이지는 www.perspektive-wiedereinstieg.de로 정부는 이곳에 2011년 5월부터 ‘재취업 계산기’를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재취업에 얼마나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지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Logib-D”

프로그램 “Logib-D(www.logib-d.de)” 와 함께 기업경영의 인력책임자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가능한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0개가 넘는 기업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임금을 위한 구체적인 시작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을 위하여 고용자가 남성과 여성에게 공정한 소득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라벨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③ 프로그램 “Equal Pay Day”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남성과 여성의 소득격차를 주목하게 하는 “Equal Pay Day” 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임금격차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에 정부는 농촌여성단체들과 직접 함께 일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여성들을 상담 지원하고 친가족적 인력정책의 기회를 위해 기업체들을 자극하는 “지역전문여성” 들을 양성하려는 시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특히 보육과 교육에서의 전형적인 여성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재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 가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로서의 가족 강화

① 프로그램 “공격적인 초기 기회들”

물질적인 지원, 가족 지원적 인프라 그리고 아동초기의 교육지원은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원들이다. 따라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공격적인 초기 기회들”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미래기회를 초기에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

부터 2014년까지 400만€를 투입하여 4,000개의 유치원에서 언어와 통합(integration)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를 위해 언어지원의 영역에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② 이니셔티브 “청소년 강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다문화 이주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직업교육과 직업세계로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서비스들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취약 청소년들을 위해 이니셔티브 “청소년 강화”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를 위해 총 1,000개가 넘는 거점이 마련되었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모델 프로젝트 “지역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35개의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사업의 강화를 위한 기초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들도 이들을 위해 참가하고 있는데, 취약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업으로의 이동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① 프로젝트 “대화 인터넷”

2010년 11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프로젝트 “대화 인터넷”을 출발시켰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의 기회를 선용하는 방법과 인터넷의 위험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하여 혁신적인 행위지침들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전문가와 온라인 대화포럼(www.dialog-internet.de)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공개된 과정으로 대화를 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열리게 된다. 2011년 5월에 이 프로젝트의 그동안의 중간결과가 소개되었다. 결과에 따른 행위지침은 2011년 가을에 공개되고 이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의 소통에 관계하게 되고 각자 고유의 생각들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프로젝트 “관용 지원-역량 강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관용 지원-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011년 2,400만€를 투입하여 극우주의에 대항한 지역 행동계획들과 모델 프로젝트, 전국적인 상담 네트워크들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주의 강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정부는 2010년 6월에 특별히 극좌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5백만€를 투입하여 지원되고

있는 중이다.

독일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수행하는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강화이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기본입장은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를 언명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주주의 선언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헌법의 목적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③ 독자적인 청소년정책

아동이나 청소년기는 정부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욕구를 주목하는 독자적인 청소년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14회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날’에 “독자적 청소년정책을 위한 전망과 기회”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되었다.

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정책

① 성 학대에 대항한 원탁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 유기 혹은 학대로부터의 보호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가장 높은 최우선의 과업이다. 교회나 세계의 시설들에서의 알려진 수많은 성적 아동학대 사례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0년 3월 민간이나 공공시설에서와 가족 내에서의 성적 아동학대에 대항하여 원탁회의(www.rundertisch-kindesmissbrauch.de)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2011년 말 이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된다. 첫 번째 결과는 이미 새로운 「연방아동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과거에 있었던 성적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2011년 5월 최종보고를 제출한 독립된 대표(www.beauftragte-missbrauch.de)를 지명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제안들과 충고들은 성적 아동학대에 대항하는 원탁회의의 계속된 작업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서술하고 있다.

② 「연방아동보호법」

독일의 연방의회는 2011년 3월 「연방아동보호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새로운 「연방아동보호법」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학자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관련단체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교류에 기초하였고, “50, 60년대의 보호관찰 교육” 과 “성적 아동학대” 에 관한 원탁회의의 중요한 결과들에서 법안을 이끌어 냈다. 이 법은 능동적이고, 총괄적이며, 영향력 있는 아동보호의 지표로서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법은 아래와 같은 6개 규범영역에서 예방과 개입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 출산 후 초기 지원과 가족의 산파들을 통한 전국적인 지원 확대의 법적 보장
- 지방에서의 아동보호의 개선된 구조적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 기초
- 아동보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행위와 법적 보호의 안정성
-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적 보호위탁의 질적 제고
-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인 질적 제고의 법적 보장
- 아동보호를 위한 통계적 정보기초의 확대

③ 초기 지원 국가센터

어려운 조건들과 부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족과 아동들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는 초기 지원 국가센터 (NFZH⁴³)(www.fruehe-hilfen.de)를 지원하고 있다. NFZH의 과제는 현장에서 가족과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을 초기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가능한 한 임신 때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파와 가족산파가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 안에서 초기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NFZH은 또한 전국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아동 유기와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지방과 지역의 시설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④ 아동·청소년 보호 행동계획 II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폭력과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의회에서 ‘행동계획 II’를 결정했다. 이 두 번째 계획은 2003년부터 있었던 첫 번째 ‘행동계획 I’의 성공적 부분이 도입되어 발전되었다. 여기에서 원탁회의의 결과들과 독립적인 위탁자들의 경험들 및 브라질 리오(Rio)에서의 세계회의의 결과들이 이 계획에 추천되었다.

43) 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바. 한국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의 시사점

가) 행정체계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연방과 지방의 각 주에서 독립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연방에서는 법제도와 재정 등 정책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방 주정부에서는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수준에서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 정부의 행정체계는 중앙 연방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의 전체적인 행정체계는 적절한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적 자치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행정체계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정부의 담당부서인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중심이 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연방의 「아동·청소년계획」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근간으로 전국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 정책의 행정이 총괄되고 있다. 지방정부에는 각 기초단체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청」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가족과 관련하여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한 연방정부에서 연계하여 이루어져 정책적 효율성이 높은 나라이다. 독일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 노인 정책 및 여성정책과 함께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행정 체계적으로 보면 가족의 구성원에는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 있거나 가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구성원 대상으로 각 대상에 따른 정책들을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유형의 변화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 남성, 노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구성원 개체들에게 미치는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에 한국도 독일과 같이 차제에 아동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⁴⁴⁾

독일의 행정체계가 시사하는 것 중에서 한국이 주목할 점은 독일의 행정체계가 중앙과 지방이

44) 지난 2008년 한국 정부는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일 때에 무리하게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피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같이 수행되고 있지만 양 정책은 각기 독립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우리도 과거와 같이 무리하게 양 정책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리되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 및 가족정책은 거의 모든 행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은 항상 가족, 여성 정책에 밀려 뒷전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정치인들은 때에 따라 목청을 높이지만 실제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행정체계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서술된 독일의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행정적 수행체계가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 관련 정책들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관련 기관들과 시설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공과 민간 간의 전달체계가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방으로 갈수록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여기 저기 산재하여 관련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담당인력도 순환보직에 의하여 전문성이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정책의 수행이 어렵도록 느슨하고 영성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앞에서 서술된 다양한 독일의 정책 내용들이 그의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가 기업, 대학, 연구소와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산·학·연 차원의 공공과 민간의 행정체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과 가족의 합일에 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서로 협력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에서 한국정부도 많이 배워 이러한 체계를 형성하도록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야 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책목표에 있어서의 시사점

독일의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 및 아동·청소년 정책은 앞에서 서술한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6대 정강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독일 정부가 2011년 “가족 우선”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6대 정강으로 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가족 및 아동·청소년 정책의 목표인 6대 정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음미해 보자.

첫째, 우리는 먼저 독일이 가족을 가장 미래지향적인 책임공동체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지원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현재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가족의 해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생활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정책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 정부는 직업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나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독일 정부는 기업의 고용주들이 이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한국의 현 추세를 감안할 때에 독일과 같은 '직업과 가족의 합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정부는 독일과 같이 노동의 세계가 가족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사회는 청년실업, 사교육비의 과대, 높은 부동산 가격,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가정의 해체 등의 문제들이 맞물려 젊은이들이 만혼이나 독신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에 방지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다. 따라서 독일의 정강처럼 실제로 가족을 최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는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가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주된 과업이므로 주무부서로서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관계부처들과 함께 독일과 같은 정책목표를 만들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책내용에 있어서의 시사점

위에서 서술한 독일의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6대 정강을 정책목표로 볼 때에 독일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행한 가장 중심된 정책내용은 '가족과 직업의 합일'이다. 위에서 서술된 다양한 독일의 가족정책 및 아동·청소년 정책의 내용들은 양질의 조기교육을 통해 미래 국가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가정에 잠재되어 있는 부모들의 가정보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 일자리를 확대하며, 직장보육을 통해 직장에서의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도 독일의 '가족과 직업의 합일'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재정적 여건이 독일과는 다르지만 여성가족부는 정책내용의 구성을 가족의 해체를

최대한 막고, 가족중심의 문화를 지향하며, 자녀의 교육 및 보육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여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비, 자녀비, 추가자녀비 등의 재정적 제도는 당장 한국이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성공요인 가족’, ‘Girl’s Day’, ‘더 많은 남성을 유치원으로’, ‘Boy’s Day’, ‘전망 재취업’, ‘공격적인 초기 기회들’, ‘성 학대에 대한 원탁회의’, ‘초기 지원 국가센터’, ‘아동·청소년 보호 행동계획 II’ 등과 같은 독일의 정책내용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도록 응용하여 정책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과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 볼 수 있는 ‘부모비’나 ‘자녀비’, ‘가족돌봄시간법’과 같은 관련법 제정도 저소득 가정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위의 독일과 같은 정책내용을 수행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및 가족정책이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에서 정책목표의 수립과 내용의 결정을 위해 관련부처가 상호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가정보육이나 직장보육과 같은 제도가 수행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셋째, 가정보육이나 직장보육을 위한 필요인력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가? 넷째, 정부의 정책내용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련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다섯째, 이러한 정책내용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자원들이 마련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먼저 탐색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내용을 결정하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정책수단에 있어서의 시사점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수단에는 크게 인적수단, 물적수단, 제도적 수단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수단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그 제도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볼 때에 정책수단은 인적수단과 물적수단으로 압축될 수 있다. 독일에서의 고급 인력은 우리나라의 학력과 관계해서 볼 때에 학사나 석사 수준의 학위를 가진 사회교육(Sozialpädagoge)이나 사회복지(Sozialwesen)를 공부한 졸업자로서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와 사회사업사(Sozialarbeiter)를 들 수 있다. 이외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와 직업교육 차원에서 사회사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지도자가

국가의 자격검정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가정복지사나 사회복지사 등이 가족과 관련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아동지도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중복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가족과 직업의 합일’의 차원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보육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이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보육의 질적,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도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요와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독일의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보면 독일이 가족정책과 이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가를 알 수 있다. 부모비, 자녀비, 추가자녀비 등의 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현재 한국은 오랜 동안 5,000억 원이 넘는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했는데 이제 이 기금이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동·청소년 정책을 위한 재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 기금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 국고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물적 자원의 재원은 다양할수록 정책수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도 정책 수행을 위한 물적 수단의 확보를 점진적으로 기금조성을 통해 이루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하나의 선진 문화이고 조성 자체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 동안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되어 왔다. 이 자원은 청소년정책의 핵심이념인 청소년육성을 구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마저 제도적으로 폐지하려는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공론화하는 대화의 장도, 논의의 장도, 과학적 분석과 검토도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결정은 졸속적이고, 단편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로 역사적으로 큰 죄가 될 것이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국고예산을 늘리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을 법제도적으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일본⁴⁵⁾

(1) 일본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현황

가. 소자녀사회의 현황

2007년의 출생자 수는 108만 9,818명으로 전년의 109만 2,674명보다 2,856명 감소하였으며, 6년 만에 증가로 바뀐 전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합계 특수출생율은 제1차 베이비붐기(1947-1949)에는 4.3명을 넘었지만 1950년 이래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후 제2차 베이비붐기(1971-1974)를 포함하여 대략 2.1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5년 2.0명 밑으로 하락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5년에는 과거 최저인 1.26명까지 떨어졌으며 2007년 1.34명 이후 약간 상승하여 2010년 1.39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구전환수준⁴⁶⁾을 크게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內閣府, 2009: 2; 厚生労働省, 2011: 2).

출생자 수의 감소는 일본의 연소인구(0~14세)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자녀·고령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즉 <표 Ⅲ-4>과 같이 전 세계의 연소인구비율(국제연합추계)은 28.3%이지만 일본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연소인구비율은 13.5%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다. 더욱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일본은 22.1%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소자녀·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內閣府, 2009 : 3-4).

45) 이글은 정일교(카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집필하였습니다.

46) 장기적으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합계특수출생율의 수준을 「인구전환수준」이라함(內閣府, 2009: 2).

표 III-4 제 외국의 연령(3구분)별 인구의 비율

국가명	연령(3구분)별 비율(%)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세계	28.3	64.4	7.3
일본	13.5	64.5	22.1
이탈리아	14.0	66.3	19.7
스페인	14.4	68.8	16.8
독일	14.4	66.9	18.8
러시아	15.1	71.1	13.8
폴란드	16.3	70.4	13.3
스웨덴	17.4	65.4	17.2
캐나다	17.6	69.2	13.1
영국	18.0	66.0	16.1
프랑스	18.4	65.3	16.3
한국	18.6	71.9	9.4
싱가포르	19.5	72.0	8.5
미국	20.8	66.9	12.3
중국	21.6	70.7	7.7
아르헨티나	26.4	63.4	10.2
남아프리카공화국	32.1	63.6	4.2
인도	33.0	62.0	5.0

*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 주: 단 제 외국은 2005년 시점의 수치, 일본은 총무성 「인구추계(2008년 10월1일 현재 추계인구)」에 의함(內閣府 2009: 4 재인용).

여성의 취업환경을 보면 출산 전에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의 약 60%가 출산을 계기로 퇴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육아휴업 이용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2008년은 90.6%) 육아휴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도 고려하면 출산전후에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그간 2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출산에 따른 여성의 취업지속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기에 있는 30대 남성의 근무시간을 보면 약 4명중 1명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6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도 과거 10년간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노동시간의 장시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남성의 육아시간은 1일 평균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여 1/2정도이다. 가사시간을 추가하여도 자녀양육기의 남성의 가사·육아시간에 드는 시간은 1일 평균 1시간 정도이며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여 1/3 정도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內閣府, 2010: 12).

1990년대 후반부터 맞벌이부부 세대수가 전업주부의 수를 능가하여 최근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며 산부인과 및 의료시설은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출산할 의료시설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內閣府, 2010: 10-17 참조). 또한 아동이 있는 세대 가운데 3세대 중 1세대가 한부모세대로 나타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166).

20대, 30대의 자녀양육세대의 소득분포를 보면 1997년에는 연 수입 300만 엔대의 피고용자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007년에는 200만 엔대 전반의 피고용자가 가장 많아졌다. 또한 30대에서는 1997년에는 연수입이 500~699만 엔의 피고용자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007년에는 300엔대의 피고용자가 가장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자녀양육세대의 소득분포는 그간 10년 동안 하향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의 빈곤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2009년 11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상대적 빈곤율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현역세대 세대원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의 조사에서 12.2%로 그중 한부모 세대는 54.3%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환경을 보면 완전실업률 및 비정규고용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정규고용자의 유배우자율은 낮아 30~34세의 남성의 비정규고용자의 유배우자율은 정규고용자의 약 1/2정도로 취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가정을 갖는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內閣府, 2010: 11- 1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고용 등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을 느껴 결혼과 출산에 대해 희망을 포기하고, 자녀양육부모들은 불안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소자녀화대책의 관점으로는 실제로 아동·청년들의 욕구와 불안, 장래의 희망에 대응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다(內閣府, 2010: 2).

나. 소자녀화의 원인

소자녀화의 원인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여도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 만혼과 경제적인 사정, 주택사정, 육아불안과 부담감의 고양 등의 요인보다는 ‘낳는 아이의 수가 제한되었다’라는 요인이 크다. 결혼하지 않고 있는 비율(미혼율)은 남녀 모두 1970년경 보다 증가하는 경향이어서 2005년의 20대남성의 미혼율은 70%, 30대 전반남성에서는 약 50%, 20대여성에서는 약 60%, 30대 전반여성에서는 약 30%이다.

가)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식이 「해야 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와 생각이 존중되는 현재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의사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이전처럼 세상에 대한 체면과 가족을 위해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약해지고 있다. 자신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싶고, 자녀양육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결혼과 출산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아이를 갖고 싶어도 혼기를 피하거나 아이를 가질 시기를 저울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나) 낳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

만혼화(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와 만산화(아이를 낳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사정과 주택사정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50%를 넘어, 대학 진학 혹은 그 앞까지 예측되는 교육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택사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와 맨션에서는 방의 수가 적기 때문에 자녀의 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육아의 부담과 고통이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으로도 힘든데 그 이상은 기를 수 없어’라고 하여 낳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17-19).

다. 가족분리로부터 가족지원의 아동복지정책으로의 변화

가) 전통적 가족의 변화와 새로운 아동복지의 욕구

여성고용의 확대와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동복지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가족모델과 아동복지 모델(빈곤아동대책 중심)에서 양적·질적으로 벗어난 대상들이 출현함으로써 이전의 정책으로는 소기의 정책효과가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후정책이 지지했던 가족유형은 이미 주요한 가족이 아니므로 가족유형의 실태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입안, ② 모의 노동시장 참가에 따른 종래의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라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넘어선 광범위한 보육욕구 충족의 필요성, ③ 가족의 불안정성의 확대로 생활보호

만이 아닌 아동빈곤대책의 필요성, ④ 아동기의 생활의 질이 그 아동의 이후 인생의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아동기에 보다 좋은 삶의 질(QOL)의 확보를 위한 정책 등 새로운 아동복지의 관점과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가족의 재결합과 가족지원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의 통합

소자녀화 경향의 증가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계기로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지원서비스는 서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아동양호시설에서 가족사회복지사의 도입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서비스가 가족지원서비스를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가족봉고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어 온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족의 재결합, 즉 아동을 가족에게 다시 복귀시키려는 것과 건전한 부모자녀관계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지원서비스는 가족의 자립성유지를 위해 조기에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소자녀화 대책이 동인이 되어 보육과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확대되게 되었다(古川孝順·田澤あけみ: 2008: 11-12).

라.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동향

앞에서 언급한 배경에 의해 2009년 10월에 「아동·자녀양육비전」이 책정되었으며, 이 「아동·자녀양육비전」은 현재 일본의 아동과 자녀양육의 상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동·자녀양육지원 등의 이념과 기본적인 관점을 통해 앞으로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자녀양육비전」의 목적

「아동·자녀양육비전」은 지금까지의 「소자녀화대책」에서 「아동·자녀양육지원」으로 관점이 옮겨져, 사회전체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생활과 일과 자녀양육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아동이 주인공

비전에서는 「아동이 주인이다」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아동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② 「소자녀화대책」에서 「아동·자녀양육지원」으로

비전에서는 「소자녀화대책」에서 「아동·자녀양육지원」으로 관점을 옮겨,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와 아동 등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아동·청년의 성장, 그리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들이 그들의 희망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교육·취업·생활의 환경을 사회전체에서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생활과 일과 자녀양육의 조화

비전에서는 「아동·자녀양육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공동참여」, 「일과 생활의 조화」, 「아동·청년육성지원」의 각각의 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內閣府, 2010: 22-23).

나) 「아동·자녀양육비전」의 기본적 관점

① 사회전체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한다.

비전에서는 「아동을 소중히 한다」라는 관점 하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라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모든 아동의 살아갈 권리, 성장할 권리, 학습할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와 취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성장과 자녀양육을 끊임없이 포괄적으로 생활주기 전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녀양육력을 고양시키고, 각각 지역사회의 특색을 살리고, 아동과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희망」이 이루어진다.

비전에서는 개인이 희망하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생활, 일, 자녀양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어 아동을 낳고 기르는 것에 꿈을 갖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남녀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나누며, 성별에 관계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남녀공동참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의 사회참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활기찬 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 「아동·자녀양육비전」의 3가지 중요한 자세

① 생명과 성장을 중요시 한다.

한명 한명의 아동이 행복하게 살 권리, 성장할 권리, 학습할 권리를 중요시하고 생명과 성장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의 안심·안전과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정비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아동수당의 증액과 고교의 실질 무상화 등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② 어려움 호소에 대응한다.

아동과 자녀양육가정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려움 해소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과 방과 후 있을 곳이 없는 아동이 있는 자녀양육가정에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한명의 아동과 장애가 있는 아동 등 특히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빈곤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③ 생활을 지원한다.

청년세대에 대한 취업·생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며, 아동과 청년이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內閣府, 2010: 22-26).

(2) 가족 관련 정책(자녀양육지원정책)

아동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2010년 1월에 책정된 아동·자녀양육지원의 종합대책인 「아동·자녀양육비전」은 사회전체가 아동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을 목표로 하는 정책내용과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충실과 일과 생활의 균형의 추진 등 아동양육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厚生労働省, 2011:171), 주요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제도변화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소자녀화와 핵가족화의 진행, 지역사회 관계의 희박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가까운 지역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등 자녀양육이 고립화되고 그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의 80%는 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고립감과 소외감을 가진 여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가까운 장소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자녀가 가볍게 만나 상담과 교류를 하는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의 설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부모자녀의 교류장소의 제공과 교류의 촉진,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원조의 실시, 지역의 자녀양육 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강습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빈공간 및 상점가의 빈점포 등에서 실시하는 「광장형」, 보육소 등에서 실시하는 「센터형」, 민영아동관에서 실시하는 「아동관형」의 세 가지 유형에 의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광장형에서는 기본사업의 추가기능으로 일시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클럽 등 다양한 자녀양육 지원활동을 실시하며, 광장형 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자녀양육가정에 세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통원 및 사회참여활동, 육아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보육소 및 역 앞 등 편리한 장소에서 취학 전 아동을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일시보육」,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양육환경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과 연결하는 「유아가정전화방문사업」,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을 지원하는 「양육지원방문사업」, 영유아와 초등학교 등의 자녀양육 중인 취업자와 주부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아동을 맡아주는 등의 원조를 희망하는 자와 원조 제공을 희망하는 자의 상호원조활동을 하는 「패밀리지원센터사업」,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부모의 잔업과 질병 시 가정의 아동을 맡아주는 「자녀양육단기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지역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170-171).

나. 모자보건의료대책의 충실

가) 「건강한 부모자녀 21」의 추진

21세기의 모자보건분야의 국민운동계획인 「건강한 부모자녀 21」은 2009년 「건강한 부모자녀21」의 평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아동의 마음 건강지원

다양한 어린이의 마음 문제, 아동학대 및 발달장애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있는 거점 병원을 중핵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3년간의 모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모델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의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 임신부검진 및 출산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임산부의 건강관리의 충실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으로 임신부검진에 필요한 회수(14회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방재정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9회분에 대하여 지원을 확충하였으며(모든 시정촌(市町村)에서 14회 이상의 공비조성을 실시 2010년 4월 현재), 2010년도 보정예산으로, 2011년도에도 공비조성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2011년 4월 이래의 출산육아일시금제도는 계속해서 지급액을 원칙적으로 42만 엔으로 하고 있다.

라)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

불임증의 검사·치료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시설 전문의 등이 불임에 관한 의학적인 상담, 불임에 따른 고민 상담 등을 하는 「불임전문상담센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2010년도 61개소). 또한 불임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2004년도부터 차세대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배우자간의 불임치료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2011년 1년에 3회까지, 통산 5년에 10회까지, 1회 상한액 10만 엔)(厚生労働省, 2011:173-174).

다. 아동수당의 지급

아동수당제도의 목적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육성 및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1971년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다음해인 197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급액은 제1자녀 및 제2자녀는

아동 1명당 월 5000엔, 제3자녀 이후에는 아동 1명당 월 1만 엔이었다(千葉茂明, 2007: 134). 최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정책으로서 가장 큰 변화인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들에게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중학교 수료 전까지의 아동 1명당 월 1만 3천 엔의 아동수당을 그 부모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168).

라.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서 아동수당의 실시와 함께 보육시설의 충실, 일과 생활의 조화인 업무·생활·균형의 지원책의 3자가 적절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육아·개호(노인수발)휴업과 단시간 근무제도 등의 양립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남성도 여성도 안심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에서는 노동자로부터의 상담지원, 제도의 보급·정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 184).

마. 한부모가정의 종합적인 자립지원 추진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을 두어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등의 자녀양육·생활지원책, 모자가정 자립지원 급여금의 취업지원책, 양육비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양육비의 확보책,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등의 경제적 지원책과 같은 종합적인 자립지원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모자가정의 모에 대해서는 취업경험이 적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취업이 중단됨으로써 취직에 어려움이 많고, 취업을 했어도 불안정한 고용조건이 많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① 마더(Mother)공공직업안정소를 비롯하여 전국의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자세한 직업상담·직업소개, 지방자치체가 설치한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강습회·취업정보 제공 등의 실시

② 공공직업안정소와 지방자치체가 체결한 협정에 기초하여 공공직업안정소와 복지사무소의 담당자인 「취업지원팀」을 결성하고, 대상자의 욕구, 경험 및 적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 구인 개척과 취직지원 네비게이터에 의한 멘투맨지원 등의 취업지원을 하는 「“복지

에서 취업” 지원사업」의 실시

③ 취업경험이 적은 모자가정의 모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취직 준비단계로서 준비강습과 실제 취직에 필요한 기능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준비강습·직업훈련」의 실시

④ 간호사 등 취업으로 연결되기 쉬운 자격취득을 위해 양성기관의 통학 시 생활비의 부담경감을 위한 고등기능훈련촉진비의 지급기간의 연장, 재가취업의 환경정비에 대한 지원 실시

⑤ 기업에 있어서 모자가정의 모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트라이얼(시행)고용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시행고용격려금의 지급과 계속하여 고용자로 채용하는 경우의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의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모자과부복지대부금에 의해 생활비와 아동의 수확비 등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부양수당은 2010년 8월부터 부자가정도 지급대상이 되었으며, 동년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였다(厚生労働省, 2011: 175-176).

표 III-5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책의 개요

<p>2002년의 제도개정에 의해 「아동부양수당」을 중심으로 한 제도로부터</p> <p>① 양육·생활지원책 ② 취업지원책 ③ 양육비의 확보책 ④ 경제적 지원책 의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취업·자립을 향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시책을 강화</p>			
<p>양육과 생활지원</p> <p>◎ 보육소 우선입소의 법정화 ◎ 헬퍼의 파견 등으로 양육, 생활지원책의 실시 · 새틀라이트(Satellite)형 시설의 설치 등 모자생활지원시설의 기능의 확충</p>	<p>취업지원</p> <p>○ 모자가정 등 취업자립지원센터사업의 추진 ◎ 각각의 실정에 맞는 공공직업안정소 등과의 연계의 의한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의 책정 등 · 모자가정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급여금의 지급 · 준비강습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실시 등</p>	<p>양육비의 확보</p> <p>◎ 양육비상담지원센터 창설 ◎ 양육비 지불 노력의 의무의 법제화 ◎ 민사집행제도의 개정에 의한 이행확보의 촉진</p>	<p>경제적 지원</p> <p>◎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자립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모자과부복지급여의 충실</p>

* 주 : ◎는 부자가정도 대상, ○은 사업의 일부에 관하여 부자가정도 대상

* 자료: 厚生労働省, 2011: 175.

바.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아동대책 등의 충실

보육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면서도 보육소에 입소할 수 없는 ‘대기아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대기아동 제로 작전」 등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의 입소인원 수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4월에는 보육시설의 입소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3개년 계획이 내각에서 결정되어, 이것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의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기준의 탄력화,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운영의 수정(규제완화), 분원의 추진, 지방공공단체의 기준 상승 억제, 공립보육시설의 민영화(민설민영)·공설민영화 등이 있다(西館有沙德田克己·高玉和子編著, 2009: 81-82).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대기아동이 많이 생기고 있어 그 수는 2010년 4월 현재, 약 2만 6천명으로 보육시설의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10년 1월 29일에 책정한 「아동·자녀양육비전」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정원을 2009년도의 215만 명에서 2014년도에 241만 명으로 목표를 높여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169-170).

사.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등 요보호아동대책 등의 충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심신의 발달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의 발생예방, 조기발견 및 대응,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종합적 지원체제의 정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厚生労働省, 2011: 176).

① 발생예방에 대해서는 전술의 「유아가정전화방문사업(안녕 아기사업)」과 「양육지원방문사업」, 「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의 추진

② 조기발견 및 대응에 대해서는 시정촌에서 「아동을 지키는 지역 네트워크(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강화,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사의 확보 등 가정재통합과 가정의 양육기능의 재생·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부모지원의 추진

③ 보호·자립지원에 대해서는 가정적 환경에서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양친부모제도의 확충, 아동양호시설 등의 소규모케어 추진, 연장아의 자립지원책의 확충, 시설 내 학대방지 등 시설입소아동의 권리옹호의 추진.

(3)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가. 아동·청소년 현황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0년 1월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천 805만 6천명으로 이중 「아동·청년⁴⁷⁾비전」(2010년 7월 결정)에서 말하는 아동·청년(0-29세)의 인구는 3,723만 2,000명으로 총인구의 29.1%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1,907만 4,000명, 여자는 1,815만 8,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91만 6,000명 많으며 여자 100명에 대하여 남자 105명의 비율이다(內閣府, 2011:2).

이러한 아동·청년의 대한 인구 추계 중 주로 청소년문제에 초점을 두고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왕따 현황

2009년의 국·공·사립의 초등·중·고등학교 및 특별학급 학교에서 왕따의 인지 건수는 초등학교 3만 4,766건, 중학교 3만 2,111건, 고등학교 5,642건, 특별지원 학교 259건으로 합계 7만 2,778건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약 1만 2,000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문부과학성, 「2009년 아동생도의 문제행동 등 생도지도상의 제문제에 관한 조사」 참조).

나) 부등교 현황

2009년의 국·공·사립의 초등·중학교의 부등교 아동학생수는 초등학교 2만 2,327명, 중학교 10만 105명의 합계 12만 2,432명으로 초등·중학교를 합해서 부등교 아동학생수는 2008년도에 비해 약 4,500명 감소하고 있다. 전 아동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부등교 아동학생수의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2.8%이며 전체로 1.1%이다(文部科學省, 「2009年 児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関する調査」 참조).

47) 아동·청년은 子ども若者の 번역으로 일본에서는 0~29세까지의 연령을 말하며(內閣府, 2010: 2), 2010년부터 「청소년백서」가 「아동·청년백서」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에 대한 현황은 아동·청년의 현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나.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동향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양육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프리터와 청년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래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지키고 양육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식 하에 20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2009년 법률 제71호) 제8조 제1항에 기반을 두어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요강으로 「아동·청년비전」이 작성되었다(內閣府, 2011: 227). 이 비전에 의한 일본의 아동·청년지원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년비전」의 5가지 이념

① 아동·청년의 최선의 이익 존중

일본 헌법 및 아동 권리 조약의 이념에 준하여 아동·청년은 개인으로써 존엄을 존중하여 발달단계에 따라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아동·청년과 성인의 상호 존중

아동·청년을 어른에 비하여 한 단계 아래의 존재로써 생각하거나 역으로 아동과 청년을 어른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년과 성인이 서로 존중해 가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담당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자기를 확립하고 사회에서 능동적 형성자가 되기 위한 지원

아동·청년이 사회와의 관계를 자각하면서 자존감과 자기긍정을 키워 자립한 개인으로써 자기를 확립하고,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적응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의 사회를 좋게 바꾸어 가는 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④ 아동·청년 한명 한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사회전체에서 증충적으로 실시

아동·청년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 혹은 안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서 서로 연계 협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각기 놓인 상황, 발달장애, 성별 등에 따라 어려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배려하면서 세심한 지원을 한다.

⑤ 성인사회 존재방식의 개선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성인이 아동·청년에 대한 가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청년의 문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에 기반을 두어 성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자각하고 아동·청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개선을 위하여 사회존재 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나) 「아동·청년비전」 정책의 기본 방향

①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아동·청년의 자기형성 지원

아동·청년의 자기형성 지원을 위하여 일상생활 능력의 체득, 다양한 활동기회의 제공, 학력의 향상, 대학교육 등의 충실, 경제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체득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의사소통 능력과 규범의식 등의 육성, 체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기회의 제공에서는 집단 놀이기회의 확보, 독서활동의 추진,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 생애학습 지원, 다양한 가치관에 따른 기회의 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력 향상에서는 지식·기능과 사고력·판단력·표현력·학습의욕 등의 「탄탄한 학력」의 확립, 기초학력의 보장, 고등학교 교육의 질 보증, 학교 교육의 정보화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육 등의 충실에서는 교육내용·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생애학습 기회의 충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모든 의지가 있는 아동·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희망하는 교육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아동·청년의 사회형성·참여 지원

아동·청년의 사회형성·참여 지원을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교육, 아동·청년의 의견 표명기회의 확보,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의 추진,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형성·참여 지원을 촉진하고 있다.

㉔ 아동·청년의 건강과 안심의 확보

「아동·자녀양육비전」에 기초한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의 확보, 소아의료의 충실, 사춘기 특유의 과제에 대한 대응, 건강교육의 추진을 통한 건강의 확보·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상담체제의 충실, 지역에서 상담, 의료기관에서의 대응을 통하여 상담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㉕ 청년의 직업적 자립, 취업 등 지원

청년의 직업적 자립과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관·직업관과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취업능력·의욕의 습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취업지원의 충실을 통하여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지원도 하고 있다.

②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

㉑ 니트(청년무업자), 은둔형외톨이, 부등교 아동·청년의 지원

2010년 4월에 시행된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법」에 기초하여 니트와 은둔형외톨이, 부등교 등의 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 등 다양한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발달단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㉒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의 지원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이 친근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와 방과 후 지원 등의 충실과 더불어 장애의 특성을 배려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㉓ 비행·범죄에 빠진 아동·청년의 지원

「갱생보호활동지원센터」 및 「지원팀」의 활동 등으로 비행방지와 갱생을 위하여 소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문제 해결 지원팀」과 「학교·경찰연락협의회」 등의 활용과 학교지원제도의 확충 등으로 학교와 경찰 등 지역관계기관 등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㉔ 아동 빈곤에 관한 대응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한명 한명의 아동의 성장을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응원한다는 관점에서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초등,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고교의 실질 무상화의 정착의 추진과 더불어 시정촌이 실시하는 취학원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학금 충실과 더불어 실질적인 급여형 경제적 지원으로써 대학 등의 수업료 감면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업하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대상자의 아동에게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빈곤이 세대를 넘어 계승되지 않도록 자립을 전제로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보육시설 등의 공적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한명 한명에 대하여 교육 및 복지관계자, 지역의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하고 생활면의 지원, 학습면의 지원, 가정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㉔ 주거지원

비행소년을 위한 갱생보호시설과 자립원조 홈의 충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규모 그룹케어 및 지역 소규모 아동양호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양호시설을 나온 후 학업·취업을 목표로 한 아동·청년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등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㉕ 외국인 등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년의 지원

외국인의 일본어 능력 등을 배려한 일본어 지도 체제의 정비와 정주외국인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동일성(性同一性) 장애인과 성적 지양을 이유로 편견과 차별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10대 부모에게 임신에 따른 학업의 지속지원과 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식과 경험부족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아동·청년지원정책

가) 고등학교중퇴자에 대한 지원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는 프리터나 청년무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노동자에 대한 어려운 고용상황 중에서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 중 취업의욕이 낮고 기초학력이 낮은 경우는 정규 고용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한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에 대해서 중도 퇴학 전부터 고등학교와 외부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직업선택과 직업생활에 관한 지식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과 고등학교로의 재입학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도 퇴학 후에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①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활용한 지원사업

후생노동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동하여 청년의 자립을 목적으로 청년지원의 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의 NPO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약칭:서포스테)을 설치(2011년도: 전국에 110개소)하고 있다.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에서는 취업 컨설턴트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까지는 「고교중퇴자 찾아가는(아웃리치) 사업」(2010년도: 전국60개소 실시)을 실시하여 고등학교와 연계 하에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1년 이내의 고교 중도 퇴학자(예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방문지원상담의 취업 컨설턴트에 의해 집으로의 방문지원(아웃리치)을 실시하고 있다(內閣府, 2011: 69).

② 고등학교졸업정도 인정시험

고등학교 중퇴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하는 시험으로 문부과학성이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정도 인정시험이 있다.

시험합격자는 국, 공, 사립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고, 취직과 각종 자격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근래 합격자의 최종학력의 추이를 보면 고등학교 중도 퇴학자가 60-70%를 점하고 있다. 인정시험이 고등학교 중도 퇴학 후 「고교의 자격」을 얻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內閣府, 2011: 70).

③ 민간 지원 단체에 의한 「학습의 장, 거처」의 제공

중도 퇴학을 계기로 사회와의 접촉이 없어져서 은둔형외톨이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 NPO 등의 시민지원단체는 「학습의 장,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內閣府, 2011: 71).

나) 청년의 직업자립지원

① 근로관·직업관과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의 형성

㉠ 경력교육·직업교육의 추진

최근 청년들의 완전실업률·비정규 고용률의 높음과 청년무업자(니트)·조기 이직자의 존재 등 청년의 「학교로부터 사회·직업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의 저하와 직업의식·직업관의 미숙, 진로의식·목적의식이 희박한 채 진학하는 자의 증가 등 청년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향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경력교육·직업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생애에 걸쳐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에 근거한 구체적 정책이 제언되고 있다.

첫째, 유아기 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경력교육의 추진, 둘째, 실천적인 직업교육의 중시와 직업교육의 의의의 재평가, 셋째,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경력형성지원(생애학습기회의 충실·중도 퇴학자의 지원)

㉡ 직업에 대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공공직업안정소에서 기업의 근로자를 강사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파견하여 직업과 산업의 실태, 일의 의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경력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약 3,455개 학교에서 약 32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 인턴십(취업체험)의 추진

직장체험·인턴십은 실질적인 지식과 기능의 학습, 학교에서의 학습과 직업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심화, 바람직한 직업관·근로관의 육성, 보호자와 교사 이외의 어른과 일을 함께 해봄으로써 직업능력의 향상 등 교육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2009년도의 공립중학교 전체의 직장체험의 실시율은 94.5%이다.

② 능력개발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시도부현은 공공직업능력개발 시설

이외에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교육 훈련기관 등을 활용하여 공공직업훈련과 긴급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프리터 등의 정규직 경험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카드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경력과 컨설팅을 통한 의식계발과 경력형성, 기업실습과 강좌를 합친 실천적인 직업훈련(직업능력형성 프로그램)의 기회제공,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와 직무경력 등을 직업카드로 정리하여 정규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직업카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內閣府, 2011: 106-109).

다) 취업 지원의 충실

① 고등학생의 취업지원

후생노동성에서는 학교 졸업 직업지원센터를 활용⁵⁰⁾하여 보호자와 함께 고등학교 재학 중에서부터 일할 의의 및 직업생활에 대한 강습, 지역기업을 활용한 고교 내 기업설명회, 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발신 등 학교와 일체된 취업지원을 지원하고 있다(內閣府, 2011: 109).

②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지원

㉠ 포괄적인 취업지원 정책

후생노동성에서는 「young job spot사업(독립행정법인 고용 능력 개발 기구실시)」을 2002년부터 전국 25개소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업에 관한 포럼·직업인과의 만남사업을 중심으로 상담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사업 「Job Cafe」를 「청소년자립·도전플랜」의 행동플랜으로써 경제산업성과 협동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Job Cafe는 도도부현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윈스톱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과 상담·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小杉札子 2005:25). 또한 청년무직자(니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04년에 「청소년자립기숙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합숙형식으로 생활훈련, 노동체험을 통한 직업인,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능력의 습득, 노동관의 양성 및 자신감과 의욕을 부여하는 사업을 전국 2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청소년자립기숙사」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직업에

50) 공공직업안정소에 있어서 또는 고교·대학 등에 대학생·교생의 취업활동의 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활동에 있어 세미나 개최 등에 의해 신규졸업자·기존졸업자 한명 한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방문하고 구인개척·지역의 중소기업과 신규졸업자 등의 매칭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穴澤義晴, 2006: 71).

후생노동성에서는 도도부현이 설치한 Job Cafe(2010년 4월 현재 46도도부현에 설치)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한 기업설명회와 각종 세미나 등의 사업(청년자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이외에 도도부현으로 부터의 요청에 따라 Job Cafe에 공공직업안정소를 병설(2010년 4월 현재 40개 도도부현에 병설)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직업소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의 실적은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73만 명, 취직자 수는 약 10만 명을 상회한다.

㉠ 근로청소년의 복지대책

근로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은 「근로청소년복지법」(1970년 법98) 및 이법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근로청소년복지대책 기본방침」에 의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4월에 책정된 「제9차 근로청소년복지대책 기본방침」(2011년 - 2015년)에서는 근로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의 보다 충실한 직업생애의 실현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경력형성의 추진, 자립에 기반이 되는 사회네트워크의 추진을 목표로 근로청소년복지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內閣府, 2011: 111-113).

㉡ 창업지원

경제산업성에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신규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청년·노인창업과 지원 자금에 의해 여성 및 청년자(30세 미만) 또는 고령자(55세 이상) 중 신규개업으로 약 5년 이내 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해 저이자 용자를 실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 스스로가 창업해 1년 이내에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의 사업주로 되는 경우 창업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에 따라 실업자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http://www.mhlw.go.jp/general/seido/josei/kyufukin/bo2-2.html>).

라) 은둔형외톨이, 청년무직자, 부등교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 니트(청년무직자) 등의 청년에 대한 지원

니트 등 청년의 직업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각 지역에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을 창설하여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년지원기관 네트워크의 중핵으로서 각 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설치 거점을 확충(110개

소, 전년대비 10% 증가)하고, 고교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지원(찾아가는 서비스), 공공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에 대한 생활지원, 학력을 포함 기초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②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지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 등에서는 은둔형외톨이 본인과 가족에 대해 의사, 보건사, 정신보건복지사 등의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상담 사업을 보다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지원전문기관의 직원 등을 위한 「은둔형외톨이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나아가 은둔형외톨이 상태에 있는 자 및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보건·복지·교육·고용 등의 관계기관과의 연계 하에 은둔형외톨이 전문상담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은둔형외톨이 지역지원센터」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③ 부등교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문부과학성에서는 「학생지도·진로지도 종합추진사업」을 통하여 부등교 등의 문제행동의 미연방지 및 조기발견·조기대응에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부등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연계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민간단체의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전문적인 인재의 활용, 문제행동 등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상담체제의 충실을 위하여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마음의 전문가」인 학교상담가를 공립초등·중학교에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아동 학생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원조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内閣府, 2011: 114-116).

마)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의 지원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1947년 법146) 및 「장해자자립지원법」⁵¹⁾(2005년 법123)에 기반을 두어 시정촌 등에서 홈헬퍼 및 아동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보건, 복지의 최근 동향을 보면 「장해자제도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2010년

51) 일본에서는 장애인 용어를 장해자로 칭하고 있다. 본문에서 법규상의 용어는 원명대로 장해자로 칭하였으나 그 밖의 일반적인 용어는 장애인 또는 장애로 칭하였다.

6월 내각회의 결정」에서 「현행의 장애인복지법(2005년 법123)」을 폐지하고, 지원의 지속적인 제공, 개개의 욕구에 기초한 지역생활지원체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종합복지법(가칭)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內閣府, 2011: 117).

① 발달장애아동·청년의 복지시책

자폐증, 주의결핍다동성장애(ADHD), 학습장애(LD) 등의 발달장애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정한 「발달장애자 지원법」(2004년 법167)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의하여 후생노동성에서는 자폐증, ADHD, LD 등의 발달장애에 대하여 가정, 학교 등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영유아건강검진 등의 조기발견 노력 외에 의료,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등의 관계당국이 밀접하게 연계하여 생애단계에 걸쳐 일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의료·보건·복지·교육 등의 관계자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등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1일 현재 64개 시도부현 지정도시에 설치되고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지원체제정비사업」에 의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각 생애단계에 걸쳐 일괄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관계네트워크 구축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지원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부모가 그 경험을 활용하여 자녀가 발달장애의 진단을 받은 부모에 대하여 상담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 부모멘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양성된 부모멘토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발달장애의 지원은 조기발견·조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발달장애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이 보육시설 등의 아동과 그 가족이 모이는 시설·장을 순회하여 시설의 직원과 부모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다.

②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최근 급증하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 구직자에 대하여 그 장애 특성에 따른 세심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그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중에는 발달장애 등에 의해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자가 적지 않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직업안정소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원에 의해 세심한 개별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는 「청년의사소통능력 요지원자 취직 프로그램

램」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일반 직업능력개발학교의 배리어후리화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입학율 촉진하고, 이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코스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입학율을 촉진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학교에 입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학교(전국 19개교)에서 장애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생애에 걸쳐 자립과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취업을 지원하여 직업적인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지원학교에서는 학생의 장애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기술과 정보처리능력을 육성하기도 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직장체협의 기회를 갖는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內閣府, 2011: 120-122).

바) 사회적 양호의 충실

① 가정적 양호의 추진

아동양호시설 등의 입소시설에서는 가능한 한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직원과의 개별적인 관계성을 중시한 세심한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케어형태의 소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동양호시설, 영아원, 정서장애아 단기치료 시설 및 아동자립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그룹케어의 실시 및 아동양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소규모 아동양호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사회적 양호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위탁부모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위탁부모의 수당을 인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기관사업」에 의해 위탁부모에 대한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부모회 또는 아동가정지원센터, 시설, NPO 등에 위탁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개정으로 가정위탁 및 시설 입소에 추가하여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패밀리 홈)」이 새로운 사회적 양호의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② 연장아 자립지원의 확충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연장아를 위해 200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자립원조 홈)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도도부현이 그 비용을 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와 취업지원에 정통한 직원 등을 배치하여 상담지원, 취직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역생활

② 성동일성(性同一性)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법무성의 인권옹호 기관에서는 「아동의 인권을 지키자」 및 「외국인 인권을 존중하자」 이외에 「성동일성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없애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없애자」 등을 연간 강조사항으로 들어 일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강연회의 개최와 계발책자 등의 배포 등의 계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성동일성 장애가 있는 아동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급담임과 관리직을 비롯하여 양호선생, 학교상담가 등 교직원 등이 협력하여 아동 학생들의 실정을 파악한 후에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아동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는 교육상담이 철저히 되도록 관계자에게 의뢰하고 있다.

③ 10대부모에 대한 지원

임신·출산·육아에 대하여 의사 및 조산부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임신부 검진을 하는데 필요한 회수인 14회 정도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제2차 보정예산의 공비부담을 확충하고 2011년도 공비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임신 및 출산 등의 고민이 있는 10대에게 방문지도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활용한 지원과 보건의료시설 등 상담자가 이용하기 쉬운 시설에서 실시하는 여성건강지원센터사업을 통하여 상담체제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內閣府, 2011: 141-142).

자) 왕따 피해 대책

문부과학성에서는 2010년 11월 9일의 통지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지정도시 교육위원회 및 학교에 대하여 왕따의 조기발견·조기대응, 왕따를 허용하지 않는 학교 만들기 등 새로이 왕따 피해 대책에 대하여 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아동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왕따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전국 통일의 전화번호(0570-078310)를 설정하고 도도부현·정령 지정도시 교육위원회에서 24시간 왕따 다이얼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1월에 학교·교육 교원용 「네트워크상의 왕따」에 관하여 대응 매뉴얼 사례집을 작성하고 각 학교·교육위원회에 배포하고 있다(內閣府, 2011: 152).

차) 자살대책

정부에서는 「자살대책기본법」에 기반을 둔 「자살종합대책요강」에 따라 관계당국이 연계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살종합대책회의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대책 긴급 플랜」(2010년 2월 5일 결정)을 책정하여 자살대책을 긴급하게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2010년 자살자수를 가능한 감소시키기 위하여 2010년 9월 7일 자살종합대책회의 하에 자살대책 TF팀을 설치하여 자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선진 7개국에서 유일하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죽음의 원인으로 자살이 가장 많다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에서는 자살예방주간·자살대책강화월간(月間) 및 자살·우울증 등 대책강화월간사업, 지역사회에서 마음건강만들기와 상담체제 등의 추진과 더불어 2010년 1월에 「자살·우울병 등 대책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여 자살의 실태파악과 보다 실효성 높은 자살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자살·우울증 등 대책 프로젝트 팀에서 향정신약의 처방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2010년 9월 약제사의 활용과 가이드라인의 작성 등 과다복용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內閣府, 2011: 153).

(4) 우리나라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의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 소자녀화의 경향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족유형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가족분리적인 복지정책이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한명 한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예방적 가족복지정책,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참가를 비롯한 직업자립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등 새로운 아동·청소년 복지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 출산에 따른 소자녀화의 급속한 진전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의 출현,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최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량생산사회에서 다품종소량생산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비정규직취업,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가족 욕구에 대한 대응과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지원,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직장경험, 취업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의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자녀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실제로 「아이의 출산을 제한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이 선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소자녀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고, 이는 일과 양육의 어려움, 자녀양육이 부담감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아이의 출산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와 자녀양육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으며, 취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 부모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도 그 다양성을 존중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생애주기 전체를 통하여 사회전체에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의 생활의 질이 이후 아동의 인생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아동기에 보다 좋은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가능한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함께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를 가족복지서비스와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건전한 부모자녀관계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경우 케어형태의 소규모화, 소규모 주거형 아동양육사업의 실시로 가정적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가족소규모화의 진행, 지역사회 관계의 희박화 속에서 자녀양육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녀 양육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자녀양육가정이 편안하게 자녀양육 상담을 하고, 자녀양육 가정끼리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양육지원 거점사업으로써 아동관사업, 패밀리지원센터사업 등의 설치 확대가 촉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녀양육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립가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지역사회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양육은 다음 세대의 사회를 담당하는 건강한 국민의 양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므로 좀 더 장기적이고 예방적 관점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수당으로 모든 중학생까지 확대 실시하고, 고등학교의 실질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 대한 장단점,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의 실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완전실업률, 비정규고용비율의 증가, 프리터, 청년무직자

(니트)의 증가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젊은 세대의 빈곤으로 이어져 미혼율의 증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져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여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상태인 비정규직 취업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명 한명에 대한 자기형성지원, 사회형성, 사회참여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사회전체에서 중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청년의 취업능력, 의욕의 향상, 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지원 등 직업자립을 위한 경력교육, 직업교육, 직업체험학습, 포괄적인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졸업 후 청년백수로 이어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학교 수업 안에 미래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보다 직업에 대한 확고한 준비로 미래의 프리터와 니트를 예방하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일곱째, 세계화의 경향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들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청소년, 성동일성 장애인, 10대부모, 왕따 피해 청소년 등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차별을 줄이며, 일반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3. 조사결과 분석
4. 소결

제 4 장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개요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가족유형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 생활실태를 바탕으로 가족유형별 정책방향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학교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300개 학교의 9,396명이 목표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접조사로 이루어졌는데, 표본 리스트에서 조사 대상 학교로 추출된 학교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데이터 클리닝 기간을 포함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2) 표본 설계⁵²⁾

(1) 모집단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모집단 분석은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IV-1>에

⁵²⁾이 표본설계는 본원 2011년도 고유과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의 공동연구원인 강현철 교수가 제안, 작성한 것으로 통합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5,738,73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21,490명(31.7%), 중학교 1,963,789명(34.2%), 고등학교 1,953,452명(34.1%)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1,490,496명(26.0%), 전문계 고등학교 462,956명(8.1%)이다.

표 IV-1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5,738,731	604,859	598,653	617,978	642,335	651,198	670,256	504,199	494,238	492,059	155,725	152,334	154,897
서울	1,016,117	103,690	101,828	105,684	111,511	113,841	118,508	100,703	99,789	101,788	19,843	19,174	19,758
부산	375,267	36,188	36,189	38,178	40,638	43,055	44,933	33,492	33,911	34,414	11,079	11,269	11,921
대구	310,395	30,708	31,256	31,969	34,687	35,530	37,371	28,651	28,750	28,810	7,619	7,356	7,688
인천	325,321	33,349	33,434	34,312	36,257	36,817	38,464	29,778	29,121	29,485	8,001	8,127	8,176
광주	202,266	21,444	21,134	22,184	23,188	22,995	23,859	18,022	17,386	17,102	5,004	5,015	4,933
대전	189,814	19,859	19,536	20,520	21,278	21,757	22,431	17,948	17,516	17,698	3,887	3,751	3,633
울산	150,316	15,003	15,205	15,915	16,799	17,217	17,942	13,816	13,768	13,849	3,786	3,574	3,442
경기	1,401,548	155,309	152,231	155,605	159,002	158,708	161,549	121,249	115,716	112,464	36,127	36,031	37,557
강원	169,832	18,157	18,170	18,922	19,279	19,203	19,586	11,331	10,854	10,714	7,958	7,784	7,874
충북	181,176	19,095	19,019	19,896	20,546	20,920	21,180	13,592	13,969	13,649	6,742	6,352	6,216
충남	230,244	25,463	24,809	25,706	25,859	25,870	26,212	19,689	19,035	18,744	6,556	6,289	6,012
전북	222,263	23,320	22,942	24,263	24,853	25,400	25,986	17,074	16,852	16,666	8,616	8,222	8,069
전남	215,295	22,917	22,944	23,609	24,151	24,505	25,065	16,605	16,314	16,212	7,836	7,568	7,569
경북	285,611	30,448	30,461	30,341	32,118	32,026	32,849	23,288	22,742	22,581	9,567	9,397	9,793
경남	390,559	41,778	41,616	42,923	43,837	45,088	45,860	33,627	33,255	32,740	10,295	9,815	9,725
제주	72,707	8,131	7,879	7,951	8,332	8,266	8,461	5,334	5,260	5,143	2,809	2,610	2,531

(2) 표본 설계

가. 표본 크기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표 IV-2>와 같이 8,5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1\%P$ 이다.

나.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지역은 16개 광역 시도로 구분하였고, 학교는 4개(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학년은 3개로 구분하였다.

표 IV-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604,859	1,821,490 (31.7%)	2,698 (31.7%)	2,326 (27.0%)		
		5	598,653					
		6	617,978					
중학교	중학교	1	642,335	1,963,789 (34.2%)	2,908 (34.2%)	2,657 (30.9%)		
		2	651,198					
		3	670,256					
고등학교	일반고	1	504,199	1,490,496 (26.0%)	2,208 (26.0%)	2,271 (26.4%)		3,629 (42.1%)
		2	494,238					
		3	492,059					
	전문고	1	155,725	462,956 (8.1%)	686 (8.1%)	1,358 (15.8%)		
		2	152,334					
		3	154,897					
합계			5,738,731 (100.0%)	8,500 (100.0%)	8,612 (100.0%)			

다. 표본 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 하도록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V-3>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V-3>과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00여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에 21명(학년당 7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4개)=64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 수가 300개가 되도록 하였다.

표 IV-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8,500	2,698	2,908	2,208	687	299.4	118.5	92.6	64.1	24.2
서울	1,505	462	509	448	86	47.2	16.8	14.9	12.4	3.1
부산	556	165	191	151	51	18.5	6.6	5.8	4.3	1.9
대구	460	138	159	128	33	14.2	5.1	4.4	3.5	1.1
인천	482	150	166	131	36	16.0	6.2	4.7	3.9	1.2
광주	300	96	103	78	21	9.1	3.6	2.8	2.1	0.6
대전	281	88	97	79	17	9.0	3.4	2.8	2.2	0.6
울산	223	69	77	61	16	7.1	2.7	2.3	1.6	0.5
경기	2,076	685	709	518	163	64.9	25.7	20.2	14.0	5.0
강원	252	82	86	49	36	12.0	5.2	3.5	1.8	1.5
충북	268	85	92	61	28	10.7	4.5	3.4	1.8	0.9
충남	341	113	115	85	28	14.1	6.3	4.1	2.7	1.1
전북	329	105	113	75	37	15.2	6.5	4.7	2.5	1.5
전남	319	103	109	73	34	15.1	6.5	4.5	2.5	1.6
경북	423	135	144	101	43	19.3	8.1	6.1	3.4	1.7
경남	578	188	200	148	44	23.0	9.5	7.2	4.6	1.6
제주	108	36	37	24	12	4.0	1.7	1.2	0.7	0.4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30명, 인문계 고등학교 34명, 전문계 고등학교 28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8,612	2,326	2,657	2,271	1,358	300	102(34)	84(28)	66(22)	48(16)
서울	1,443	413	512	434	84	45	15(5)	15(5)	12(4)	3(1)
부산	536	149	198	107	82	18	6(2)	6(2)	3(1)	3(1)
대구	388	80	107	108	93	12	3(1)	3(1)	3(1)	3(1)
인천	441	146	107	100	88	15	6(2)	3(1)	3(1)	3(1)
광주	406	80	111	114	101	12	3(1)	3(1)	3(1)	3(1)
대전	376	79	103	107	87	12	3(1)	3(1)	3(1)	3(1)
울산	383	76	102	112	93	12	3(1)	3(1)	3(1)	3(1)
경기	1,732	559	631	444	98	54	21(7)	18(6)	12(4)	3(1)
강원	278	47	74	83	74	12	3(1)	3(1)	3(1)	3(1)
충북	326	57	81	99	89	12	3(1)	3(1)	3(1)	3(1)
충남	366	108	84	95	79	15	6(2)	3(1)	3(1)	3(1)
전북	333	97	72	90	74	15	6(2)	3(1)	3(1)	3(1)
전남	318	95	73	86	64	15	6(2)	3(1)	3(1)	3(1)
경북	409	100	141	90	78	18	6(2)	6(2)	3(1)	3(1)
경남	521	178	166	96	81	21	9(3)	6(2)	3(1)	3(1)
제주	356	62	95	106	93	12	3(1)	3(1)	3(1)	3(1)

주)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라. 표본 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V-4>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6개)=96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3) 실사 설계

(1) 리스트 정제 및 사전 접촉

사전 접촉을 진행하기 전 리스트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학교명,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의 누락 여부 및 휴교 중인 학교 등 조사 대상 학교의 적절성, 조사 대상 학교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조사 협조도 제고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리스트 이용 조사 협조 경험이 높은 면접원을 위주로 투입하여 면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원표본 유지율을 높이고 대체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의 교감 선생님 앞으로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한 후 사전 접촉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조사에 대해 사전 인지하도록 하여 조사 협조도를 제고하였다. 사전 접촉 시 담당 교사 지정을 사전에 요청하여 학교 방문 시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2) 학교 방문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면접원을 선발하기 위해, 학생 및 교육, 학교 조사 경험자를 중심으로 면접원을 선발하였고, 조사 진행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사 담당 연구원이 각 지역별로 집체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리서치 직영 실사 사무소에서 면접원을 직접 선발 및 통제함으로써 조사 방법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접촉 면접원, 학교 방문 면접원, 코딩 및 에디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 내용, 학교 접촉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실사 진행

사전 접촉 시 지정된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약속을 잡으며, 방문 조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담당 교사의 안내를 받아 직접 학생들을 통솔하여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원은 학교의 교급에 따라 2인 1조의 시스템과 1인 1조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도와 이해력이 낮아 학생들을 충분히 통제하기 위해 면접원 2인이 1조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생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제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여 면접원 1인이 1개 학급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1개 학교에서 완료해야 하는 모든 과제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만 해당 샘플의 조사 완료로 보고, 일부 과제의 누락 또는 특정 사유로 인해 조사 대상 학급 학생들의 30% 이상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서 진행한 모든 설문지를 폐기하고 다른 학교로 대체하였다.

사전 접촉을 통해 조사 협조해 주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학교 사정 등으로 조사 협조를 철회하는 경우 대체 차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촉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4) 조사표 검증 및 자료 처리

조사표 검증은 총 3차 검증을 실시하며, 1차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회수하기 전에 무응답 여부, 분기 문항 등을 확인하고, 2차 검증은 조사표를 회수한 뒤 학급을 떠나기 전에 검토하고, 3차 검증은 연관 문항을 중심으로 에디팅을 실시, 연관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조사표를 재확인하여 처리하였다.

한국리서치에서는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대해 더블펀치를 실시하여 입력 아동·청소년을 최소화하였으며, 자료 입력 시 설문 로직 등을 자료 입력 프로그램에 설정하여 자료 입력 과정에서 설문지 기입 오류를 확인 및 수정하였다. 자료 입력 후 한국리서치 연구진이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표를 확인하고, 문항 간 논리적 오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4) 조사 결과

〈표 IV-5〉 조사 완료 학교 수, 〈표 IV-6〉 조사 표본 수, 〈표 IV-7〉 표본 대체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 조사 완료 학교 수

지역	총계	교급 및 학년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302	34	35	34	28	28	28	22	22	23	16	16	16
서울	45	5	5	5	5	5	5	4	4	4	1	1	1
부산	18	2	2	2	2	2	2	1	1	1	1	1	1
대구	12	1	1	1	1	1	1	1	1	1	1	1	1
인천	15	2	2	2	1	1	1	1	1	1	1	1	1
광주	12	1	1	1	1	1	1	1	1	1	1	1	1
대전	12	1	1	1	1	1	1	1	1	1	1	1	1
울산	12	1	1	1	1	1	1	1	1	1	1	1	1
경기	54	7	7	7	6	6	6	4	4	4	1	1	1
강원	12	1	1	1	1	1	1	1	1	1	1	1	1
충북	12	1	1	1	1	1	1	1	1	1	1	1	1
충남	15	2	2	2	1	1	1	1	1	1	1	1	1
전북	16	2	3	2	1	1	1	1	1	1	1	1	1
전남	15	2	2	2	1	1	1	1	1	1	1	1	1
경북	18	2	2	2	2	2	2	1	1	1	1	1	1
경남	21	3	3	3	2	2	2	1	1	1	1	1	1
제주	13	1	1	1	1	1	1	1	1	2	1	1	1

*주: 조사 대상 학교 수 300개 학교에 비해 전북 초등학교 1개교(5학년), 제주 일반계고 1개교 (3학년)가 추가로 완료되어 총 302개 학교가 완료되었음.

2.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 조사도구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통계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연구자회의 등 일련의 설문도구 개발과정을 거쳐 조사도구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 일반적 특성의 6대 조사영역과 14개 하위영역으로 확정하였다. (<표 IV-8> 참조).

(1)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하위영역은 가족경제와 가족관계로 나누어지며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경제는 용돈, 아르바이트경험 유무, 아르바이트경험 시기, 아르바이트 종류, 가족 외 경제적 지원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는 아동·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와 의사소통, 부모와 여가활동, 가정화목도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1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가출충동/경험, 가족의 음주정도, 가족의 말다툼 정도, 부모의 폭력사용 유무, 부모의 폭력 빈도, 질병(가족 중 환자유무)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학교생활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은 인간관계, 학교문제, 학교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간관계의 하위문항들은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3이다. 학교문제의 하위문항들은 '나는 친구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을 한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이다. 학교활동의 하위문항들은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이다. 학교생활의 척도는 전부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지역사회생활

지역사회생활 하위영역은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관계로 나누어지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활동의 하위문항은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이며 척도는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관계는 친구와의 모임 횟수, 만나는 장소, 이웃과의 관계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문제행동

문제행동의 하위영역은 약물비행, 생활비행, 성비행으로 나누어지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약물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음주', '흡연', '본드'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절도', '폭력', '갈취', '욕설', '거짓말', '가출',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용 게임) 접촉', '유해업소(호프집, 소주방, 노래연습장, 룬, 성인바, 성인게임장 등) 출입'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성비행의 하위문항들은 '성추행 피해', '성폭력 피해'의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행동의 척도는 '있다', '없다'로 2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5) 여가생활

여가생활의 하위영역은 하루일과, 여가생활, 정보화 생활로 나누어지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루일과의 하위문항들은 '수면시간', 'TV시청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공부하는 시간(집/학원)', '가족과 대화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 '운동 등 바깥활동시간', '기타 시간'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여가활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이며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외 여가생활대상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화 생활의 하위문항들은 '컴퓨터 유무', '컴퓨터 사용빈도', '인터넷 사용빈도', '휴대게임기 이용빈도', '휴대폰 유무', '휴대폰 요금', '휴대폰 주요 사용빈도(통화, 문자, 음악, 인터넷, 게임)'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하위영역은 개인적 배경관련 총 8문항이며 하위문항들은 ‘성별’, ‘가족구성원(가족유형)’, ‘부모의 국적’, ‘부모의 최종학력수준’, ‘부모님의 직업유무’, ‘본인의 학업성적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소재지’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IV-8 조사내용

조사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일반적 특성	개인적 배경	1. 성별 2. 가족구성원(가족유형) 3. 부모의 국적 4. 부모의 최종학력수준 5. 부모님의 직업유무 6. 본인의 학업성적수준 7. 가정의 경제수준 8. 학교소재지	8
가정생활	가족경제	1. 용돈 2. 아르바이트경험 유무 3. 아르바이트경험 시기 4. 아르바이트 종류 5. 가족 외 경제적 지원	5
	가족관계	1. 부모와 친밀도 2. 부모와 의사소통 3. 부모와 여가활동 4. 가정화목도 5. 가출충동/경험 6. 가족의 음주정도 7. 가족의 말다툼 정도 8. 부모의 폭력사용 유무 9. 부모의 폭력 빈도 10. 질병(가족 중 환자유무)	10
학교생활	인간관계	1. 친구들의 불공평한 대우 2. 친구들의 고민상담 3. 친구들의 관심 4. 교사의 불공평한 대우 5. 교사의 고민 이해도 6. 교사의 관심 7. 교사에 대한 만족도 8.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	8
	학교문제	1. 학업중단 충동/경험 2. 무단결석 충동/경험 3. 물리적 폭력 피해경험 4. 친구들에게 욕설 사용 5. 친구 따돌림 6. 물리적 폭력 피해경험 7. 친구들의 욕설 피해경험 8. 따돌림 피해경험 9. 교사 폭력 경험 10. 교사의 욕설 사용 11. 교사의 공개적 망신 12. 교사에 대한 욕설 경험 13. 교사에 대한 반항 경험	13
	학교활동	1. 학교생활 만족도 2. 방과 후 학교활동 참여 3. 방과 후 학교활동 만족도 4. 교과 외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4
지역사회 생활	지역사회활동	1. 지역사회 도움/서비스 경험 2. 마을행사 참여 3. 사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3
	지역사회관계	1. 친구와의 모임 횟수 2.만나는 장소 3. 이웃과의 관계	3

조사영역	하위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문제행동	약물비행	1. 음주 2. 흡연 3. 본드	3
	생활비행	1. 절도 2. 폭력 3. 갈취 4. 욕설 5. 거짓말 6. 가출 7.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용 게임)접촉 8. 유해업소출입(호프집, 소주방, 노래연습장, 룸, 성인바, 성인게임장 등)	8
	성비행	1. 성추행 피해 2. 성폭력 피해	2
여가생활	하루일과	1. 수면시간 2. TV시청시간 3. 인터넷 사용시간 4. 공부하는시간(집/학원) 5. 가족과 대화시간 6. 학원에 있는 시간 7. 운동 등 바깥활동시간 8. 기타 시간	8
	여가생활	1. 취미활동 빈도 2. 공공문화시설 이용경험 3. 여가생활 만족도 4. 여가생활대상(친구/가족/정보화기기(컴퓨터, 게임기, 인터넷 등))	4
	정보화 생활	1. 컴퓨터 유무 2. 컴퓨터 사용빈도 3. 인터넷 사용빈도 4. 휴대게임기 이용빈도 5. 휴대폰 유무 6. 휴대폰요금 7. 휴대폰 주요 사용빈도(통화, 문자, 음악, 인터넷, 게임)	7

2) 분석방법

조사결과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결과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 변량분석(ANOVA)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변량분석의 경우, 기본가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Levene 검정을 통하여 분산의 동질성을 점검하고, 정상분포도(normal probability plot)와 Shapiro-Wilks와 Lilliefors 검정을 통하여 정상분포(normality)를 점검하였다. 특히 표본수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기본 가정을 점검하여 분산의 동질성과 정상분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였다(Norusis, 1990). 집단간 평균값의 다중비교를 위한 사후검정(post-hoc test)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기법 가운데 하나인 Tukey를 사용하였다.

조사에서 무응답의 처리는 중요한 주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응답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구조사, 특히 본 연구처럼 예외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목적의 가구조사에서는 민감한 조사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무응답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무응답은 크게 표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단위 무응답(unit nonresponse)과 조사에는 응하되 일부 항목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으로 나뉜다. 위의 경우에 문제는 항목 무응답인데, 이런 경우 무응답 대체(imputation)를 통해서 무응답 편향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응답 가중치 사용은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성향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무응답자들이 고유의 편향(bia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관적으로 평균치 등으로 대체를 하면 전체 결과의 왜곡을 유발하게 된다(김서영·안다영, 2010).

본 연구에서는 가족유형에 대한 무응답을 자체가 본 조사의 타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응답을 결과분석의 한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무응답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항은 본 조사가 상정하지 않은 유형을 포함하거나, 혹은 조사문항이나 방법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분석

1) 배경변수 현황

응답자 분포표에서 확인한 결과 가족유형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양친부모가정이 89.0%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한부모가정은 7.3%, 조손가정은 1.0%, 기타가정은 2.1%로 나타났다. 남자는 53.7%, 여자는 46.3%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1.5%, 중학교가 30.1%, 고등학교는 3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4.4%, 광역시는 25.2%이었으며, 시·군이 60.4%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상층이 15.9%, 중층이 78.3%, 하층이 5.6%로 중층이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표 IV-9 응답자 분포표

	사례수	%
전체	9,396	100.0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9.0
한부모가정	687	7.3
조손가정	93	1.0
기타가정 ⁵³⁾	198	2.1
무응답	53	.6
성별		
남자	5,046	53.7
여자	4,350	46.3
학교급		
초등학교	2,959	31.5
중학교	2,830	30.1
고등학교	3,607	38.4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4.4
광역시	2,364	25.2
시·군	5,675	60.4
경제적수준		
상	1,492	15.9
중	7,357	78.3
하	525	5.6
무응답	22	.2

2)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생활 실태

(1) 가족경제

가족유형별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는 <표 IV-10>에서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보통’보다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에서도 세집단(양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간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적 수준 인식에는 차이가

53) 기타가정은 소년소녀가정, 이모와 동거, 시설 등에 있는 경우이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다른 가족유형보다 경제적 문제에 쉽게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과정, 특히 학교활동과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 가족유형에 따른 경제적수준의 인식 차이

	N	M(SD)	F	P	Tukey	
경제적 수준	양친부모가정 ^a	8349	1.87(.44)	73.694	.000	b)a, c
	한부모가정 ^b	686	2.17(.51)			
	조손가정 ^c	93	1.98(.49)			
	기타가정 ^d	193	1.94(.39)			
	무응답 ^e	53	1.98(.46)			
	합계	9374	1.90(.45)			

가족경제에서 한 달 용돈에 관한 비교결과에서는 가족유형과 학교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한부모가정은 49448.5원, 양친부모가정은 34506.5원, 조손가정은 30905.5원, 기타가정은 40964.3원으로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평균은 초등학교가 12283.5원, 중학교가 28442.4원, 고등학교가 61044.4원으로 고등학교부터 용돈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이 용돈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표 IV-10>에서 가족경제 인식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용돈과 가족경제 인식은 별개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IV-11 한달 용돈

	사례수	평균(원)	F값
전체	9,396	35785.0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4506.5	14.516*
한부모가정	687	49448.5	
조손가정	93	30905.5	
기타가정	198	40964.3	
무응답	53	50346.2	
성별			
남자	5,046	36344.8	1.231
여자	4,350	35135.5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2283.5	874.045*
중학교	2,830	28442.4	
고등학교	3,607	61044.4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4506.8	7.830
광역시	2,364	37758.8	
시·군	5,675	35268.6	
경제적수준			
상	1,492	27812.6	20.871
중	7,357	37036.5	
하	525	39786.0	
무응답	22	63568.2	

*p<.05

가족경제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별 외의 모든 항목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각각, 한부모가정이 21.1%, 조손가정이 15.1%, 기타가정이 12.6%, 양친부모가정이 9.9%의 응답을 보였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월등히 높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손가정도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1.4%, 중학교가 6.3%, 고등학교가 22.3%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시기가 아직까지는 낮지만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조사가 요구된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이 8.4%, 광역시가 10.2%, 시·군이 11.8%로 나타나 시·군으로 갈수록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수준이 하위계층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25.9%로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아르바이트 경험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023	10.9	8,336	88.7	37	.4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26	9.9	7,510	89.8	29	.3	110.728***
한부모가정	687	145	21.1	538	78.3	4	.6	
조손가정	93	14	15.1	79	84.9		.0	
기타가정	198	25	12.6	169	85.4	4	2.0	
무응답	53	13	24.5	40	75.5		.0	
성별								
남자	5,046	567	11.2	4,456	88.3	23	.5	2.492
여자	4,350	456	10.5	3,880	89.2	14	.3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1	1.4	2,907	98.2	11	.4	817.926***
중학교	2,830	179	6.3	2,640	93.3	11	.4	
고등학교	3,607	803	22.3	2,789	77.3	15	.4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14	8.4	1,237	91.2	6	.4	15.713**
광역시	2,364	242	10.2	2,116	89.5	6	.3	
시·군	5,675	667	11.8	4,983	87.8	25	.4	
경제적수준								
상	1,492	68	4.6	1,419	95.1	5	.3	186.284***
중	7,357	815	11.1	6,513	88.5	29	.4	
하	525	136	25.9	386	73.5	3	.6	
무응답	22	4	18.2	18	81.8		.0	

***p<.001, **p<.01, *p<.05

아르바이트시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에서는 대다수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주말’에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주말’이 남자 33.9%와 여자 41.9%로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46.3%), 중학교는 ‘방학 때’(38.5%), 고등학교는 ‘주말’(37.9%)에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아르바이트 시기

	사례수	거의 매일		주말		방학 때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23	170	16.6	383	37.4	279	27.3	186	18.2	5	.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26	122	14.8	312	37.8	234	28.3	155	18.8	3	.4	39,219**
한부모가정	145	39	26.9	52	35.9	32	22.1	22	15.2		.0	
조손가정	14	3	21.4	7	50.0	2	14.3	2	14.3		.0	
기타가정	25	3	12.0	8	32.0	9	36.0	4	16.0	1	4.0	
무응답	13	3	23.1	4	30.8	2	15.4	3	23.1	1	7.7	
성별												
남자	567	89	15.7	192	33.9	185	32.6	98	17.3	3	.5	18,977**
여자	456	81	17.8	191	41.9	94	20.6	88	19.3	2	.4	
학교급												
초등학교	41		.0	13	31.7	7	17.1	19	46.3	2	4.9	73,439***
중학교	179	11	6.1	66	36.9	69	38.5	31	17.3	2	1.1	
고등학교	803	159	19.8	304	37.9	203	25.3	136	16.9	1	.1	
학교소재지												
서울	114	18	15.8	50	43.9	21	18.4	24	21.1	1	.9	30,205***
광역시	242	63	26.0	83	34.3	53	21.9	43	17.8		.0	
시·군	667	89	13.3	250	37.5	205	30.7	119	17.8	4	.6	
경제적수준												
상	68	9	13.2	18	26.5	25	36.8	15	22.1	1	1.5	67,751***
중	815	127	15.6	316	38.8	222	27.2	148	18.2	2	.2	
하	136	34	25.0	48	35.3	30	22.1	23	16.9	1	.7	
무응답	4		.0	1	25.0	2	50.0		.0	1	25.0	

***p<.001, **p<.01, *p<.05

가장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성별, 학교급, 학교소재지는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편의점, 주유소’, 여자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가장 오래하는 편이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팜플렛, 스티커배달’, 중학교는 ‘신문, 잡지배달’, 고등학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가장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

	사례수	패스트푸드점		신문,잡지배달		팜플렛,스티커 배달		편의점, 주유소		PC방 종업원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23	141	13.8	75	7.3	88	8.6	93	9.1	37	3.6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26	106	12.8	64	7.7	76	9.2	77	9.3	29	3.5
한부모가정	145	25	17.2	7	4.8	8	5.5	11	7.6	4	2.8
조손가정	14	3	21.4		.0	2	14.3	2	14.3		.0
기타가정	25	6	24.0	3	12.0	1	4.0	2	8.0	2	8.0
무응답	13	1	7.7	1	7.7	1	7.7	1	7.7	2	15.4
성별											
남자	567	50	8.8	51	9.0	48	8.5	65	11.5	19	3.4
여자	456	91	20.0	24	5.3	40	8.8	28	6.1	18	3.9
학교급											
초등학교	41	3	7.3	3	7.3	5	12.2	4	9.8		.0
중학교	179	5	2.8	46	25.7	42	23.5	7	3.9	3	1.7
고등학교	803	133	16.6	26	3.2	41	5.1	82	10.2	34	4.2
학교소재지											
서울	114	34	29.8	6	5.3	14	12.3	6	5.3	1	.9
광역시	242	29	12.0	12	5.0	23	9.5	21	8.7	14	5.8
시·군	667	78	11.7	57	8.5	51	7.6	66	9.9	22	3.3
경제적수준											
상	68	9	13.2	8	11.8	6	8.8	9	13.2	3	4.4
중	815	109	13.4	60	7.4	70	8.6	67	8.2	27	3.3
하	136	22	16.2	7	5.1	12	8.8	16	11.8	6	4.4
무응답	4	1	25.0		.0		.0	1	25.0	1	25.0

[표 계속]

	사례수	물건판매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23	26	2.5	553	54.1	10	1.0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26	23	2.8	443	53.6	8	1.0	30.847
한부모가정	145	2	1.4	87	60.0	1	.7	
조손가정	14		.0	7	50.0		.0	
기타가정	25		.0	11	44.0		.0	
무응답	13	1	7.7	5	38.5	1	7.7	
성별								
남자	567	10	1.8	318	56.1	6	1.1	39.783***
여자	456	16	3.5	235	51.5	4	.9	
학교급								
초등학교	41	1	2.4	23	56.1	2	4.9	218.162***
중학교	179	10	5.6	65	36.3	1	.6	
고등학교	803	15	1.9	465	57.9	7	.9	

	사례수	물건판매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학교소재지								46.154***
서울	114	2	1.8	49	43.0	2	1.8	
광역시 시·군	242 667	3 21	1.2 3.1	139 365	57.4 54.7	1 7	.4 1.0	
경제적수준								17.631
상	68	2	2.9	30	44.1	1	1.5	
중	815	22	2.7	452	55.5	8	1.0	
하	136	2	1.5	70	51.5	1	.7	
무응답	4		.0	1	25.0		.0	

***p<.001, **p<.01, *p<.05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정유형 모두가 친척의 도움이 가장 높으나 그중 조손가정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로 부터의 도움 경험은 한부모가정이 1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가정유형에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모두 필요하지만 조손가정은 주로 친척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한부모가정은 국가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기준의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 여부

	사례수	받은 적 없다		형제나 남매		친척		이웃 등 지역에서 아는 사람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6,795	72.3	686	7.3	1,089	11.6	174	1.9	67	.7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6,256	74.8	600	7.2	927	11.1	144	1.7	46	.5
한부모가정	687	348	50.7	54	7.9	105	15.3	19	2.8	12	1.7
조손가정	93	44	47.3	9	9.7	21	22.6	4	4.3	1	1.1
기타가정	198	115	58.1	17	8.6	27	13.6	7	3.5	6	3.0
무응답	53	32	60.4	6	11.3	9	17.0		.0	2	3.8
성별											
남자	5,046	3,541	70.2	410	8.1	610	12.1	124	2.5	33	.7
여자	4,350	3,254	74.8	276	6.3	479	11.0	50	1.1	34	.8
학교급											
초등학교	2,959	2,120	71.6	232	7.8	388	13.1	73	2.5	16	.5
중학교	2,830	2,060	72.8	207	7.3	348	12.3	50	1.8	19	.7
고등학교	3,607	2,615	72.5	247	6.8	353	9.8	51	1.4	32	.9

	사례수	받은 적 없다		형제나 남매		친척		이웃 등 지역에서 아는 사람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학교소재지											
서울	1,357	962	70.9	117	8.6	158	11.6	26	1.9	13	1.0
광역시	2,364	1,761	74.5	161	6.8	236	10.0	44	1.9	15	.6
시·군	5,675	4,072	71.8	408	7.2	695	12.2	104	1.8	39	.7
경제적수준											
상	1,492	1,105	74.1	136	9.1	174	11.7	35	2.3	4	.3
중	7,357	5,408	73.5	504	6.9	845	11.5	126	1.7	47	.6
하	525	268	51.0	45	8.6	66	12.6	13	2.5	16	3.0
무응답	22	14	63.6	1	4.5	4	18.2	.0	.0	.0	.0

[계 속]

	사례수	국가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74	2.9	143	1.5	168	1.8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62	1.9	104	1.2	126	1.5	535,440***
한부모가정	687	93	13.5	29	4.2	27	3.9	
조손가정	93	8	8.6		.0	6	6.5	
기타가정	198	9	4.5	10	5.1	7	3.5	
무응답	53	2	3.8		.0	2	3.8	
성별								
남자	5,046	154	3.1	81	1.6	93	1.8	42,893***
여자	4,350	120	2.8	62	1.4	75	1.7	
학교급								
초등학교	2,959	38	1.3	39	1.3	53	1.8	105,359***
중학교	2,830	77	2.7	39	1.4	30	1.1	
고등학교	3,607	159	4.4	65	1.8	85	2.4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5	2.6	27	2.0	19	1.4	28,529*
광역시	2,364	81	3.4	21	.9	45	1.9	
시·군	5,675	158	2.8	95	1.7	104	1.8	
경제적수준								
상	1,492	9	.6	11	.7	18	1.2	457,671***
중	7,357	181	2.5	112	1.5	134	1.8	
하	525	83	15.8	19	3.6	15	2.9	
무응답	22	1	4.5	1	4.5	1	4.5	

***p<.001, **p<.01, *p<.05

(2) 가족관계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친근감, 부모와의 대화,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 함께 시간보내기, 그리고 가정의 화목에 대한 생각 항목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참조).

가정화목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정, 기타가정의 자녀, 조손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정의 자녀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16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의 검증 결과

		N	M(SD)	F	P	Tukey
1)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양친부모가정	8199	3.57(.60)	21,475	.000	.
	한부모가정	668	3.42(.72)			
	조손가정	0	.			
	기타가정	0	.			
	무응답	49	3.35(.72)			
	합계	8916	3.56(.61)			
2)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양친부모가정	8235	3.33(.71)	40,201	.000	.
	한부모가정	676	3.09(.85)			
	조손가정	0	.			
	기타가정	0	.			
	무응답	51	3.00(.75)			
	합계	8962	3.31(.72)			
3)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양친부모가정	8172	2.69(.91)	54,258	.000	.
	한부모가정	671	2.31(.91)			
	조손가정	0	.			
	기타가정	0	.			
	무응답	50	2.56(.99)			
	합계	8893	2.66(.91)			
4)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양친부모가정 ^a	8084	3.27(.70)	34,498	.000	a,d>b,c
	한부모가정 ^b	656	2.95(.79)			
	조손가정 ^c	85	3.01(.84)			
	기타가정 ^d	189	3.17(.72)			
	무응답 ^e	47	3.15(.75)			
	합계	9061	3.24(.72)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 중 가정생활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족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7〉 참조).

조사대상자의 23.4%는 가족이 술 마신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22.7%는 가족이 가족끼리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님들이 신체 또는 도구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의외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 기타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가족들의 술마신 모습을 더 자주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과 양친부모가정에 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7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생활의 차이

		N	M(SD)	F	P	Tukey
1) 학생은 가족들 이 술을 마신 모 습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양친부모가정 ^a	6407	2.28(1.19)	6.413	.000	a, d)b
	한부모가정 ^b	530	2.06(1.17)			
	조손가정 ^c	70	2.26(1.27)			
	기타가정 ^d	141	2.52(1.18)			
	무응답 ^e	35	1.97(1.04)			
	합계	7183	2.27(1.19)			
2) 학생은 가족들 이 가족끼리 또는 다른 사람과 말다 톼하는 것을 얼마 나 자주 보나요?	양친부모가정	6463	1.95(1.11)	1.816	.123	.
	한부모가정	505	2.07(1.16)			
	조손가정	66	2.09(1.16)			
	기타가정	143	2.04(1.20)			
	무응답	42	2.12(1.23)			
	합계	7219	1.96(1.12)			
3) 학생의 부모님 들은(학생 및 학생 의 형제/자매들에 게 신체 또는 도구 로)얼마나 자주 폭력을 사용하시나요?	양친부모가정	8336	1.87(.33)	.008	.992	.
	한부모가정	686	1.87(.33)			
	조손가정	0	.			
	기타가정	0	.			
	무응답	48	1.88(.33)			
	합계	9070	1.87(.33)			

부모와의 친밀도 조사결과는 가족유형, 학교급, 경제적수준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93.8%)이 한부모가정(88.3%)보다 부모와의 친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2.5%)가 중학교(90.0%)와 고등학교(89.1%)보다 부모와 친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부모와의 친밀도가 더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에서 상층은 72.3%, 중층은 56.1%, 하층은 47.2%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의 친밀도와 일정부분 유사한 응답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표 IV-18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5,464	58.2	3,034	32.3	344	3.7	74	.8	480	5.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5,084	60.8	2,761	33.0	298	3.6	56	.7	166	2.0	5737.778***
한부모가정	687	358	52.1	249	36.2	45	6.6	16	2.3	19	2.7	
조손가정	93		.0		.0		.0		.0	93	100.0	
기타가정	198		.0		.0		.0		.0	198	100.0	
무응답	53	22	41.5	24	45.3	1	1.9	2	3.8	4	7.6	
성별												
남자	5,046	2,875	57.0	1,663	33.0	197	3.9	41	.8	270	5.3	7.321
여자	4,350	2,589	59.5	1,371	31.5	147	3.4	33	.8	210	4.8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996	67.5	741	25.0	49	1.7	8	.3	165	5.5	209.178***
중학교	2,830	1,568	55.4	980	34.6	110	3.9	31	1.1	141	4.9	
고등학교	3,607	1,900	52.7	1,313	36.4	185	5.1	35	1.0	174	4.8	
학교소재지												
서울	1,357	790	58.2	447	32.9	43	3.2	13	1.0	64	4.7	6.760
광역시	2,364	1,391	58.8	738	31.2	100	4.2	19	.8	116	4.9	
시·군	5,675	3,283	57.9	1,849	32.6	201	3.5	42	.7	300	5.3	
경제적수준												
상	1,492	1,078	72.3	306	20.5	32	2.1	7	.5	69	4.6	234.137***
중	7,357	4,130	56.1	2,536	34.5	269	3.7	52	.7	370	5.0	
하	525	248	47.2	184	35.0	42	8.0	15	2.9	36	6.9	
무응답	22	8	36.4	8	36.4	1	4.5		.0	5	22.7	

***p<.001, **p<.01, *p<.05

가족과의 관계 중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는 응답에서는 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경제적수준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87.2%)이 한부모가정(75.6%)보다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85.1%)가 남자(82.3%)보다 더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8.0%)가 중학교(84.8%)와 고등학교(79.0%)보다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부모와의 대화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수준과 부모와의 대화에서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부모와의 대화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에서 상층은 56.8%, 중층은 40.7%, 하층은 31.8%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경제수준과 부모와의 대화는 유사한 응답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유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설명이 필요하다.

표 IV-19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와 자주 대화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4,014	42.7	3,838	40.8	977	10.4	133	1.4	418	4.4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757	44.9	3,535	42.3	841	10.1	102	1.2	130	1.6	6569.614***
한부모가정	687	245	35.7	274	39.9	128	18.6	29	4.2	11	1.6	
조손가정	93	.0	.0	.0	.0	.0	.0	.0	.0	93	100.0	
기타가정	198	.0	.0	.0	.0	.0	.0	.0	.0	198	100.0	
무응답	53	12	22.6	29	54.7	8	15.1	2	3.8	2	3.8	
성별												
남자	5,046	2,006	39.8	2,144	42.5	555	11.0	84	1.7	257	5.1	45.173***
여자	4,350	2,008	46.2	1,694	38.9	422	9.7	49	1.1	177	4.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493	50.5	1,111	37.5	169	5.7	32	1.1	154	5.2	236.804***
중학교	2,830	1,220	43.1	1,179	41.7	269	9.5	38	1.3	124	4.4	
고등학교	3,607	1,301	36.1	1,548	42.9	539	14.9	63	1.7	156	4.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608	44.8	547	40.3	122	9.0	18	1.3	62	4.5	6.809
광역시	2,364	1,006	42.6	968	40.9	251	10.6	38	1.6	101	4.2	
시·군	5,675	2,400	42.3	2,323	40.9	604	10.6	77	1.4	271	4.8	
경제적수준												
상	1,492	848	56.8	472	31.6	90	6.0	16	1.1	66	4.5	289.565***
중	7,357	2,991	40.7	3,166	43.0	773	10.5	91	1.2	336	4.5	
하	525	167	31.8	194	37.0	111	21.1	26	5.0	27	5.2	
무응답	22	8	36.4	6	27.3	3	13.6	.0	.0	5	22.7	

***p<.001, **p<.01, *p<.05

가족과의 관계 중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조사항목은 모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양친부모가정(56.8%)의 자녀가 한부모가정(39.8%)의 자녀보다 부모와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58.1%)가 남자(50.0%)보다 부모와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68.0%)에서 중학교(54.3%)와 고등학교(41.7%)로 저학년일수록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길었고, 학교소재지 별로는 서울과 광역시가 60.4%와 53.5%로 시·군(52.3%) 보다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은 71.4%, 중층은 51.9%, 하층은 29.7%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가족과의 관계 -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1,771	18.8	3,280	34.9	2,907	30.9	935	10.0	503	5.4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690	20.2	3,060	36.6	2,631	31.5	791	9.5	193	2.3	5616.536***
한부모가정	687	72	10.5	201	29.3	263	38.3	135	19.7	16	2.3	
조손가정	93		.0		.0		.0		.0	93	100.0	
기타가정	198		.0		.0		.0		.0	198	100.0	
무응답	53	9	17.0	19	35.8	13	24.5	9	17.0	3	5.7	
성별												
남자	5,046	813	16.1	1,711	33.9	1,666	33.0	559	11.1	297	5.9	81,404***
여자	4,350	958	22.0	1,569	36.1	1,241	28.5	376	8.6	206	4.7	
학교급												
초등학교	2,959	830	28.1	1,180	39.9	610	20.6	142	4.8	197	6.7	662,071***
중학교	2,830	537	19.0	999	35.3	910	32.2	239	8.4	145	5.1	
고등학교	3,607	404	11.2	1,101	30.5	1,387	38.5	554	15.4	161	4.4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12	23.0	507	37.4	361	26.6	116	8.5	61	4.4	45,386***
광역시	2,364	470	19.9	795	33.6	741	31.3	248	10.5	110	4.7	
시·군	5,675	989	17.4	1,978	34.9	1,805	31.8	571	10.1	332	5.8	
경제적수준												
상	1,492	525	35.2	540	36.2	264	17.7	87	5.8	76	5.1	591,889***
중	7,357	1,200	16.3	2,618	35.6	2,440	33.2	709	9.6	390	5.3	
하	525	41	7.8	115	21.9	198	37.7	139	26.5	32	6.1	
무응답	22	5	22.7	7	31.8	5	22.7		.0	5	22.7	

***p<.001, **p<.01, *p<.05

가족과의 관계 중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소재지 외에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유형에서 양친부모가정(86.3%)이 한부모가정(72.7%), 조손가정(71.0%)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고, 여자(86.7%)가 남자(83.5%)보다 더 본인의 집이 화목한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7.2%)가 중학교(85.0%)와 고등학교(83.4%)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본인의 집이 화목한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상층(89.5%)과 중층(85.7%)에 비해 하층(63.6%)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1 가족과의 관계 -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464	36.9	4,527	48.2	859	9.1	211	2.2	335	3.6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206	38.3	4,015	48.0	698	8.3	165	2.0	281	3.4	171.847***
한부모가정	687	155	22.6	344	50.1	123	17.9	34	4.9	31	4.5	
조손가정	93	25	26.9	41	44.1	14	15.1	5	5.4	8	8.6	
기타가정	198	63	31.8	101	51.0	20	10.1	5	2.5	9	4.5	
무응답	53	15	28.3	26	49.1	4	7.5	2	3.8	6	11.3	
성별												
남자	5,046	1,827	36.2	2,389	47.3	525	10.4	127	2.5	178	3.6	27.364***
여자	4,350	1,637	37.6	2,138	49.1	334	7.7	84	1.9	157	3.6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287	43.5	1,292	43.7	202	6.8	43	1.5	135	4.5	136.912***
중학교	2,830	1,035	36.6	1,371	48.4	268	9.5	73	2.6	83	2.9	
고등학교	3,607	1,142	31.7	1,864	51.7	389	10.8	95	2.6	117	3.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524	38.6	648	47.8	102	7.5	33	2.4	50	3.6	16.265
광역시	2,364	893	37.8	1,091	46.2	235	9.9	60	2.5	85	3.6	
시·군	5,675	2,047	36.1	2,788	49.1	522	9.2	118	2.1	200	3.6	
경제적수준												
상	1,492	809	54.2	526	35.3	77	5.2	22	1.5	58	3.9	511.127***
중	7,357	2,536	34.5	3,767	51.2	663	9.0	138	1.9	253	3.4	
하	525	108	20.6	226	43.0	116	22.1	51	9.7	24	4.6	
무응답	22	11	50.0	8	36.4	3	13.6	.0	.0	.0	.0	

***p<.001, **p<.01, *p<.05

가출 시도 경험에 있어서는 학교소재지 외에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양친부모가정(21.1%), 조손가정(19.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23.3%)가 여자(19.9%)보다 가출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5.4%)보다는 중학교(23.0%)와 고등학교(25.9%)시기에 가출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19.7%)과 중층(21.2%)에 비해 하층(34.9%)에서 비교적 높은 가출경험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와 같이 가출시도 경험이 초등학생이 15.4%에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가출 지도 방안이나 대책이 초등학교 수준으로부터 실시되어져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22 가출 시도 경험

	사례수	시도한 적이 있음		시도한 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042	21.7	7,288	77.6	66	.7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767	21.1	6,542	78.2	56	.7	45.261***
한부모가정	687	196	28.5	487	70.9	4	.6	
조손가정	93	18	19.4	75	80.6		.0	
기타가정	198	45	22.7	150	75.8	3	1.5	
무응답	53	16	30.2	34	64.2	3	5.7	
성별								
남자	5,046	1,177	23.3	3,820	75.7	49	1.0	28.790***
여자	4,350	865	19.9	3,468	79.7	17	.4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55	15.4	2,479	83.8	25	.8	112.268***
중학교	2,830	651	23.0	2,157	76.2	22	.8	
고등학교	3,607	936	25.9	2,652	73.5	19	.5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02	22.3	1,049	77.3	6	.4	4.314
광역시	2,364	505	21.4	1,836	77.7	23	1.0	
시·군	5,675	1,235	21.8	4,403	77.6	37	.7	
경제적수준								
상	1,492	294	19.7	1,184	79.4	14	.9	69.796***
중	7,357	1,559	21.2	5,751	78.2	47	.6	
하	525	183	34.9	338	64.4	4	.8	
무응답	22	6	27.3	15	68.2	1	4.5	

***p<.001, **p<.01, *p<.05

가족들의 음주모습 목적 횟수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했다. 가족유형에서는 ‘월 1회 이하’가 양친부모가정(27.9%), 한부모가정(35.4%), 조손가정(32.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월 1회 이하’가 각각 27.7%와 29.1%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도 가족들의 음주 목적경험이 주1회 이상 23.8%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28.3%), 광역시(28.5%), 시·군(28.3%)의 비슷한 수치로 ‘월 1회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수준별로 본 조사결과는 상층에서만 ‘한번도 본적 없음’이 33.6%로 가장 높았고, 중층과 하층에서는 ‘월 1회 이하’가 각각 28.5%와 2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와 같이 초등학생 가정에서 주1회 이상 가족의 음주경험 목적이 23.8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음주와 관련한 대응 등 교육방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V-23 가족들의 음주모습 목적 횟수

	사례수	매일		주2-3회		주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63	2.8	1,443	15.4	1,182	12.6	1,634	17.4	2,661	28.3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234	2.8	1,302	15.6	1,071	12.8	1,466	17.5	2,334	27.9
한부모가정	687	20	2.9	86	12.5	64	9.3	117	17.0	243	35.4
조손가정	93	3	3.2	16	17.2	10	10.8	11	11.8	30	32.3
기타가정	198	4	2.0	37	18.7	31	15.7	30	15.2	39	19.7
무응답	53	2	3.8	2	3.8	6	11.3	10	18.9	15	28.3
성별											
남자	5,046	121	2.4	764	15.1	636	12.6	875	17.3	1,397	27.7
여자	4,350	142	3.3	679	15.6	546	12.6	759	17.4	1,264	29.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52	1.8	364	12.3	286	9.7	479	16.2	793	26.8
중학교	2,830	87	3.1	449	15.9	403	14.2	503	17.8	810	28.6
고등학교	3,607	124	3.4	630	17.5	493	13.7	652	18.1	1,058	29.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9	2.9	231	17.0	160	11.8	232	17.1	384	28.3
광역시	2,364	58	2.5	324	13.7	302	12.8	440	18.6	673	28.5
시·군	5,675	166	2.9	888	15.6	720	12.7	962	17.0	1,604	28.3
경제적수준											
상	1,492	33	2.2	182	12.2	139	9.3	218	14.6	415	27.8
중	7,357	195	2.7	1,168	15.9	986	13.4	1,332	18.1	2,095	28.5
하	525	35	6.7	90	17.1	55	10.5	80	15.2	142	27.0
무응답	22	.0	.0	3	13.6	2	9.1	4	18.2	9	40.9

***p<.001, **p<.01, *p<.05

[계 속]

	사례수	한번도 본 적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201	23.4	12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948	23.3	10	.1	99.629***
한부모가정	687	157	22.9		.0	
조손가정	93	23	24.7		.0	
기타가정	198	57	28.8		.0	
무응답	53	16	30.2	2	3.8	
성별						
남자	5,046	1,245	24.7	8	.2	16.233*
여자	4,350	956	22.0	4	.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980	33.1	5	.2	262.684***
중학교	2,830	573	20.2	5	.2	
고등학교	3,607	648	18.0	2	.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10	22.8	1	.1	12.854
광역시	2,364	563	23.8	4	.2	
시·군	5,675	1,328	23.4	7	.1	
경제적수준						
상	1,492	502	33.6	3	.2	157.458***
중	7,357	1,574	21.4	7	.1	
하	525	121	23.0	2	.4	
무응답	22	4	18.2		.0	

***p<.001, **p<.01, *p<.05

가족들의 말다툼 목격 횟수에 관한 조사에서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월 1회 이하'가 유의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주1회 이상 말다툼이 양부모가정 22.4%, 한부모가정 23.2%, 조손가정 26.9%로 나타나 부모가 있는 가정일수록 가족간의 다툼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주1회 이상 말다툼이 모두 22.4%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내 가족간의 갈등이 매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저학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장 발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정내의 갈등관계와 표출방법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

표 IV-25 부모의 폭력사용 여부

	사례수	폭력을 사용함		폭력을 사용하지 않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150	12.2	7,920	84.3	326	3.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058	12.6	7,278	87.0	29	.3	8368.114***
한부모가정	687	86	12.5	600	87.3	1	.1	
조손가정	93	.0	.0	.0	.0	93	100.0	
기타가정	198	.0	.0	.0	.0	198	100.0	
무응답	53	6	11.3	42	79.2	5	9.4	
성별								
남자	5,046	569	11.3	4,289	85.0	188	3.7	10.966**
여자	4,350	581	13.4	3,631	83.5	138	3.2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72	16.0	2,369	80.1	118	4.0	99.348***
중학교	2,830	376	13.3	2,354	83.2	100	3.5	
고등학교	3,607	302	8.4	3,197	88.6	108	3.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86	13.7	1,134	83.6	37	2.7	12.800*
광역시	2,364	281	11.9	2,018	85.4	65	2.7	
시·군	5,675	683	12.0	4,768	84.0	224	3.9	
경제적수준								
상	1,492	202	13.5	1,252	83.9	38	2.5	50.505***
중	7,357	865	11.8	6,232	84.7	260	3.5	
하	525	80	15.2	423	80.6	22	4.2	
무응답	22	3	13.6	13	59.1	6	27.3	

*** $p < .001$, ** $p < .01$, * $p < .05$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에서는 성별과 학교급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소재지, 가족유형, 경제적수준과는 관련이 없었다. 특히 학교급에서 주1회이상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정도가 초등학교는 23.1%, 중학교는 14.1%, 고등학교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현재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 IV-26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 횟수

	사례수	매일		주2-3회		주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150	27	2.3	77	6.7	90	7.8	198	17.2	751	65.3	7	.6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1,058	25	2.4	68	6.4	84	7.9	181	17.1	694	65.6	6	.6	4.343
한부모가정	86	2	2.3	9	10.5	5	5.8	16	18.6	53	61.6	1	1.2	
무응답	6		.0		.0	1	16.7	1	16.7	4	66.7		.0	
성별														
남자	569	20	3.5	41	7.2	50	8.8	84	14.8	370	65.0	4	.7	12.421*
여자	581	7	1.2	36	6.2	40	6.9	114	19.6	381	65.6	3	.5	
학교급														
초등학교	472	12	2.5	51	10.8	46	9.7	90	19.1	269	57.0	4	.8	40.629***
중학교	376	8	2.1	18	4.8	27	7.2	65	17.3	255	67.8	3	.8	
고등학교	302	7	2.3	8	2.6	17	5.6	43	14.2	227	75.2		.0	
학교소재지														
서울	186	5	2.7	13	7.0	15	8.1	28	15.1	124	66.7	1	.5	2.323
광역시	281	7	2.5	17	6.0	24	8.5	46	16.4	186	66.2	1	.4	
시·군	683	15	2.2	47	6.9	51	7.5	124	18.2	441	64.6	5	.7	
경제적수준														
상	202	8	4.0	17	8.4	15	7.4	45	22.3	116	57.4	1	.5	13.665
중	865	17	2.0	57	6.6	66	7.6	139	16.1	580	67.1	6	.7	
하	80	2	2.5	3	3.8	9	11.3	13	16.3	53	66.3		.0	
무응답	3		.0		.0		.0	1	33.3	2	66.7		.0	

***p<.001, **p<.01, *p<.05

가족 중 장기 치료 환자 존재 여부에서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19.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온 것은 조부모님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나쁠 확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13.4%), 양친부모가정(10.0%), 기타가정(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11.2%)가 여자(9.5%)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3.6%, 중학교가 9.9%, 고등학교가 8.2%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 중 장기 치료 환자 존재 여부는 낮아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치료환자 돌봄 문제나 중증환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리하여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표 IV-27 가족 중 장기 치료 환자 존재 여부

	사례수	있음		없음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975	10.4	8,295	88.3	126	1.3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39	10.0	7,415	88.6	111	1.3	36.479***
한부모가정	687	92	13.4	588	85.6	7	1.0	
조손가정	93	18	19.4	72	77.4	3	3.2	
기타가정	198	19	9.6	178	89.9	1	.5	
무응답	53	7	13.2	42	79.2	4	7.5	
성별								
남자	5,046	563	11.2	4,402	87.2	81	1.6	13.423**
여자	4,350	412	9.5	3,893	89.5	45	1.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01	13.6	2,517	85.1	41	1.4	57.096***
중학교	2,830	280	9.9	2,503	88.4	47	1.7	
고등학교	3,607	294	8.2	3,275	90.8	38	1.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58	11.6	1,180	87.0	19	1.4	8.937
광역시	2,364	243	10.3	2,078	87.9	43	1.8	
시·군	5,675	574	10.1	5,037	88.8	64	1.1	
경제적수준								
상	1,492	189	12.7	1,280	85.8	23	1.5	17.690**
중	7,357	716	9.7	6,547	89.0	94	1.3	
하	525	66	12.6	450	85.7	9	1.7	
무응답	22	4	18.2	18	81.8	.0		

***p<.001, **p<.01, *p<.05

3)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실태

(1) 인간관계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28〉 참조). 특히 담임선생님과 친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구나 담임선생님도 자신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학교 친구들은 자신과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상시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담임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개인적인 문제등 고민이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현상으로 학교내 문제가 발생시 사전 발견이나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28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n=5982)

	Mean*	SD
1)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1.52	.699
2)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2.08	.873
3)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2.74	.713
4)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1.53	.705
5)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2.00	.851
6)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갖고 계신다	2.68	.793
7)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3.04	.878
8) 나는 친구들에게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3.29	.743

*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

한편, 가족유형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추출법(principal component extraction)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 친구에 대한 만족, 친구의 관심집중이라는 3개의 주요 요인이 나타났다. 세 개의 주요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65.06%를 설명하였다(〈표 IV-29〉 참조).

표 IV -29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계속)

	요인		
	담임 선생님 만족	친구 만족	친구의 관심집중
6)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갖고 계신다	.825	.108	.140
5)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765	-.164	.158
7) 나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762	.206	-.215
1)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072	.834	-.095
8) 나는 친구들에게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126	.737	.209
2)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054	.030	.766
3)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220	.446	.628
4) 나의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408	-.413	.552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Varimax)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분석에서는 요인을 구성하는 질문문항들을 하나로 묶어서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 중 친구만족과 친구의 관심집중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타났다. 친구만족에 있어서 양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자녀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친구의 관심집중에 있어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기타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다(〈표 IV-30〉 참조).

표 IV-30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 차이

		N	M(SD)	F	P	Tukey
친구만족	양친부모가정 ^a	8245	3.40(.60)	5.096	.000	a)b
	한부모가정 ^b	675	3.31(.65)			
	조손가정 ^c	91	3.36(.67)			
	기타가정 ^d	194	3.29(.64)			
	무응답 ^e	50	3.48(.59)			
	합계	9255	3.39(.61)			
친구의 관심집중	양친부모가정 ^a	8263	2.76(.53)	3.694	.005	a)d
	한부모가정 ^b	680	2.75(.55)			
	조손가정 ^c	92	2.66(.47)			
	기타가정 ^d	193	2.64(.59)			
	무응답 ^e	52	2.63(.69)			
	합계	9280	2.76(.53)			
담임선생님 만족	양친부모가정	8164	2.63(.73)	.603	.661	.
	한부모가정	669	2.61(.71)			
	조손가정	92	2.64(.82)			
	기타가정	193	2.65(.72)			
	무응답	47	2.50(.68)			
	합계	9165	2.63(.73)			

학교생활 중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는 학교소재지 외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편('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이라고 느끼는 응답비율이 한부모가정이 각각 9.1%로 양친부모가정(7.3%)과 조손가정(7.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8.6%)가 여자(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8%)가 중학교(7.8%)와 고등학교(5.5%)에 비해 연령대가 어릴수록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에서 상층(8.5%), 중층(7.0%), 하층(12.0%)로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자아존중감 등이 양친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부족하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학년이 어릴수록 이러한 현상이 높은 것은 학교에서의 생활

지도에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31 학교활동 -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464	36.9	4,527	48.2	859	9.1	211	2.2	335	3.6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206	38.3	4,015	48.0	698	8.3	165	2.0	281	3.4	171.847***
한부모가정	687	155	22.6	344	50.1	123	17.9	34	4.9	31	4.5	
조손가정	93	25	26.9	41	44.1	14	15.1	5	5.4	8	8.6	
기타가정	198	63	31.8	101	51.0	20	10.1	5	2.5	9	4.5	
무응답	53	15	28.3	26	49.1	4	7.5	2	3.8	6	11.3	
성별												
남자	5,046	1,827	36.2	2,389	47.3	525	10.4	127	2.5	178	3.6	27.364***
여자	4,350	1,637	37.6	2,138	49.1	334	7.7	84	1.9	157	3.6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287	43.5	1,292	43.7	202	6.8	43	1.5	135	4.5	136.912***
중학교	2,830	1,035	36.6	1,371	48.4	268	9.5	73	2.6	83	2.9	
고등학교	3,607	1,142	31.7	1,864	51.7	389	10.8	95	2.6	117	3.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524	38.6	648	47.8	102	7.5	33	2.4	50	3.6	16.265
광역시	2,364	893	37.8	1,091	46.2	235	9.9	60	2.5	85	3.6	
시·군	5,675	2,047	36.1	2,788	49.1	522	9.2	118	2.1	200	3.6	
경제적수준												
상	1,492	809	54.2	526	35.3	77	5.2	22	1.5	58	3.9	511.127***
중	7,357	2,536	34.5	3,767	51.2	663	9.0	138	1.9	253	3.4	
하	525	108	20.6	226	43.0	116	22.1	51	9.7	24	4.6	
무응답	22	11	50.0	8	36.4	3	13.6		.0		.0	

***p<.001, **p<.01, *p<.05

학교생활 중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33.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가정(31.5%), 조손가정(19.4%)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자(46.8%)가 남자(18.4%)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43.9%), 중학교(32.5%), 초등학교(15.6%)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교 친구들과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24.1%)에서 중층(32.6%) 그리고 하층(37.5%)으로 갈수록 친구들과 고민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년이 낮을수록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현상을 볼 때 학교 상담 등 현재 중고등학교에 우선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 등의 운영이 초등학교에 우선 배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32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29	3.5	2,634	28.0	3,082	32.8	2,844	30.3	507	5.4	
가족유형												42.661**
양친부모가정	8,365	293	3.5	2,344	28.0	2,748	32.9	2,524	30.2	456	5.4	
한부모가정	687	29	4.2	204	29.7	215	31.3	206	30.0	33	4.8	
조손가정	93	1	1.1	17	18.3	34	36.6	36	38.7	5	5.4	
기타가정	198	4	2.0	52	26.3	69	34.8	63	31.8	10	5.0	
무응답	53	2	3.8	17	32.1	16	30.2	15	28.3	3	5.7	
성별												990.277***
남자	5,046	95	1.9	834	16.5	1,831	36.3	2,024	40.1	262	5.2	
여자	4,350	234	5.4	1,800	41.4	1,251	28.8	820	18.9	245	5.6	
학교급												1027.292***
초등학교	2,959	47	1.6	413	14.0	872	29.5	1,452	49.1	175	5.9	
중학교	2,830	113	4.0	806	28.5	949	33.5	814	28.8	148	5.3	
고등학교	3,607	169	4.7	1,415	39.2	1,261	35.0	578	16.0	184	5.1	
학교소재지												11.159
서울	1,357	54	4.0	402	29.6	456	33.6	368	27.1	77	5.7	
광역시 시·군	2,364 5,675	80 195	3.4 3.4	639 1,593	27.0 28.1	800 1,826	33.8 32.2	716 1,760	30.3 31.0	129 301	5.4 5.3	
경제적수준												186.908***
상	1,492	53	3.6	306	20.5	406	27.2	639	42.8	88	5.9	
중	7,357	242	3.3	2,155	29.3	2,487	33.8	2,077	28.2	396	5.4	
하	525	30	5.7	167	31.8	185	35.2	120	22.9	23	4.4	
무응답	22	4	18.2	6	27.3	4	18.2	8	36.4		.0	

***p<.001, **p<.01, *p<.05

학교생활 중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친부모가정(58.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51.7%), 조손가정(47.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3.3%)가 남자(53.4%)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긍정적 응답이 고등학교(61.9%), 중학교(58.2%), 초등학교(53.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층(57.8%)이 상층(62.5%)과 하층(48.2%)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V-33 학교활동 -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756	8.0	4,692	49.9	1,806	19.2	519	5.5	1,623	17.3	
가족유형												47.744***
양친부모가정	8,365	674	8.1	4,243	50.7	1,560	18.6	457	5.5	1,431	17.1	
한부모가정	687	54	7.9	301	43.8	170	24.7	40	5.8	122	17.7	
조손가정	93	7	7.5	37	39.8	24	25.8	9	9.7	16	17.2	
기타가정	198	13	6.6	90	45.5	44	22.2	9	4.5	42	21.2	
무응답	53	8	15.1	21	39.6	8	15.1	4	7.5	12	22.7	
성별												151.965***
남자	5,046	384	7.6	2,312	45.8	1,122	22.2	367	7.3	861	17.0	
여자	4,350	372	8.6	2,380	54.7	684	15.7	152	3.5	762	17.5	
학교급												203.439***
초등학교	2,959	271	9.2	1,297	43.8	558	18.9	286	9.7	547	18.4	
중학교	2,830	225	8.0	1,422	50.2	557	19.7	138	4.9	488	17.2	
고등학교	3,607	260	7.2	1,973	54.7	691	19.2	95	2.6	588	16.3	
학교소재지												33.495***
서울	1,357	132	9.7	741	54.6	213	15.7	64	4.7	207	15.2	
광역시 시·군	2,364 5,675	191 433	8.1 7.6	1,174 2,777	49.7 48.9	478 1,115	20.2 19.6	125 330	5.3 5.8	396 1,020	16.8 17.9	
경제적수준												148.832***
상	1,492	214	14.3	719	48.2	221	14.8	107	7.2	231	15.5	
중	7,357	505	6.9	3,746	50.9	1,444	19.6	377	5.1	1,285	17.5	
하	525	34	6.5	219	41.7	139	26.5	32	6.1	101	19.2	
무응답	22	3	13.6	8	36.4	2	9.1	3	13.6	6	27.3	

***p<.001, **p<.01, *p<.05

학교생활 중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는 응답에서는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가족유형과 학교소재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께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은 성별에서는 남자(8.1%)가 여자(5.8%)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8.0%)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7.7%), 초등학교(5.6%)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10.1%)이 중층(6.9%)과 상층(6.6%)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에서 담임선생님

표 IV-35 학교활동 -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24	3.4	1,730	18.4	3,035	32.3	2,672	28.4	1,635	17.4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280	3.3	1,537	18.4	2,698	32.3	2,377	28.4	1,473	17.6	29,311
한부모가정	687	25	3.6	128	18.6	237	34.5	197	28.7	100	14.6	
조손가정	93	8	8.6	23	24.7	20	21.5	32	34.4	10	10.8	
기타가정	198	9	4.5	33	16.7	68	34.3	51	25.8	37	18.7	
무응답	53	2	3.8	9	17.0	12	22.6	15	28.3	15	28.3	
성별												
남자	5,046	176	3.5	985	19.5	1,559	30.9	1,435	28.4	891	17.6	15,512**
여자	4,350	148	3.4	745	17.1	1,476	33.9	1,237	28.4	744	17.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62	5.5	600	20.3	737	24.9	821	27.7	639	21.6	214,145***
중학교	2,830	64	2.3	454	16.0	942	33.3	875	30.9	495	17.5	
고등학교	3,607	98	2.7	676	18.7	1,356	37.6	976	27.1	501	13.9	
학교소재지												
서울	1,357	46	3.4	244	18.0	466	34.3	345	25.4	256	18.8	16,048
광역시	2,364	78	3.3	404	17.1	767	32.4	715	30.2	400	16.9	
시·군	5,675	200	3.5	1,082	19.1	1,802	31.8	1,612	28.4	979	17.3	
경제적수준												
상	1,492	101	6.8	336	22.5	347	23.3	432	29.0	276	18.5	146,017***
중	7,357	198	2.7	1,293	17.6	2,535	34.5	2,058	28.0	1,273	17.3	
하	525	23	4.4	98	18.7	150	28.6	175	33.3	79	15.0	
무응답	22	2	9.1	3	13.6	3	13.6	7	31.8	7	31.8	

***p<.001, **p<.01, *p<.05

학교생활 중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조사결과는 가족유형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56.0%)가 남자(52.2%)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55.9%)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54.0%), 중학교(51.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56.3%)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시·군(54.5%)과 광역시(51.6%)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58.9%), 중층(53.1%), 하층(52.7%)순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에서 45%이상이 담임선생님의 관심이 부족한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담임선생님의 관심 부족을 인식하는 것은 학교활동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유명무

로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중학교는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교생활지도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큰 차이가 있어 학생들의 기대치를 교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학교 활동 지도방식이 갑자기 많이 바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향후 중학교 교사의 학생지도 방식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생지도 방식과 일정부분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V-37 학교활동 -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015	32.1	4,167	44.3	1,031	11.0	652	6.9	531	5.6	
가족유형												21.353
양친부모가정	8,365	2,695	32.2	3,709	44.3	923	11.0	579	6.9	459	5.5	
한부모가정	687	215	31.3	310	45.1	76	11.1	40	5.8	46	6.7	
조손가정	93	31	33.3	36	38.7	9	9.7	12	12.9	5	5.4	
기타가정	198	61	30.8	90	45.5	15	7.6	18	9.1	14	7.1	
무응답	53	13	24.5	22	41.5	8	15.1	3	5.7	7	13.2	
성별												23.486***
남자	5,046	1,612	31.9	2,188	43.4	535	10.6	394	7.8	317	6.3	
여자	4,350	1,403	32.3	1,979	45.5	496	11.4	258	5.9	214	4.9	
학교급												504.395***
초등학교	2,959	1,407	47.5	1,015	34.3	233	7.9	140	4.7	164	5.5	
중학교	2,830	752	26.6	1,311	46.3	354	12.5	244	8.6	169	6.0	
고등학교	3,607	856	23.7	1,841	51.0	444	12.3	268	7.4	198	5.5	
학교소재지												21.721**
서울	1,357	453	33.4	591	43.6	160	11.8	69	5.1	84	6.2	
광역시 시·군	2,364 5,675	716 1,846	30.3 32.5	1,051 2,525	44.5 44.5	273 598	11.5 10.5	189 394	8.0 6.9	135 312	5.8 5.5	
경제적수준												175.390***
상	1,492	675	45.2	506	33.9	122	8.2	99	6.6	90	6.0	
중	7,357	2,187	29.7	3,428	46.6	842	11.4	492	6.7	408	5.5	
하	525	144	27.4	224	42.7	67	12.8	58	11.0	32	6.1	
무응답	22	9	40.9	9	40.9		.0	3	13.6	1	4.5	

***p<.001, **p<.01, *p<.05

학교생활 중 ‘나는 친구들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문제

우선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욕설을 사용한다’는 응답의 평균값(M=2.3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학업중단 1.95, 친구들로부터 욕설을 당하는 경우도 1.94로 나타나 학교생활 문제는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39〉 참조).

표 IV-39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n=8264)

	Mean*	SD
1)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1.95	.947
2)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79	.926
3)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49	.699
4)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2.30	.948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를 따돌린다	1.49	.683
6)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42	.692
7)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1.94	.892
8)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1.22	.546
9)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1.82	.997
10)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설을 사용하신다	1.61	.877
11)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1.90	.951
12)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1.87	.921
13)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1.28	.582

* 1=전혀 하지않음, 2=별로 하지 않음, 3=약간 하는 편임, 4=매우 자주 함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문제 인식이나 문제 경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생님의 욕설·폭력(매), 공개망신, 가해경험(욕설, 폭력, 따돌림), 학업중단 생각, 피해경험(따돌림, 폭력)이라는 네 개의 주요 요인이 나타났다. 네 개의 주요 요인들은 전체변량의 62.91%를 설명하였다(〈표 IV-40〉 참조).

표 IV-40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경험(요인)

	요인			
	선생님 욕설, 폭력, 공개망신	가해: 욕설, 폭력, 따돌림	학업중단 생각	피해: 따돌림, 폭력
10)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을 하신다	.823	.101	.042	.069
9)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798	.104	.015	.106
11)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775	.086	.186	.057
12)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579	.335	.346	-.233
13)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433	.321	.351	-.034
4)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178	.786	.176	-.231
7)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160	.657	.073	.264
3)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02	.648	.101	.237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를 따돌린다	.078	.593	.071	.168
1)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126	.096	.866	.090
2)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143	.135	.861	.095
8)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035	.135	.149	.833
6)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103	.510	-.007	.64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Varimax)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업중단 생각, 가해(욕설, 폭력, 따돌림) 경험, 피해(폭력,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생님의 욕설·폭력(매)·공개망신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V-41〉 참조).

사후검증 결과,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이나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으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양친부모가정의 자녀 모두 많이 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피해경험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나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 모두

별로 경험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V-41〉 참조).

여기서 학교 생활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에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유형의 자녀에 비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1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 차이

		N	M(SD)	F	P	Tukey
학업중단 생각	양친부모가정 ^a	8315	1.87(.85)	11.491	.000	b>a
	한부모가정 ^b	680	2.09(.89)			
	조손가정 ^c	93	1.92(.96)			
	기타가정 ^d	196	1.95(.92)			
	무응답 ^e	51	2.08(1.04)			
	합계	9355	1.89(.86)			
가해_욕설, 폭력, 따돌림	양친부모가정 ^a	8343	1.81(.59)	6.259	.000	b>a
	한부모가정 ^b	685	1.92(.58)			
	조손가정 ^c	93	1.81(.59)			
	기타가정 ^d	196	1.91(.64)			
	무응답 ^e	51	1.93(.67)			
	합계	9368	1.82(.59)			
피해_폭력, 따돌림	양친부모가정 ^a	8309	1.33(.53)	4.054	.003	b>a
	한부모가정 ^b	682	1.39(.56)			
	조손가정 ^c	93	1.39(.64)			
	기타가정 ^d	195	1.43(.70)			
	무응답 ^e	50	1.25(.48)			
	합계	9329	1.33(.54)			
선생님_욕설, 폭력, 공개망신	양친부모가정	8342	1.80(.73)	2.307	.056	.
	한부모가정	685	1.87(.73)			
	조손가정	93	1.75(.76)			
	기타가정	196	1.81(.76)			
	무응답	52	2.00(.86)			
	합계	9368	1.81(.7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에서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에서 한부모가정(39.1%)과 조손가정(36.6%)이 양친부모가정(30.0%)에 비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33.0%)가 남자(29.0%)에 비해 비교적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8.3%), 중학교(27.8%), 고등학교(43.6%)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업을 중단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20.4%)에서 중층(31.7%) 그리고 하층(48.6%)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역량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낮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과 치료가 수시로 이루어져야하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자녀의 학업문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표 IV-42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564	6.0	2,333	24.8	2,540	27.0	3,759	40.0	200	2.2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469	5.6	2,042	24.4	2,262	27.0	3,422	40.9	170	2.1	86.396***
한부모가정	687	60	8.7	209	30.4	191	27.8	209	30.4	17.1	2.6	
조손가정	93	9	9.7	25	26.9	17	18.3	41	44.1	1	1.1	
기타가정	198	19	9.6	44	22.2	58	29.3	68	34.3	9	4.5	
무응답	53	7	13.2	13	24.5	12	22.6	19	35.8	2	3.8	
성별												
남자	5,046	307	6.1	1,154	22.9	1,379	27.3	2,090	41.4	116	2.3	24.262***
여자	4,350	257	5.9	1,179	27.1	1,161	26.7	1,669	38.4	84	2.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88	3.0	453	15.3	672	22.7	1,675	56.6	71	2.4	784.115***
중학교	2,830	135	4.8	651	23.0	822	29.0	1,156	40.8	66	2.3	
고등학교	3,607	341	9.5	1,229	34.1	1,046	29.0	928	25.7	63	1.7	
학교소재지												
서울	1,357	63	4.6	330	24.3	378	27.9	561	41.3	25	1.9	12.704
광역시	2,364	152	6.4	608	25.7	607	25.7	955	40.4	42	1.7	
시·군	5,675	349	6.1	1,395	24.6	1,555	27.4	2,243	39.5	133	2.4	
경제적수준												
상	1,492	65	4.4	239	16.0	318	21.3	830	55.6	40	2.6	296.375***
중	7,357	425	5.8	1,903	25.9	2,084	28.3	2,798	38.0	147	2.0	
하	525	72	13.7	183	34.9	135	25.7	122	23.2	13	2.5	
무응답	22	2	9.1	8	36.4	3	13.6	9	40.9		.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에서 한부모가정(33.1%)의 아동·청소년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24.8%, 그리고 양친부모가정(23.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26.8%)가 남자(22.4%)에 비해 비교적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1.7%), 중학교(25.1%), 초등학교(15.1%)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무단결석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17.7%)에서 중층(24.9%) 그리고 하층(37.1%)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있어서도 <표Ⅳ-42>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입시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Ⅳ-4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학교에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499	5.3	1,804	19.2	2,339	24.9	4,603	49.0	151	1.6	
가족유형												121.187***
양친부모가정	8,365	413	4.9	1,576	18.8	2,092	25.0	4,157	49.7	127	1.5	
한부모가정	687	54	7.9	173	25.2	173	25.2	275	40.0	12	1.7	
조손가정	93	9	9.7	14	15.1	19	20.4	50	53.8	1	1.1	
기타가정	198	16	8.1	33	16.7	45	22.7	99	50.0	5	2.5	
무응답	53	7	13.2	8	15.1	10	18.9	22	41.5	6	11.3	
성별												36.966***
남자	5,046	275	5.4	860	17.0	1,251	24.8	2,572	51.0	88	1.7	
여자	4,350	224	5.1	944	21.7	1,088	25.0	2,031	46.7	63	1.4	
학교급												468.626***
초등학교	2,959	75	2.5	373	12.6	585	19.8	1,865	63.0	61	2.0	
중학교	2,830	141	5.0	568	20.1	709	25.1	1,366	48.3	46	1.6	
고등학교	3,607	283	7.8	863	23.9	1,045	29.0	1,372	38.0	44	1.2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학교소재지												
서울	1,357	64	4.7	272	20.0	344	25.4	659	48.6	18	1.3	5.218
광역시	2,364	120	5.1	447	18.9	585	24.7	1,172	49.6	40	1.7	
시·군	5,675	315	5.6	1,085	19.1	1,410	24.8	2,772	48.8	93	1.7	
경제적수준												
상	1,492	68	4.6	195	13.1	254	17.0	947	63.5	28	1.9	256.436***
중	7,357	370	5.0	1,466	19.9	1,951	26.5	3,460	47.0	110	1.5	
하	525	59	11.2	136	25.9	132	25.1	187	35.6	11	2.1	
무응답	22	2	9.1	7	31.8	2	9.1	9	40.9	2	9.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11.7%), 양친부모가정(10.3%), 조손가정(8.6%) 순으로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14.5%)가 여자(5.7%)에 비해 월등히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11.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10.7%), 고등학교(9.0%) 순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11.3%), 하층(10.8%), 중층(10.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물리적 폭력사용이 전체적으로 10%가 넘고 있고, 특히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폭력사용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표 IV-4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86	.9	893	9.5	2,538	27.0	5,702	60.7	177	1.9	
가족유형												84.114***
양친부모가정	8,365	70	.8	792	9.5	2,220	26.5	5,132	61.4	151	1.8	
한부모가정	687	6	.9	74	10.8	216	31.4	379	55.2	12	1.7	
조손가정	93	1	1.1	7	7.5	29	31.2	53	57.0	3	3.3	
기타가정	198	5	2.5	20	10.1	60	30.3	107	54.0	6	3.0	
무응답	53	4	7.5		.0	13	24.5	31	58.5	5	9.4	
성별												556.851***
남자	5,046	66	1.3	667	13.2	1,694	33.6	2,522	50.0	97	2.0	
여자	4,350	20	.5	226	5.2	844	19.4	3,180	73.1	80	1.8	
학교급												96.898***
초등학교	2,959	22	.7	296	10.0	646	21.8	1,917	64.8	78	2.6	
중학교	2,830	24	.8	312	11.0	843	29.8	1,597	56.4	54	1.9	
고등학교	3,607	40	1.1	285	7.9	1,049	29.1	2,188	60.7	45	1.3	
학교소재지												15.464
서울	1,357	12	.9	145	10.7	338	24.9	837	61.7	25	1.8	
광역시 시·군	2,364 5,675	19 55	.8 1.0	202 546	8.5 9.6	689 1,511	29.1 26.6	1,414 3,451	59.8 60.8	40 112	1.7 2.0	
경제적수준												72.954***
상	1,492	20	1.3	149	10.0	299	20.0	985	66.0	39	2.6	
중	7,357	56	.8	690	9.4	2,072	28.2	4,413	60.0	126	1.7	
하 무응답	525 22	9 1	1.7 4.5	48 6	9.1 27.3	165 2	31.4 9.1	291 13	55.4 59.1	12 .0	2.3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54.7%)이 가장 높았으며 조손가정(46.2%), 양친부모가정(44.8%) 순으로 친구와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52.9%)가 여자(37.1%)에 비해 확연히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52.8%)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45.1%)와 고등학교(45.0%)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54.8%), 중층(47.3%), 상층(33.5%)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청소년의 욕설사용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족유형별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높은 것은 자녀지도에 대한 특별지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V-4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사용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922	9.8	3,360	35.8	2,749	29.3	2,263	24.1	102	1.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789	9.4	2,964	35.4	2,461	29.4	2,067	24.7	84	1.0	107.487***
한부모가정	687	90	13.1	286	41.6	186	27.1	119	17.3	6	.8	
조손가정	93	8	8.6	35	37.6	28	30.1	21	22.6	1	1.1	
기타가정	198	23	11.6	61	30.8	64	32.3	45	22.7	5	2.5	
무응답	53	12	22.6	14	26.4	10	18.9	11	20.8	6	11.3	
성별												
남자	5,046	606	12.0	2,063	40.9	1,422	28.2	891	17.7	64	1.3	331.549***
여자	4,350	316	7.3	1,297	29.8	1,327	30.5	1,372	31.5	38	.9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37	4.6	674	22.8	882	29.8	1,211	40.9	55	1.8	864.684***
중학교	2,830	314	11.1	1,181	41.7	833	29.4	476	16.8	26	.9	
고등학교	3,607	471	13.1	1,505	41.7	1,034	28.7	576	16.0	21	.6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15	8.5	496	36.6	393	29.0	340	25.1	13	1.0	11.152
광역시	2,364	227	9.6	888	37.6	678	28.7	547	23.1	24	1.0	
시·군	5,675	580	10.2	1,976	34.8	1,678	29.6	1,376	24.2	65	1.1	
경제적수준												
상	1,492	113	7.6	386	25.9	409	27.4	554	37.1	30	2.0	247.777***
중	7,357	714	9.7	2,765	37.6	2,199	29.9	1,612	21.9	67	.9	
하	525	90	17.1	198	37.7	140	26.7	92	17.5	5	1.0	
무응답	22	5	22.7	11	50.0	1	4.5	5	22.7		.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는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9.4%), 한부모가정(8.8%), 조손가정(7.5%) 순으로 긍정적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11.8%)가 여자(6.8%)에 비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1.6%)와 중학교(11.4%)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고등학교(6.2%)로 오면서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11.4%), 중층(9.0%), 하층(9.5%)의 순으로 친구를

따돌리는 비율이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저학년 저연령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학교생활 지도 방식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적 판단이 미흡한 초등학생의 경우 따돌림의 기준이 피부색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결손가정 등 외적으로 들어난 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내 개별가정에 대한 비밀보호의무 강화 및 관용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집단따돌림과 관련해서는 부모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표 IV-46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린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70	.7	823	8.8	2,732	29.1	5,551	59.1	220	2.3	
가족유형												55.458***
양친부모가정	8,365	60	.7	729	8.7	2,457	29.4	4,932	59.0	187	2.3	
한부모가정	687	4	.6	56	8.2	188	27.4	423	61.6	16	2.3	
조손가정	93		.0	7	7.5	23	24.7	61	65.6	2	2.2	
기타가정	198	4	2.0	24	12.1	53	26.8	109	55.1	8	4.0	
무응답	53	2	3.8	7	13.2	11	20.8	26	49.1	6	13.2	
성별												136.819***
남자	5,046	56	1.1	542	10.7	1,587	31.5	2,734	54.2	127	2.6	
여자	4,350	14	.3	281	6.5	1,145	26.3	2,817	64.8	93	2.1	
학교급												154.855***
초등학교	2,959	27	.9	317	10.7	831	28.1	1,696	57.3	88	2.9	
중학교	2,830	20	.7	304	10.7	938	33.1	1,492	52.7	76	2.7	
고등학교	3,607	23	.6	202	5.6	963	26.7	2,363	65.5	56	1.5	
학교소재지												29.351**
서울	1,357	17	1.3	148	10.9	403	29.7	759	55.9	30	2.2	
광역시 시·군	2,364 5,675	10 43	.4 .8	172 503	7.3 8.9	712 1,617	30.1 28.5	1,423 3,369	60.2 59.4	47 143	2.0 2.5	
경제적수준												43.579***
상	1,492	16	1.1	154	10.3	364	24.4	927	62.1	31	2.0	
중	7,357	47	.6	620	8.4	2,222	30.2	4,294	58.4	174	2.3	
하	525	6	1.1	44	8.4	141	26.9	320	61.0	14	2.7	
무응답	22	1	4.5	5	22.7	5	22.7	10	45.5	1	4.5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본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11.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정(9.3%), 양친부모가정(9.0%)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였다.

성별 중 남자(13.0%)가 여자(4.5%)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5%)와 중학교(10.4%)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고등학교(7.7%)로 오면서 수치가 확연히 낮아졌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9.8%), 하층(9.4%), 중층(8.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7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48	1.6	707	7.5	2,151	22.9	6,240	66.4	150	1.6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26	1.5	629	7.5	1,890	22.6	5,597	66.9	123	1.5	48.190***
한부모가정	687	12	1.7	52	7.6	181	26.3	428	62.3	14	2.0	
조손가정	93	2	2.2	9	9.7	21	22.6	58	62.4	3	3.2	
기타가정	198	7	3.5	15	7.6	48	24.2	123	62.1	5	2.5	
무응답	53	1	1.9	2	3.8	11	20.8	34	64.2	5	9.4	
성별												
남자	5,046	117	2.3	542	10.7	1,487	29.5	2,808	55.6	92	1.8	587.678***
여자	4,350	31	.7	165	3.8	664	15.3	3,432	78.9	58	1.3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7	1.6	233	7.9	551	18.6	2,064	69.8	64	2.2	82.670***
중학교	2,830	46	1.6	250	8.8	730	25.8	1,754	62.0	50	1.7	
고등학교	3,607	55	1.5	224	6.2	870	24.1	2,422	67.1	36	1.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3	1.0	93	6.9	317	23.4	908	66.9	26	1.9	13.172
광역시	2,364	33	1.4	174	7.4	555	23.5	1,570	66.4	32	1.4	
시·군	5,675	102	1.8	440	7.8	1,279	22.5	3,762	66.3	92	1.6	
경제적수준												
상	1,492	28	1.9	118	7.9	245	16.4	1,074	72.0	27	1.8	65.377***
중	7,357	104	1.4	551	7.5	1,757	23.9	4,832	65.7	113	1.6	
하	525	14	2.7	35	6.7	146	27.8	320	61.0	10	1.9	
무응답	22	2	9.1	3	13.6	3	13.6	14	63.6		.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와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본인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32.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31.2%), 양친부모가정(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4.4%)가 여자(18.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20.8%), 중학교(28.3%), 고등학교(31.4%)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친구들이 본인에게 욕설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35.8%), 중층(27.4%), 상층(14.6%) 순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확연히 더 높아지고 있다.

표 IV-48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설을 사용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494	5.3	2,052	21.8	3,221	34.3	3,411	36.3	218	2.3	
가족유형												49.435***
양친부모가정	8,365	422	5.0	1,798	21.5	2,855	34.1	3,097	37.0	193	2.3	
한부모가정	687	52	7.6	172	25.0	244	35.5	206	30.0	13	1.8	
조손가정	93	5	5.4	24	25.8	28	30.1	34	36.6	2	2.2	
기타가정	198	13	6.6	46	23.2	76	38.4	57	28.8	6	3.0	
무응답	53	2	3.8	12	22.6	18	34.0	17	32.1	4	7.6	
성별												488.791***
남자	5,046	349	6.9	1,388	27.5	1,837	36.4	1,368	27.1	104	2.1	
여자	4,350	145	3.3	664	15.3	1,384	31.8	2,043	47.0	114	2.6	
학교급												342.496***
초등학교	2,959	126	4.3	487	16.5	813	27.5	1,421	48.0	112	3.7	
중학교	2,830	140	4.9	661	23.4	1,082	38.2	886	31.3	61	2.2	
고등학교	3,607	228	6.3	904	25.1	1,326	36.8	1,104	30.6	45	1.3	
학교소재지												14.746
서울	1,357	59	4.3	292	21.5	468	34.5	502	37.0	36	2.6	
광역시 시·군	2,364 5,675	111 324	4.7 5.7	501 1,259	21.2 22.2	857 1,896	36.3 33.4	847 2,062	35.8 36.3	48 134	2.0 2.4	
경제적수준												165.320***
상	1,492	72	4.8	265	17.8	393	26.3	719	48.2	43	2.8	
중	7,357	372	5.1	1,639	22.3	2,630	35.7	2,551	34.7	165	2.3	
하	525	45	8.6	143	27.2	195	37.1	133	25.3	9	1.7	
무응답	22	5	22.7	5	22.7	3	13.6	8	36.4	1	4.5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5.8%)이 조손가정(4.3%)과 양친부모가정(4.2%)에 비해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별 중 남자(4.6%)가 여자(4.0%)에 비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6.9%), 중학교(4.2%), 고등학교(2.3%)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7.2%), 상층(5.4%), 중층(3.8%)의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표 IV-49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97	1.0	311	3.3	1,182	12.6	7,588	80.8	218	2.3	
가족유형												43.535**
양친부모가정	8,365	78	.9	273	3.3	1,033	12.3	6,796	81.2	185	2.2	
한부모가정	687	12	1.7	28	4.1	105	15.3	526	76.6	16	2.3	
조손가정	93	1	1.1	3	3.2	13	14.0	73	78.5	3	3.2	
기타가정	198	6	3.0	6	3.0	27	13.6	150	75.8	9	4.5	
무응답	53		.0	1	1.9	4	7.5	43	81.1	5	9.4	
성별												52.622***
남자	5,046	54	1.1	179	3.5	746	14.8	3,949	78.3	118	2.3	
여자	4,350	43	1.0	132	3.0	436	10.0	3,639	83.7	100	2.4	
학교급												126.152***
초등학교	2,959	54	1.8	152	5.1	361	12.2	2,288	77.3	104	3.5	
중학교	2,830	27	1.0	90	3.2	376	13.3	2,279	80.5	58	2.0	
고등학교	3,607	16	.4	69	1.9	445	12.3	3,021	83.8	56	1.6	
학교소재지												8.385
서울	1,357	13	1.0	47	3.5	187	13.8	1,077	79.4	33	2.5	
광역시 시·군	2,364 5,675	19 65	.8 1.1	80 184	3.4 3.2	290 705	12.3 12.4	1,930 4,581	81.6 80.7	45 140	1.9 2.5	
경제적수준												68.339***
상	1,492	23	1.5	58	3.9	155	10.4	1,217	81.6	39	2.6	
중	7,357	61	.8	224	3.0	955	13.0	5,954	80.9	163	2.2	
하	525	11	2.1	27	5.1	71	13.5	402	76.6	14	2.7	
무응답	22	2	9.1	2	9.1	1	4.5	15	68.2	2	9.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27.8%), 양친부모가정(25.6%), 조손가정(14.7%)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2.2%)가 여자(18.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34.7%)와 고등학교(30.0%)에 비해 초등학교(11.9%)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광역시(32.6%)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시·군(26.3%)과 서울(11.1%) 순이었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22.4%), 중층(26.0%), 하층(31.9%) 순으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의 폭력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지도 방식이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에 학부모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학생 홀로 감당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나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변화,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지도방식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수업이외의 생활지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거나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중학교의 학교생활 지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교사들도 초등학교와 연계된 지도방식을 일정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IV-50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788	8.4	1,629	17.3	2,047	21.8	4,765	50.7	167	1.7	
가족유형												49.775***
양친부모가정	8,365	686	8.2	1,452	17.4	1,793	21.4	4,292	51.3	142	1.7	
한부모가정	687	64	9.3	127	18.5	177	25.8	305	44.4	14	2.0	
조손가정	93	7	7.5	16	17.2	15	16.1	51	54.8	4	4.3	
기타가정	198	21	10.6	29	14.6	51	25.8	91	46.0	6	3.0	
무응답	53	10	18.9	5	9.4	11	20.8	26	49.1	1	1.9	
성별												335.042***
남자	5,046	612	12.1	1,012	20.1	1,124	22.3	2,209	43.8	99	1.8	
여자	4,350	176	4.0	617	14.2	923	21.2	2,556	58.8	78	1.8	
학교급												890.256***
초등학교	2,959	77	2.6	275	9.3	409	13.8	2,140	72.3	58	1.9	
중학교	2,830	345	12.2	637	22.5	729	25.8	1,059	37.4	60	2.1	
고등학교	3,607	366	10.1	717	19.9	909	25.2	1,566	43.4	49	1.4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성별												
남자	5,046	307	6.1	773	15.3	1,194	23.7	2,700	53.5	72	1.4	210.648***
여자	4,350	117	2.7	440	10.1	815	18.7	2,927	67.3	51	1.2	
학교급												
초등학교	2,959	39	1.3	131	4.4	250	8.4	2,506	84.7	33	1.1	1134.478***
중학교	2,830	180	6.4	455	16.1	746	26.4	1,402	49.5	47	1.7	
고등학교	3,607	205	5.7	627	17.4	1,013	28.1	1,719	47.7	43	1.2	
학교소재지												
서울	1,357	29	2.1	125	9.2	260	19.2	925	68.2	18	1.3	95.827***
광역시	2,364	127	5.4	374	15.8	560	23.7	1,276	54.0	27	1.2	
시·군	5,675	268	4.7	714	12.6	1,189	21.0	3,426	60.4	78	1.4	
경제적수준												
상	1,492	65	4.4	142	9.5	209	14.0	1,050	70.4	26	1.8	139.319***
중	7,357	322	4.4	984	13.4	1,652	22.5	4,313	58.6	86	1.2	
하	525	34	6.5	84	16.0	146	27.8	250	47.6	11	2.1	
무응답	22	3	13.6	3	13.6	2	9.1	14	63.6	.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가정(27.8%), 양친부모가정(26.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26.0%)와 여자(26.4%)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31.5%)와 고등학교(31.2%)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는 초등학교(15.0%)의 두배를 상회하는 비율이었다.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보았을 때 광역시(27.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시·군(26.1%), 서울(23.9%) 순이었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33.6%), 중층(26.2%), 상층(23.5%)의 순으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표 IV-53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499	5.3	1,922	20.5	2,722	29.0	4,129	43.9	124	1.3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429	5.1	1,708	20.4	2,427	29.0	3,693	44.1	108	1.3	53.355***
한부모가정	687	40	5.8	160	23.3	208	30.3	271	39.4	8	1.2	
조손가정	93	7	7.5	14	15.1	22	23.7	49	52.7	1	1.1	
기타가정	198	15	7.6	33	16.7	47	23.7	97	49.0	6	3.0	
무응답	53	8	15.1	7	13.2	18	34.0	19	35.8	1	1.9	
성별												
남자	5,046	290	5.7	889	17.6	1,420	28.1	2,365	46.9	82	1.7	79.151***
여자	4,350	209	4.8	1,033	23.7	1,302	29.9	1,764	40.6	42	.9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1	1.4	172	5.8	410	13.9	2,300	77.7	36	1.2	2129.026***
중학교	2,830	192	6.8	645	22.8	992	35.1	953	33.7	48	1.7	
고등학교	3,607	266	7.4	1,105	30.6	1,320	36.6	876	24.3	40	1.2	
학교소재지												
서울	1,357	50	3.7	264	19.5	415	30.6	612	45.1	16	1.2	28.318**
광역시	2,364	118	5.0	522	22.1	718	30.4	983	41.6	23	1.0	
시·군	5,675	331	5.8	1,136	20.0	1,589	28.0	2,534	44.7	85	1.5	
경제적수준												
상	1,492	67	4.5	168	11.3	282	18.9	949	63.6	26	1.8	346.291***
중	7,357	379	5.2	1,612	21.9	2,263	30.8	3,012	40.9	91	1.3	
하	525	50	9.5	137	26.1	174	33.1	157	29.9	7	1.4	
무응답	22	3	13.6	5	22.7	3	13.6	11	50.0	.0		

***p<.001, **p<.01, *p<.05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중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 한다’는 조사의 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라 한부모가정(5.9%), 양친부모가정(5.2%)의 순으로 높았으며 조손가정(4.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은 중학교(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등학교(5.9%)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초등학교(3.2%)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의 경우, 하층(7.2%)이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이어서 중층(5.3%), 상층(4.9%)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4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82	.9	417	4.4	1,610	17.1	7,165	76.3	122	1.3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66	.8	365	4.4	1,430	17.1	6,397	76.5	107	1.3	49.089***
한부모가정	687	10	1.5	30	4.4	117	17.0	522	76.0	8	1.2	
조손가정	93		.0	4	4.3	15	16.1	72	77.4	2	2.2	
기타가정	198	5	2.5	10	5.1	37	18.7	142	71.7	4	2.0	
무응답	53	1	1.9	8	15.1	11	20.8	32	60.4	1	1.9	
성별												
남자	5,046	59	1.2	257	5.1	940	18.6	3,710	73.5	80	1.6	53.688***
여자	4,350	23	.5	160	3.7	670	15.4	3,455	79.4	42	1.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21	.7	75	2.5	260	8.8	2,555	86.3	48	1.7	282.978***
중학교	2,830	28	1.0	161	5.7	559	19.8	2,043	72.2	39	1.4	
고등학교	3,607	33	.9	181	5.0	791	21.9	2,567	71.2	35	1.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0	.7	51	3.8	204	15.0	1,073	79.1	19	1.4	11.697
광역시	2,364	16	.7	100	4.2	413	17.5	1,805	76.4	30	1.2	
시·군	5,675	56	1.0	266	4.7	993	17.5	4,287	75.5	73	1.3	
경제적수준												
상	1,492	23	1.5	50	3.4	190	12.7	1,205	80.8	24	1.6	52.440***
중	7,357	50	.7	335	4.6	1,317	17.9	5,563	75.6	92	1.3	
하	525	8	1.5	30	5.7	98	18.7	383	73.0	6	1.2	
무응답	22	1	4.5	2	9.1	5	22.7	14	63.6	.0		

***p<.001, **p<.01, *p<.05

(3) 학교활동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 방과 후 학교 활동, 학교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표 IV-55> 참조).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와 조손가정의 자녀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이 불만인 편이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조손가정의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불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의 자녀를 제외한 양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55 가족유형에 따른 학교활동 만족도 차이

		N	M(SD)	F	P	Tukey
1)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양친부모가정 ^a	8157	2.99(.80)	6,339	.000	a>b
	한부모가정 ^b	675	2.85(.81)			
	조손가정 ^c	90	2.80(.95)			
	기타가정 ^d	192	2.91(.85)			
	무응답 ^e	50	2.86(.90)			
	합계	9164	2.98(.81)			
2)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양친부모가정	7016	2.37(1.03)	2,483	.042	.
	한부모가정	587	2.26(1.02)			
	조손가정	81	2.25(1.02)			
	기타가정	161	2.34(1.02)			
	무응답	40	2.15(.86)			
	합계	7885	2.36(1.02)			
3) 나는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양친부모가정 ^a	7168	2.38(1.03)	4,872	.001	a>b
	한부모가정 ^b	602	2.23(1.03)			
	조손가정 ^c	83	2.14(1.10)			
	기타가정 ^d	160	2.31(1.04)			
	무응답 ^e	37	2.11(.99)			
	합계	8050	2.37(1.04)			
4)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양친부모가정 ^a	7486	2.64(.98)	4,057	.003	a>b
	한부모가정 ^b	626	2.50(.97)			
	조손가정 ^c	84	2.48(1.09)			
	기타가정 ^d	169	2.67(.98)			
	무응답 ^e	41	2.46(1.03)			
	합계	8406	2.63(.98)			

학교활동 중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의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양친부모가정(77.4%)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고, 기타가정(63.4%), 한부모가정(71.8%), 조손가정(6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76.8%)와 여자(76.7%)로 비슷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5.3%), 중학교(77.9%), 고등학교(68.7%)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수준에서는 상층(83.1%), 중층(76.6%), 하층(58.8%) 순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6 학교활동 -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2,301	24.5	4,911	52.3	1,385	14.7	567	6.0	232	2.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2,092	25.0	4,386	52.4	1,190	14.2	489	5.8	208	2.4	69,916***
한부모가정	687	129	18.8	364	53.0	135	19.7	47	6.8	12	1.7	
조손가정	93	23	24.7	36	38.7	21	22.6	10	10.8	3	3.2	
기타가정	198	45	22.7	101	51.0	30	15.2	16	8.1	6	3.0	
무응답	53	12	22.6	24	45.3	9	17.0	5	9.4	3	5.7	
성별												
남자	5,046	1,310	26.0	2,565	50.8	698	13.8	350	6.9	123	2.5	34,778***
여자	4,350	991	22.8	2,346	53.9	687	15.8	217	5.0	109	2.5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281	43.3	1,244	42.0	257	8.7	101	3.4	76	2.6	995,314***
중학교	2,830	577	20.4	1,633	57.7	374	13.2	166	5.9	80	2.8	
고등학교	3,607	443	12.3	2,034	56.4	754	20.9	300	8.3	76	2.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344	25.4	728	53.6	186	13.7	60	4.4	39	2.9	16,030
광역시	2,364	579	24.5	1,219	51.6	373	15.8	146	6.2	47	1.9	
시·군	5,675	1,378	24.3	2,964	52.2	826	14.6	361	6.4	146	2.6	
경제적수준												
상	1,492	634	42.5	604	40.5	131	8.8	82	5.5	41	2.7	443,554***
중	7,357	1,599	21.7	4,048	55.0	1,127	15.3	409	5.6	174	2.4	
하	525	60	11.4	249	47.4	125	23.8	74	14.1	17	3.2	
무응답	22	8	36.4	10	45.5	2	9.1	2	9.1	.0		

***p<.001, **p<.01, *p<.05

학교활동 중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41%)이 긍정적인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한부모가정(36.7%)과 조손가정(36.6%)은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자(42.7%)가 남자(38.5%)보다 높았고, 학교급의 경우에는 초등학교(60.8%), 중학교(32.5%), 고등학교(30.1%)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서울(45.5%)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군(40.1%)과 광역시(38.5%)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상층(52.2%), 중층(38.8%), 하층(35.0%)의

순으로 방과 후 학교 활동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7 학교활동 -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133	12.1	2,670	28.4	1,990	21.2	2,092	22.3	1,511	16.1	
가족유형												34.385*
양친부모가정	8,365	1,025	12.3	2,402	28.7	1,751	20.9	1,838	22.0	1,349	16.2	
한부모가정	687	74	10.8	178	25.9	159	23.1	176	25.6	100	14.5	
조손가정	93	10	10.8	24	25.8	23	24.7	24	25.8	12	12.9	
기타가정	198	22	11.1	54	27.3	41	20.7	44	22.2	37	18.7	
무응답	53	2	3.8	12	22.6	16	30.2	10	18.9	13	24.5	
성별												60.752***
남자	5,046	623	12.3	1,321	26.2	1,049	20.8	1,265	25.1	788	15.6	
여자	4,350	510	11.7	1,349	31.0	941	21.6	827	19.0	723	16.6	
학교급												1579.603***
초등학교	2,959	774	26.2	1,023	34.6	274	9.3	303	10.2	585	19.7	
중학교	2,830	193	6.8	727	25.7	666	23.5	693	24.5	551	19.5	
고등학교	3,607	166	4.6	920	25.5	1,050	29.1	1,096	30.4	375	10.4	
학교소재지												59.740***
서울	1,357	182	13.4	435	32.1	251	18.5	241	17.8	248	18.3	
광역시 시·군	2,364 5,675	261 690	11.0 12.2	650 1,585	27.5 27.9	528 1,211	22.3 21.3	571 1,280	24.2 22.6	354 909	15.0 16.1	
경제적수준												331.542***
상	1,492	356	23.9	422	28.3	202	13.5	264	17.7	248	16.6	
중	7,357	741	10.1	2,109	28.7	1,656	22.5	1,653	22.5	1,198	16.3	
하 무응답	525 22	31 5	5.9 22.7	132 7	25.1 31.8	130 2	24.8 9.1	172 3	32.8 13.6	60 5	11.4 22.7	

***p<.001, **p<.01, *p<.05

학교활동 중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경우는 양친부모가정(42.3%), 기타가정(38.4%), 한부모가정(37.4%), 조손가정(34.4%)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성별에서 여자(43.8%)가 남자(39.9%)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초등학교(62.2%), 중학교(35.4%), 고등학교(2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서울(47.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군(41.3%)과 광역시(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53.1%)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층(40.3%)과 하층(2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8 학교활동 -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1,205	12.8	2,712	28.9	1,966	20.9	2,167	23.1	1,346	14.3	
가족유형												51.970***
양친부모가정	8,365	1,097	13.1	2,441	29.2	1,747	20.9	1,883	22.5	1,197	14.3	
한부모가정	687	72	10.5	185	26.9	153	22.3	192	27.9	85	12.3	
조손가정	93	12	12.9	20	21.5	19	20.4	32	34.4	10	10.8	
기타가정	198	21	10.6	55	27.8	37	18.7	47	23.7	38	19.2	
무응답	53	3	5.7	11	20.8	10	18.9	13	24.5	16	30.2	
성별												57.741***
남자	5,046	664	13.2	1,346	26.7	1,014	20.1	1,301	25.8	721	14.3	
여자	4,350	541	12.4	1,366	31.4	952	21.9	866	19.9	625	14.3	
학교급												1622.317****
초등학교	2,959	820	27.7	1,022	34.5	291	9.8	294	9.9	532	18.0	
중학교	2,830	221	7.8	781	27.6	649	22.9	701	24.8	478	16.9	
고등학교	3,607	164	4.5	909	25.2	1,026	28.4	1,172	32.5	336	9.4	
학교소재지												86.990***
서울	1,357	201	14.8	446	32.9	254	18.7	223	16.4	233	17.1	
광역시	2,364	277	11.7	651	27.5	501	21.2	623	26.4	312	13.2	
시·군	5,675	727	12.8	1,615	28.5	1,211	21.3	1,321	23.3	801	14.1	
경제적수준												331.542***
상	1,492	379	25.4	413	27.7	205	13.7	269	18.0	226	15.1	
중	7,357	790	10.7	2,178	29.6	1,619	22.0	1,710	23.2	1,060	14.4	
하	525	33	6.3	115	21.9	137	26.1	184	35.0	56	10.7	
무응답	22	3	13.6	6	27.3	5	22.7	4	18.2	4	18.2	

***p<.001, **p<.01, *p<.05

학교활동 중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친부모가정(55.7%), 한부모가정(4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46.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58.0%)가 남자(52.8%)보다 높게 응답하였고,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가 6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중학교(56.6%), 고등학교(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서울(58.6%), 시·군(54.7%), 광역시(5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63.9%)이 긍정적인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중층(54.3%), 하층(41.7%)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IV-59 학교활동 -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1,599	17.0	3,582	38.1	1,758	18.7	1,467	15.6	990	10.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452	17.4	3,207	38.3	1,544	18.5	1,283	15.3	879	10.6	51.970***
한부모가정	687	92	13.4	251	36.5	161	23.4	122	17.8	61	8.9	
조손가정	93	18	19.4	25	26.9	20	21.5	21	22.6	9	9.7	
기타가정	198	32	16.2	79	39.9	28	14.1	30	15.2	29	14.6	
무응답	53	5	9.4	20	37.7	5	9.4	11	20.8	12	22.7	
성별												
남자	5,046	866	17.2	1,794	35.6	913	18.1	913	18.1	560	11.2	57.741***
여자	4,350	733	16.9	1,788	41.1	845	19.4	554	12.7	430	9.9	
학교급												
초등학교	2,959	944	31.9	1,107	37.4	265	9.0	210	7.1	433	14.6	1622.317****
중학교	2,830	374	13.2	1,227	43.4	534	18.9	412	14.6	283	10.0	
고등학교	3,607	281	7.8	1,248	34.6	959	26.6	845	23.4	274	7.6	
학교소재지												
서울	1,357	241	17.8	553	40.8	248	18.3	168	12.4	147	10.8	86.990***
광역시	2,364	403	17.0	878	37.1	462	19.5	390	16.5	231	9.8	
시·군	5,675	955	16.8	2,151	37.9	1,048	18.5	909	16.0	612	10.8	
경제적수준												
상	1,492	461	30.9	492	33.0	166	11.1	192	12.9	181	12.1	331.542***
중	7,357	1,081	14.7	2,916	39.6	1,462	19.9	1,135	15.4	763	10.4	
하	525	55	10.5	164	31.2	129	24.6	135	25.7	42	8.0	
무응답	22	2	9.1	10	45.5	1	4.5	5	22.7	4	18.2	

***p<.001, **p<.01, *p<.05

4)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사회생활 실태

(1) 지역사회활동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사회(마을, 동네)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사회 주민의 도움, 지역사회 행사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0> 참조).

아동·청소년들은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편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는 생각에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조손가정과 양친부모가정의 자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 참여는 모든 가족유형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는 편이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지역사회 행사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60 가족유형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만족도 차이

		N	M(SD)	F	P	Tukey
1) 나의 지역사회 (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양친부모가정 ^a	7141	2.89(.80)	10.761	.000	a)b
	한부모가정 ^b	586	2.67(.86)			
	조손가정 ^c	81	2.81(.82)			
	기타가정 ^d	165	2.84(.80)			
	무응답 ^e	44	2.59(1.00)			
	합계	7808	2.87(.81)			
2) 나는 지역사회 (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양친부모가정 ^a	7658	1.95(.85)	7.746	.000	a)b
	한부모가정 ^b	644	1.77(.81)			
	조손가정 ^c	83	1.88(.86)			
	기타가정 ^d	179	1.92(.80)			
	무응답 ^e	48	1.73(.74)			
	합계	8612	1.94(.84)			
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양친부모가정 ^a	7973	3.08(.79)	7.833	.000	a)b, d
	한부모가정 ^b	657	2.93(.82)			
	조손가정 ^c	88	3.10(.85)			
	기타가정 ^d	183	3.04(.79)			
	무응답 ^e	49	2.73(.93)			
	합계	8950	3.06(.80)			

지역사회활동 중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는 질문의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양친부모가정(64.5%)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조손가정(63.5%)과 기타가정(61.6%)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54.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중 여자(64.1%)가 남자(63.1%)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75.8%), 중학교(64%), 고등학교(5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74.9%), 중층(62.3%), 하층(48.8%) 순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61 지역사회 활동 -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1,572	16.7	4,402	46.8	1,450	15.4	593	6.3	1,379	14.7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436	17.2	3,955	47.3	1,250	14.9	500	6.0	1,224	14.6	68.725***
한부모가정	687	87	12.7	285	41.5	150	21.8	64	9.3	101	14.7	
조손가정	93	14	15.1	45	48.4	15	16.1	7	7.5	12	12.9	
기타가정	198	29	14.6	93	47.0	31	15.7	12	6.1	33	16.7	
무응답	53	6	11.3	24	45.3	4	7.5	10	18.9	9	17.0	
성별												
남자	5,046	888	17.6	2,298	45.5	803	15.9	364	7.2	693	13.7	39.274***
여자	4,350	684	15.7	2,104	48.4	647	14.9	229	5.3	686	15.8	
학교급												
초등학교	2,959	888	30.0	1,354	45.8	295	10.0	91	3.1	332	11.2	762.541***
중학교	2,830	397	14.0	1,414	50.0	431	15.2	164	5.8	424	14.9	
고등학교	3,607	287	8.0	1,634	45.3	724	20.1	338	9.4	624	17.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204	15.0	644	47.5	211	15.5	83	6.1	215	15.8	11.508
광역시	2,364	381	16.1	1,129	47.8	385	16.3	134	5.7	335	14.2	
시·군	5,675	987	17.4	2,629	46.3	854	15.0	376	6.6	829	14.6	
경제적수준												
상	1,492	455	30.5	662	44.4	134	9.0	78	5.2	163	10.9	337.540***
중	7,357	1,063	14.4	3,527	47.9	1,200	16.3	446	6.1	1,121	15.2	
하	525	53	10.1	203	38.7	114	21.7	67	12.8	88	16.8	
무응답	22	1	4.5	10	45.5	2	9.1	2	9.1	7	31.8	

***p<.001, **p<.01, *p<.05

지역사회활동 중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의 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

가족유형별로 양친부모가정(22.6%)이 긍정적인 응답을 가장 많이 해 주었고, 조손가정(17.2%), 한부모가정(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23.5%)가 여자(20.5%)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6.1%), 중학교(19.3%), 고등학교(12.9%) 순으로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 살펴본 결과 시·군(24%)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서울(20%)과 광역시(18.7%)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르면 상층(36.4%), 중층(19.7%), 하층(15.3%)의 순으로 나타나 상층으로 갈수록 긍정적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63 지역사회 활동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658	28.3	4,698	50.0	1,108	11.8	486	5.2	446	4.8	
가족유형												44.377**
양친부모가정	8,365	2,420	28.9	4,169	49.8	972	11.6	412	4.9	392	4.6	
한부모가정	687	147	21.4	366	53.3	92	13.4	52	7.6	31	4.3	
조손가정	93	30	32.3	43	46.2	9	9.7	6	6.5	5	5.4	
기타가정	198	52	26.3	95	48.0	27	13.6	9	4.5	15	7.6	
무응답	53	9	17.0	25	47.2	8	15.1	7	13.2	4	7.6	
성별												113.068***
남자	5,046	1,631	32.3	2,390	47.4	504	10.0	270	5.4	251	5.0	
여자	4,350	1,027	23.6	2,308	53.1	604	13.9	216	5.0	195	4.5	
학교급												949.882***
초등학교	2,959	1,424	48.1	1,141	38.6	193	6.5	70	2.4	131	4.4	
중학교	2,830	624	22.0	1,568	55.4	337	11.9	156	5.5	145	5.1	
고등학교	3,607	610	16.9	1,989	55.1	578	16.0	260	7.2	160	4.7	
학교소재지												18.050
서울	1,357	358	26.4	697	51.4	166	12.2	64	4.7	72	5.3	
광역시 시·군	2,364 5,675	674 1,626	28.5 28.7	1,211 2,790	51.2 49.2	279 663	11.8 11.7	105 317	4.4 5.6	95 279	4.0 4.9	
경제적수준												550.892***
상	1,492	750	50.3	532	35.7	80	5.4	63	4.2	67	4.5	
중	7,357	1,815	24.7	3,907	53.1	931	12.7	350	4.8	354	4.8	
하 무응답	525 22	85 8	16.2 36.4	252 7	48.0 31.8	95 2	18.1 9.1	71 2	13.5 9.1	22 3	4.2 13.6	

***p<.001, **p<.01, *p<.05

(2) 지역사회관계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족유형별로는 양친부모가정(30.7%), 한부모가정(26.8%), 조손가정(28.0%)에서 ‘매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녀모두 ‘매일’이 각각 33.6%와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일’이 각각 39.8%와 3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주 2-3회’로 각각 22.6%와 21.3%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로 오면서 ‘주말’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월 1회 이하’의 20.4%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에서 서울(36.3%), 광역시(31.5%), 시·군(28.2%) 모두 ‘매일’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서 상층은 39.5%, 중층은 28.7%, 하층은 23.6%인 것으로 수치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두 ‘매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5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

	사례수	집주변		학교나 공원		학원		PC방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988	31.8	2,601	27.7	945	10.1	995	10.6	1,824	19.4	43	.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2,674	32.0	2,325	27.8	878	10.5	866	10.4	1,586	19.0	36	.4	44.007**
한부모가정	687	202	29.4	186	27.1	37	5.4	94	13.7	163	23.7	5	.7	
조손가정	93	28	30.1	25	26.9	11	11.8	7	7.5	22	23.7		.0	
기타가정	198	69	34.8	49	24.7	17	8.6	19	9.6	42	21.2	2	1.0	
무응답	53	15	28.3	16	30.2	2	3.8	9	17.0	11	20.8		.0	
성별														
남자	5,046	1,303	25.8	1,434	28.4	485	9.6	956	18.9	843	16.7	25	.5	886.912***
여자	4,350	1,685	38.7	1,167	26.8	460	10.6	39	.9	981	22.6	18	.4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112	37.6	1,182	39.9	279	9.4	83	2.8	289	9.8	14	.5	974.734***
중학교	2,830	772	27.3	718	25.4	435	15.4	379	13.4	515	18.2	11	.4	
고등학교	3,607	1,104	30.6	701	19.4	231	6.4	533	14.8	1,020	28.3	18	.5	
학교소재지														
서울	1,357	422	31.1	412	30.4	168	12.4	139	10.2	208	15.3	8	.6	36.243***
광역시	2,364	734	31.0	635	26.9	263	11.1	259	11.0	462	19.5	11	.5	
시·군	5,675	1,832	32.3	1,554	27.4	514	9.1	597	10.5	1,154	20.3	24	.4	
경제적수준														
상	1,492	400	32.8	492	33.0	184	12.3	121	8.1	197	13.2	8	.5	124.142***
중	7,357	2,366	32.0	1,981	26.9	724	9.8	782	10.6	1,480	20.1	34	.5	
하	525	133	25.3	124	23.6	35	6.7	87	16.6	145	27.6	1	.2	
무응답	22	9	40.9	4	18.2	2	9.1	5	22.7	2	9.1		.0	

***p<.001, **p<.01, *p<.05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가족유형, 학교급, 경제적 수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과 학교소재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유형의 경우는 조손가정(60.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양친부모가정(55.4%), 한부모가정(42.5%)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69.7%)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53.9%), 고등학교(42.5%)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한 경제적수준의 경우 상층(71.8%), 중층(52.2%), 하층(3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층으로 갈수록 이웃들과의 관계를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6 이웃들과의 관계

	사례수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397	14.9	3,720	39.6	4,034	42.9	149	1.6	49	.5	47	.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284	15.3	3,351	40.1	3,533	42.2	123	1.5	37	.4	37	.4	81.738***
한부모가정	687	62	9.0	230	33.5	363	52.8	16	2.3	9	1.3	7	1.0	
조손가정	93	20	21.5	36	38.7	35	37.6	2	2.2		.0		.0	
기타가정	198	25	12.6	81	40.9	83	41.9	6	3.0	2	1.0	1	.5	
무응답	53	6	11.3	22	41.5	20	37.7	2	3.8	1	1.9	2	3.8	
성별														
남자	5,046	790	15.7	1,966	39.0	2,152	42.6	84	1.7	25	.5	29	.6	7.692
여자	4,350	607	14.0	1,754	40.3	1,882	43.3	65	1.5	24	.6	18	.4	
학교급														
초등학교	2,959	792	26.8	1,270	42.9	827	27.9	32	1.1	10	.3	28	.9	764.832***
중학교	2,830	339	12.0	1,185	41.9	1,230	43.5	51	1.8	17	.6	8	.3	
고등학교	3,607	266	7.4	1,265	35.1	1,977	54.8	66	1.8	22	.6	11	.3	
학교소재지														
서울	1,357	221	16.3	496	36.6	605	44.6	23	1.7	6	.4	6	.4	10.258
광역시	2,364	337	14.3	934	39.5	1,028	43.5	42	1.8	10	.4	13	.5	
시·군	5,675	839	14.8	2,290	40.4	2,401	42.3	84	1.5	33	.6	28	.5	
경제적수준														
상	1,492	447	30.0	624	41.8	381	25.5	20	1.3	9	.6	11	.7	481.620***
중	7,357	896	12.2	2,941	40.0	3,349	45.5	112	1.5	28	.4	31	.4	
하	525	50	9.5	148	28.2	294	56.0	17	3.2	11	2.1	5	1.0	
무응답	22	4	18.2	7	31.8	10	45.5		.0	1	4.5		.0	

***p<.001, **p<.01, *p<.05

5) 가족유형에 따른 문제행동 실태

(1) 약물비행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경험 여부 중 1개월 내 술을 마신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가정(20.4%)이 가장 음주경험의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가정(15.7%), 양친부모가정(12.1%), 조손가정(1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15.4%, 여자는 9.8%가 최근 1개월 내에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23.3%), 중학교(8%), 초등학교(4.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광역시(13.8%)가 가장 높고 시·군(12.9%), 서울(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21.1%), 중층(12.9%), 상층(9.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1개월 내 흡연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7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술을 마신 적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1,203	12.8	8,183	87.1	10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1,009	12.1	7,348	87.8	8	.1	65.394***
한부모가정	687	140	20.4	547	79.6		.0	
조손가정	93	11	11.8	82	88.2		.0	
기타가정	198	31	15.7	166	83.8	1	.5	
무응답	53	12	22.6	40	75.5	1	1.9	
성별								
남자	5,046	777	15.4	4,259	84.4	10	.2	74.982***
여자	4,350	426	9.8	3,924	90.2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34	4.5	2,818	95.2	7	.2	604.333***
중학교	2,830	227	8.0	2,601	91.9	2	.1	
고등학교	3,607	842	23.3	2,764	76.6	1	.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45	10.7	1,212	89.3		.0	14.310**
광역시	2,364	327	13.8	2,037	86.2		.0	
시·군	5,675	731	12.9	4,934	86.9	10	.2	
경제적수준								
상	1,492	137	9.2	1,350	90.5	5	.3	59.750***
중	7,357	952	12.9	6,401	87.0	4	.1	
하	525	111	21.1	413	78.7	1	.2	
무응답	22	3	13.6	19	86.4		.0	

***p<.001, **p<.01, *p<.05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경험 여부 중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유형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 비율이 가장 많은 가정은 한부모가정(14.7%)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가정(13.1%), 조손가정(11.8%)으로 나타났으며 양친부모가정(7.2%)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자(11.7%)가 여자(3.6%)보다 1개월 내 흡연 경험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15.9%)가 가장 경험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5.6%), 초등학교(0.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광역시(9.3%), 시·군(8.2%)의 순으로 흡연경험 비율이 높으며 서울(4.9%)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수준에서는 하층

(18.5%)이 가장 높으며 중층(7.7%), 상층(5.6%)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제적 수준이 하층으로 갈수록 1개월 내 흡연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68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행위 경험 여부 -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750	8.0	8,636	91.9	10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605	7.2	7,753	92.7	7	.1	79.253***
한부모가정	687	101	14.7	585	85.2	1	.1	
조손가정	93	11	11.8	82	88.2		.0	
기타가정	198	26	13.1	171	86.4	1	.5	
무응답	53	7	13.2	45	84.9	1	1.9	
성별								
남자	5,046	592	11.7	4,444	88.1	10	.2	218.136***
여자	4,350	158	3.6	4,192	96.4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9	.6	2,932	99.1	8	.3	556.322***
중학교	2,830	158	5.6	2,670	94.3	2	.1	
고등학교	3,607	573	15.9	3,034	84.1		.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66	4.9	1,291	95.1		.0	30.214***
광역시	2,364	219	9.3	2,145	90.7		.0	
시·군	5,675	465	8.2	5,200	91.6	10	.2	
경제적수준								
상	1,492	84	5.6	1,403	94.0	5	.3	100.538***
중	7,357	568	7.7	6,785	92.2	4	.1	
하	525	97	18.5	427	81.3	1	.2	
무응답	22	1	4.5	21	95.5		.0	

***p<.001, **p<.01, *p<.05

최근 1개월 이내 일탈 경험 여부 중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족유형, 성별, 학교소재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급과 경제적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경우, 기타가정(0.5%)이 가장 높았고 양친부모가정(0.3%), 한부모가정(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정에서는 본드 흡입 경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남자(0.5%)가 여자(0.1%)보다 본드 흡입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소재지에서는 광역시(0.4%)가 서울과 시·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과 시·군은 동일한 수치(0.3%)를 나타냈다.

(2) 생활비행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 최근 1년 내 친구 등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 보면 한부모가정(5.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 양친부모가정(3.6%), 기타가정(3.5%), 조손가정(3.2%)의 순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성별 중 남자(5.0%)가 여자(2.3%)보다 훔친 경험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교(3.9%)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5.1%), 초등학교(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르면 하층(6.9%), 중층(3.6%), 상층(3.2%)의 순으로 나타나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최근 1년 내 친구 등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70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50	3.7	9,040	96.2	6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298	3.6	8,063	96.4	4	.0	38.055***
한부모가정	687	38	5.5	648	94.3	1	.1	
조손가정	93	3	3.2	90	96.8		.0	
기타가정	198	7	3.5	191	96.5		.0	
무응답	53	4	7.5	48	90.6	1	1.9	
성별								
남자	5,046	252	5.0	4,789	94.9	5	.1	51.170***
여자	4,350	98	2.3	4,251	97.7	1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65	2.2	2,892	97.7	2	.1	34.197***
중학교	2,830	143	5.1	2,686	94.9	1	.0	
고등학교	3,607	142	3.9	3,462	96.0	3	.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51	3.8	1,306	96.2		.0	4.518
광역시	2,364	99	4.2	2,262	95.7	3	.1	
시·군	5,675	200	3.5	5,472	96.4	3	.1	
경제적수준								
상	1,492	47	3.2	1,444	96.8	1	.1	25.038***
중	7,357	266	3.6	7,088	96.3	3	.0	
하	525	36	6.9	487	92.8	2	.4	
무응답	22	1	4.5	21	95.5		.0	

***p<.001, **p<.01, *p<.05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가족유형에 따르면 한부모가정(13.7%), 양친부모가정(10.3%), 조손가정(8.6%)의 순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15.9%)가 여자(4.6%)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13.3%)와 중학교(13.1%)는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며 고등학교(6.5%)는 그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13.3%)이 가장 높은 폭력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고, 하층(12.8%), 중층(9.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71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999	10.6	8,386	89.3	11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63	10.3	7,494	89.6	8	.1	72.730***
한부모가정	687	94	13.7	592	86.2	1	.1	
조손가정	93	8	8.6	85	91.4		.0	
기타가정	198	29	14.6	169	85.4		.0	
무응답	53	5	9.4	46	86.8	2	3.8	
성별								
남자	5,046	800	15.9	4,240	84.0	6	.1	312.868***
여자	4,350	199	4.6	4,146	95.3	5	.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394	13.3	2,558	86.4	7	.2	113.932***
중학교	2,830	372	13.1	2,455	86.7	3	.1	
고등학교	3,607	233	6.5	3,373	93.5	1	.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46	10.8	1,210	89.2	1	.1	2.044
광역시	2,364	237	10.0	2,123	89.8	4	.2	
시·군	5,675	616	10.9	5,053	89.0	6	.1	
경제적수준								
상	1,492	198	13.3	1,289	86.4	5	.3	40.213***
중	7,357	727	9.9	6,626	90.1	4	.1	
하	525	67	12.8	456	86.9	2	.4	
무응답	22	7	31.8	15	68.2		.0	

***p<.001, **p<.01, *p<.05

가족유형에 따르면 한부모가정(7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뒤를 이어 양친부모가정(68.7%)과 조손가정(66.7%)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74.2%)가 여자(63.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81.6%)와 중학교(78.8%)는 초등학교(4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욕설 사용경험이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을 보면 하층(83.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층(71.7%), 상층(52.5%)가 뒤를 이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이 하층으로 갈수록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한 경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3 범죱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6,513	69.3	2,876	30.6	7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5,744	68.7	2,616	31.3	5	.1	57.668***
한부모가정	687	542	78.9	144	21.0	1	.1	
조손가정	93	62	66.7	31	33.3		.0	
기타가정	198	131	66.2	67	33.8		.0	
무응답	53	34	64.2	18	34.0	1	1.9	
성별								
남자	5,046	3,744	74.2	1,297	25.7	5	.1	124.020***
여자	4,350	2,769	63.7	1,579	36.3	2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337	45.2	1,620	54.7	2	.1	1191.492***
중학교	2,830	2,231	78.8	596	21.1	3	.1	
고등학교	3,607	2,945	81.6	660	18.3	2	.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929	68.5	427	31.5	1	.1	8.224
광역시	2,364	1,689	71.4	672	28.4	3	.1	
시·군	5,675	3,895	68.6	1,777	31.3	3	.1	
경제적수준								
상	1,492	784	52.5	706	47.3	2	.1	276.407***
중	7,357	5,274	71.7	2,080	28.3	3	.0	
하	525	439	83.6	84	16.0	2	.4	
무응답	22	16	72.7	6	27.3		.0	

***p<.001, **p<.01, *p<.05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에서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유형의 경우 한부모가정(5.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 가정(3.8%), 조손가정(3.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4.9%)가 여자(2.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4.7%), 중학교(4.4%), 초등학교(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르면 하층(7.6%), 상층(4.2%)의 순으로 나타나며 중층(3.6%)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75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 적이 있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72	4.0	9,018	96.0	6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14	3.8	8,048	96.2	3	.0	50.057***
한부모가정	687	38	5.5	648	94.3	1	.1	
조손가정	93	3	3.2	90	96.8		.0	
기타가정	198	11	5.6	186	93.9	1	.5	
무응답	53	6	11.3	46	86.8	1	1.9	
성별								
남자	5,046	247	4.9	4,794	95.0	5	.1	27.300***
여자	4,350	125	2.9	4,224	97.1	1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79	2.7	2,878	97.3	2	.1	19.702**
중학교	2,830	125	4.4	2,704	95.5	1	.0	
고등학교	3,607	168	4.7	3,436	95.3	3	.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60	4.4	1,296	95.5	1	.1	1.400
광역시	2,364	88	3.7	2,274	96.2	2	.1	
시·군	5,675	224	3.9	5,448	96.0	3	.1	
경제적수준								
상	1,492	63	4.2	1,428	95.7	1	.1	41.978***
중	7,357	265	3.6	7,089	96.4	3	.0	
하	525	40	7.6	483	92.0	2	.4	
무응답	22	4	18.2	18	81.8		.0	

***p<.001, **p<.01, *p<.05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본 경험에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 최근 1년 내 유해업소 술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을 출입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르면 한부모가정(11.5%), 조손가정(7.5%), 양친부모가정(5.8%)의 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에서는 남자(7.8%)가 여자(4.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12.2%)가 확연히 높았으며 그 다음 초등학교(3.2%), 중학교(1.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광역시(8.0%), 시·군(5.8%), 서울(5.3%)의 순으로 유해업소 출입경험을 보이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층이 11.8%로 가장 높으며, 중층(6.2%), 상층(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7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유해업소술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을 출입하였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588	6.3	8,800	93.7	8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483	5.8	7,875	94.1	7	.1	38.745***
한부모가정	687	79	11.5	607	88.4	1	.1	
조손가정	93	7	7.5	86	92.5		.0	
기타가정	198	13	6.6	185	93.4		.0	
무응답	53	6	11.3	47	88.7		.0	
성별								
남자	5,046	396	7.8	4,645	92.1	5	.1	47.263***
여자	4,350	192	4.4	4,155	95.5	3	.1	
학교급								
초등학교	2,959	96	3.2	2,860	96.7	3	.1	358.500***
중학교	2,830	52	1.8	2,777	98.1	1	.0	
고등학교	3,607	440	12.2	3,163	87.7	4	.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72	5.3	1,283	94.5	2	.1	17.718**
광역시	2,364	188	8.0	2,173	91.9	3	.1	
시·군	5,675	328	5.8	5,344	94.2	3	.1	
경제적수준								
상	1,492	67	4.5	1,422	95.3	3	.2	46.602***
중	7,357	459	6.2	6,895	93.7	3	.0	
하	525	62	11.8	461	87.8	2	.4	
무응답	22		.0	22	100.0		.0	

***p<.001, **p<.01, *p<.05

범죄행위 경험 여부 중,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성별과 학교급,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가족유형과 학교소재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자는 1.2%, 여자는 0.3%로 남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더 많았고,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1.1%)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0.6%의 동일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층(1.5%)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 하층(1.1%)과 중층(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9 범죄행위 경험 여부 -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73	.8	9,313	99.1	10	.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63	.8	8,294	99.2	8	.1	5.609
한부모가정	687	7	1.0	679	98.8	1	.1	
조손가정	93		.0	93	100.0		.0	
기타가정	198	2	1.0	195	98.5	1	.5	
무응답	53	1	1.9	52	98.1		.0	
성별								
남자	5,046	59	1.2	4,979	98.7	8	.2	24.591***
여자	4,350	14	.3	4,334	99.6	2	.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34	1.1	2,920	98.7	5	.2	11.355*
중학교	2,830	18	.6	2,808	99.2	4	.1	
고등학교	3,607	21	.6	3,585	99.4	1	.0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3	1.0	1,344	99.0		.0	3.022
광역시	2,364	17	.7	2,343	99.1	4	.2	
시·군	5,675	43	.8	5,626	99.1	6	.1	
경제적수준								
상	1,492	23	1.5	1,463	98.1	6	.4	31.169***
중	7,357	44	.6	7,310	99.4	3	.0	
하	525	6	1.1	518	98.7	1	.2	
무응답	22		.0	22	100.0		.0	

*** $p < .001$, ** $p < .01$, * $p < .05$

6) 가족유형에 따른 여가생활 실태

(1) 하루일과

학교 수업 시간 이외의 활동 시간에 관한 조사의 모든 영역에서 수면시간은 7시간6분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 1시간 28분, 가족과의 대화시간 56.4분, 운동 등 바깥활동 시간 1시간9분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비교에서는 양친부모가정의 경우 집에서 공부하는시간과 학원에 있는 시간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TV 시청시간과 인터넷사용시간이 다른 가족유형보다 높았다. 조손가정의 경우는 운동 등 바깥활동 시간이 높다.

표 IV-80 학교 수업 시간 이외의 활동 시간

	사례수	수면시간	TV 시청시간	인터넷 사용 시간	집에서 공부시간 주중	가족과 대화 시간	학원에 있는 시간	운동 등 바깥활동 시간	기타 시간
전체	9,396	424.4	84.4	77.1	94.2	56.4	103.5	69.2	120.8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425.3	82.7	74.9	96.8	56.7	106.7	67.5	118.6
한부모가정	687	415.5	101.4	103.0	64.7	51.0	67.7	81.7	140.4
조손가정	93	415.0	96.7	85.5	72.5	55.4	104.0	90.6	177.6
기타가정	198	423.2	91.2	76.9	94.4	64.7	98.1	77.4	116.4
무응답	53	421.1	99.9	74.8	115.6	54.1	86.4	107.0	124.4
성별									
남자	5,046	426.4	80.2	83.2	89.6	51.1	102.3	79.8	120.6
여자	4,350	422.1	89.3	70.0	99.6	62.6	104.9	56.9	121.0
학교급									
초등학교	2,959	490.0	91.3	60.8	108.4	68.1	143.8	78.0	99.2
중학교	2,830	432.9	95.0	88.2	95.2	57.0	128.2	65.8	126.5
고등학교	3,607	365.8	70.9	81.5	82.3	46.8	52.5	64.7	133.6
학교소재지									
서울	1,357	425.3	92.8	87.6	123.8	67.7	132.5	76.2	104.0
광역시	2,364	418.4	78.5	74.0	87.3	50.2	98.5	67.1	132.3
시·군	5,675	426.7	85.0	75.9	90.3	56.4	98.8	68.4	119.9
경제적수준									
상	1,492	457.2	77.1	64.1	115.9	64.7	142.4	74.1	98.8
중	7,357	420.6	85.5	78.2	91.5	55.4	98.9	68.2	123.5
하	525	388.8	90.4	96.7	73.7	48.4	59.4	69.6	143.7
무응답	22	374.8	89.0	76.0	81.5	50.5	127.0	76.3	106.0

***p<.001, **p<.01, *p<.05

(2) 여가생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의 분석결과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아동·청소년들은 취미활동도 하는 편이고, 여가생활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이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면에 있어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만 이용하는 편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편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양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IV-81 가족유형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

		N	M(SD)	F	P	Tukey
1) 취미활동은 자주하는 편이다	양친부모가정	8135	3.01(.83)	.845	.496	.
	한부모가정	672	2.96(.87)			
	조손가정	89	2.94(.90)			
	기타가정	187	3.05(.80)			
	무응답	50	3.06(1.24)			
	합계	9133	3.01(.84)			
2)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양친부모가정 ^a	8155	2.56(.93)	5.198	.000	a>b
	한부모가정 ^b	666	2.40(.93)			
	조손가정 ^c	88	2.42(1.24)			
	기타가정 ^d	188	2.58(.94)			
	무응답 ^e	49	2.57(1.24)			
	합계	9146	2.55(.94)			
3)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양친부모가정	8104	3.00(.96)	1.938	.101	.
	한부모가정	666	2.93(.96)			
	조손가정	88	3.00(1.21)			
	기타가정	185	3.12(1.07)			
	무응답	48	2.81(.84)			
	합계	9091	2.99(.97)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중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는 조사의 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친부모가정(75.0%), 한부모가정(71.5%), 조손가정(69.9%)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남자(78.7%)가 여자(7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4.6%)가 중학교(76.4%)에 비해 높았으며 고등학교(65.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의 경우, 상층(83.1%)의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층(73.8%)과 하층(6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82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429	25.9	4,593	48.9	1,722	18.3	367	3.9	285	3.0	
가족유형												36.353*
양친부모가정	8,365	2,165	25.9	4,111	49.1	1,523	18.2	317	3.8	249	2.9	
한부모가정	687	171	24.9	320	46.6	151	22.0	28	4.1	17	2.5	
조손가정	93	26	28.0	39	41.9	17	18.3	7	7.5	4	4.3	
기타가정	198	54	27.3	98	49.5	25	12.6	10	5.1	11	5.6	
무응답	53	13	24.5	25	47.2	6	11.3	5	9.4	4	7.6	
성별												170.633***
남자	5,046	1,536	30.4	2,435	48.3	750	14.9	186	3.7	139	2.7	
여자	4,350	893	20.5	2,158	49.6	972	22.3	181	4.2	146	3.3	
학교급												566.777***
초등학교	2,959	1,099	37.1	1,407	47.5	282	9.5	81	2.7	90	3.1	
중학교	2,830	730	25.8	1,431	50.6	496	17.5	82	2.9	91	3.2	
고등학교	3,607	600	16.6	1,755	48.7	944	26.2	204	5.7	104	2.9	
학교소재지												9.194
서울	1,357	357	26.3	672	49.5	235	17.3	47	3.5	46	3.4	
광역시·시·군	5,675	1,457	25.7	2,785	49.1	1,035	18.2	219	3.9	179	3.2	
경제적수준												252.963***
상	1,492	596	39.9	644	43.2	153	10.3	55	3.7	44	2.9	
중	7,357	1,704	23.2	3,719	50.6	1,440	19.6	272	3.7	222	3.0	
하	525	122	23.2	225	42.9	123	23.4	39	7.4	16	3.1	
무응답	22	7	31.8	5	22.7	6	27.3	1	4.5	3	13.6	

***p<.001, **p<.01, *p<.05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중에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라는 조사의 결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친부모가정(51.1%)이 가장 높았고 기타가정(50.0%)이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정(42.0%), 조손가정(40.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중 여자(53.3%)가 남자(47.7%)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긍정적 응답이 초등학교(64.0%), 중학교(46.5%), 고등학교(4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62.2%)이 중층(48.7%), 하층(38.7%)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V-83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전체	9,396	1,094	11.6	3,631	38.6	3,331	35.5	1,055	11.2	285	3.1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995	11.9	3,281	39.2	2,939	35.1	910	10.9	240	2.9	54.586***
한부모가정	687	62	9.0	227	33.0	274	39.9	101	14.7	23	3.4	
조손가정	93	12	12.9	26	28.0	29	31.2	20	21.5	6	6.5	
기타가정	198	21	10.6	78	39.4	70	35.4	18	9.1	11	5.6	
무응답	53	4	7.5	19	35.8	19	35.8	6	11.3	5	9.4	
성별												
남자	5,046	542	10.7	1,866	37.0	1,812	35.9	653	12.9	173	3.4	53.127***
여자	4,350	552	12.7	1,765	40.6	1,519	34.9	402	9.2	112	2.6	
학교급												
초등학교	2,959	533	18.0	1,360	46.0	774	26.2	178	6.0	114	3.8	466.109***
중학교	2,830	278	9.8	1,039	36.7	1,093	38.6	328	11.6	92	3.2	
고등학교	3,607	283	7.8	1,232	34.2	1,464	40.6	549	15.2	79	2.2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81	13.3	520	38.3	487	35.9	120	8.8	49	3.6	28.267**
광역시	2,364	261	11.0	878	37.1	859	36.3	306	12.9	60	2.6	
시·군	5,675	652	11.5	2,233	39.3	1,985	35.0	629	11.1	176	3.1	
경제적수준												
상	1,492	283	19.0	644	43.2	402	26.9	124	8.3	39	2.6	183.250***
중	7,357	758	10.3	2,824	38.4	2,714	36.9	835	11.3	226	3.1	
하	525	46	8.8	157	29.9	210	40.0	93	17.7	19	3.6	
무응답	22	7	31.8	6	27.3	5	22.7	3	13.6	1	4.5	

***p<.001, **p<.01, *p<.05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중,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부모가정(73.3%), 한부모가정(70.3%) 순이었으며, 조손가정(68.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76.0%)가 여자(69.5%)보다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6.3%)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75.1%), 고등학교(6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81.6%)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층(72.5%), 하층(56.3%) 순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나타났다.

표 IV-84 취미 및 여가에 대한 태도 -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2,490	26.5	4,371	46.5	1,516	16.1	664	7.1	355	3.7	
가족유형												49.557***
양친부모가정	8,365	2,239	26.8	3,886	46.5	1,354	16.2	582	7.0	304	3.6	
한부모가정	687	169	24.6	314	45.7	127	18.5	53	7.7	24	3.5	
조손가정	93	30	32.3	34	36.6	10	10.8	13	14.0	6	6.5	
기타가정	198	44	22.2	109	55.1	18	9.1	11	5.6	16	8.1	
무응답	53	8	15.1	28	52.8	7	13.2	5	9.4	5	9.4	
성별												134.646***
남자	5,046	1,546	30.6	2,293	45.4	681	13.5	337	6.7	189	3.8	
여자	4,350	944	21.7	2,078	47.8	835	19.2	327	7.5	166	3.8	
학교급												1180.808***
초등학교	2,959	1,348	45.6	1,204	40.7	195	6.6	93	3.1	119	4.0	
중학교	2,830	663	23.4	1,464	51.7	430	15.2	171	6.0	102	3.6	
고등학교	3,607	479	13.3	1,703	47.2	891	24.7	400	11.1	134	3.8	
학교소재지												10.344
서울	1,357	358	26.4	656	48.3	201	14.8	83	6.1	59	4.4	
광역시 시·군	2,364 5,675	632 1,500	26.7 26.4	1,084 2,631	45.9 46.4	390 925	16.5 16.3	175 406	7.4 7.2	83 213	3.5 3.8	
경제적수준												453.263***
상	1,492	683	45.8	534	35.8	143	9.6	82	5.5	50	3.3	
중	7,357	1,709	23.2	3,625	49.3	1,253	17.0	490	6.7	280	3.8	
하	525	91	17.3	205	39.0	116	22.1	88	16.8	25	4.8	
무응답	22	7	31.8	7	31.8	4	18.2	4	18.2		.0	

***p<.001, **p<.01, *p<.05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에 관한 조사에서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영역에서 ‘친구’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나 학교급에서 중학교(36.7%)와 가족유형에서 한부모가정(37.0%)만이 ‘컴퓨터’에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이 친구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시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 다른 가족유형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5 여가 시간 보내는 방법

	사례수	친구		가족		컴퓨터		게임기(닌텐도, X-BOX 등)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3,557	37.9	1,511	16.1	2,901	30.9	309	3.3	1,008	10.7	110	1.2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3,157	37.7	1,382	16.5	2,569	30.7	266	3.2	897	10.7	94	1.1	48.169***
한부모가정	687	249	36.2	83	12.1	254	37.0	24	3.5	67	9.8	10	1.5	
조손가정	93	34	36.6	12	12.9	24	25.8	7	7.5	14	15.1	2	2.2	
기타가정	198	89	44.9	31	15.7	41	20.7	11	5.6	23	11.6	3	1.5	
무응답	53	28	52.8	3	5.7	13	24.5	1	1.9	7	13.2	1	1.9	
성별														
남자	5,046	1,896	37.6	568	11.3	1,820	36.1	241	4.8	475	9.4	46	.9	350.353***
여자	4,350	1,661	38.2	943	21.7	1,081	24.9	68	1.6	533	12.3	64	1.5	
학교급														
초등학교	2,959	1,004	33.9	872	29.5	548	18.5	181	6.1	315	10.6	39	1.3	886.087***
중학교	2,830	997	35.2	351	12.4	1,040	36.7	89	3.1	321	11.3	32	1.1	
고등학교	3,607	1,556	43.1	288	8.0	1,313	36.4	39	1.1	372	10.3	39	1.1	
학교소재지														
서울	1,357	522	38.5	221	16.3	409	30.1	46	3.4	147	10.8	12	.9	8.922
광역시	2,364	918	38.8	349	14.8	747	31.6	66	2.8	254	10.7	30	1.3	
시·군	5,675	2,117	37.3	941	16.6	1,745	30.7	197	3.5	607	10.7	68	1.2	
경제적수준														
상	1,492	523	35.1	409	27.4	337	22.6	70	4.7	142	9.5	11	.7	222.261***
중	7,357	2,817	38.3	1,055	14.3	2,359	32.1	227	3.1	805	10.9	94	1.3	
하	525	207	39.4	46	8.8	198	37.7	10	1.9	59	11.2	5	1.0	
무응답	22	10	45.5	1	4.5	7	31.8	2	9.1	2	9.1	2	.0	

***p<.001, **p<.01, *p<.05

(3) 정보화 생활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정보화 기기 이용 빈도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와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IV-86〉 참조).

일주일 컴퓨터 이용 빈도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양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컴퓨터 보유여부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학교소재지를 제외한 가족유형, 성별, 학교급,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유형의 경우, 양친부모가정(97.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타가정(97.5%), 조손가정(96.8%)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부모가정(95.8%)의 컴퓨터 보유여부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자(98.3%)가 남자(97.1%)에 비해 컴퓨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98.3%), 고등학교(97.6%), 초등학교(97.1%)의 순으로 컴퓨터를 보유하는 비율이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르면 중층(97.9%)과 상층(97.5%)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하층(94.9%)이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다.

표 IV-87 **컴퓨터 보유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9,175	97.6	157	1.7	64	.7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186	97.9	123	1.5	56	.7	31.385***
한부모가정	687	658	95.8	25	3.6	4	.6	
조손가정	93	90	96.8	2	2.2	1	1.1	
기타가정	198	193	97.5	3	1.5	2	1.0	
무응답	53	48	90.6	4	7.5	1	1.9	
성별								
남자	5,046	4,900	97.1	106	2.1	40	.8	14.366**
여자	4,350	4,275	98.3	51	1.2	24	.6	
학교급								
초등학교	2,959	2,872	97.1	41	1.4	46	1.6	57.211***
중학교	2,830	2,783	98.3	38	1.3	9	.3	
고등학교	3,607	3,520	97.6	78	2.2	9	.2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331	98.1	21	1.5	5	.4	4.284
광역시	2,364	2,313	97.8	38	1.6	13	.5	
시·군	5,675	5,531	97.5	98	1.7	46	.8	
경제적수준								
상	1,492	1,454	97.5	26	1.7	12	.8	28.478***
중	7,357	7,202	97.9	109	1.5	46	.6	
하	525	498	94.9	22	4.2	5	1.0	
무응답	22	21	95.5		.0	1	4.5	

*** $p < .001$, ** $p < .01$, * $p < .05$

일주일 기준의 컴퓨터 이용횟수에 관한 조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평균적으로 양친부모가정이 4.2회, 한부모가정이 4.6회, 조손가정이 4.1회, 기타가정이 3.9회로 한부모가정이 비교적 가장 높았다.

성별에서 남자는 4.3회, 여자는 4.1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7회, 중학교가 4.6회, 고등학교가 4.3회로 중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과 광역시가 4.3회, 시·군이 4.2회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이 3.7회, 중층이 4.3회, 하층이 4.5회로 하층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8 컴퓨터 이용횟수 (일주일 기준)

	사례수	평균	F값
전체	9,396	4.2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44	4.2	6.544*
한부모가정	687	4.6	
조손가정	91	4.1	
기타가정	196	3.9	
무응답	53	3.7	
성별			
남자	5,027	4.3	31.077*
여자	4,344	4.1	
학교급			
초등학교	2,949	3.7	125.772*
중학교	2,825	4.6	
고등학교	3,597	4.3	
학교소재지			
서울	1,355	4.3	3.446*
광역시	2,357	4.3	
시·군	5,659	4.2	
경제적수준			
상	1,486	3.7	28.391*
중	7,341	4.3	
하	523	4.5	
무응답	21	4.1	

***p<.001, **p<.01, *p<.05

일주일 기준의 인터넷 이용횟수에 관한 조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평균적으로 양친부모가정이 3.9회, 한부모가정이 4.4회, 조손가정이 3.8회, 기타가정이 3.7회로 한부모가정이 비교적 가장 높았다.

성별에서 남자는 4.1회, 여자는 3.8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2회, 중학교가 4.4회, 고등학교가 4.3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이 4.0회, 광역시가 4.1회, 시·군이 3.9회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이 3.4회, 중층이 4.1회, 하층이 4.3회로 하층으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9 인터넷 이용횟수(일주일 기준)

	사례수	평균	F값
전체	9,396	4.0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29	3.9	7.036*
한부모가정	687	4.4	
조손가정	91	3.8	
기타가정	195	3.7	
무응답	52	3.4	
성별			
남자	5,014	4.1	22.802*
여자	4,340	3.8	
학교급			
초등학교	2,944	3.2	238.822*
중학교	2,818	4.4	
고등학교	3,592	4.3	
학교소재지			
서울	1,355	4.0	3.567*
광역시	2,352	4.1	
시·군	5,647	3.9	
경제적수준			
상	1,481	3.4	39.857*
중	7,330	4.1	
하	522	4.3	
무응답	21	4.0	

***p<.001, **p<.01, *p<.05

일주일 기준의 휴대게임기 이용횟수에 관한 조사에서는 성별과 학교소재지에서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가족유형, 학교급, 경제적수준에서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성별에서 남자는

1.3회, 여자는 1.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2회과 광역시가 1.2회, 시·군이 1.3회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IV-90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이용 횟수(일주일 기준)**

	사례수	평균	F값
전체	9,396	1.3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21	1.3	1,341
한부모가정	683	1.2	
조손가정	92	1.4	
기타가정	196	1.3	
무응답	51	0.7	
성별			
남자	5,017	1.3	5.442*
여자	4,326	1.2	
학교급			
초등학교	2,952	1.3	1.605
중학교	2,812	1.3	
고등학교	3,579	1.2	
학교소재지			
서울	1,348	1.2	3.330*
광역시	2,344	1.2	
시·군	5,651	1.3	
경제적수준			
상	1,482	1.3	.678
중	7,320	1.3	
하	520	1.1	
무응답	21	1.3	

***p<.001, **p<.01, *p<.05

휴대전화 보유여부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가정(9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양친부모가정(89.4%), 조손가정(88.2%), 기타가정(8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중 여자(93.2%)에 비해 남자(86.5%)의 비율이 낮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95.2%)가 가장 높고 이어서 중학교(94.0%), 초등학교(78.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소재지의 경우, 광역시(91.5%), 서울(90.4%), 시·군(88.6%)의 순으로 휴대전화 보유여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에 따르면 하층(92.8%)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중층(90.4%), 상층(84.7%) 순으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휴대전화

보유여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1 휴대전화 보유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값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9,396	9,175	97.6	157	1.7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8,365	8,186	97.9	123	1.5	31.385***
한부모가정	687	658	95.8	25	3.6	
조손가정	93	90	96.8	2	2.2	
기타가정	198	193	97.5	3	1.5	
무응답	53	48	90.6	4	7.5	
성별						
남자	5,046	4,900	97.1	106	2.1	14.366**
여자	4,350	4,275	98.3	51	1.2	
학교급						
초등학교	2,959	2,872	97.1	41	1.4	57.211***
중학교	2,830	2,783	98.3	38	1.3	
고등학교	3,607	3,520	97.6	78	2.2	
학교소재지						
서울	1,357	1,331	98.1	21	1.5	4.284
광역시	2,364	2,313	97.8	38	1.6	
시·군	5,675	5,531	97.5	98	1.7	
경제적수준						
상	1,492	1,454	97.5	26	1.7	28.478***
중	7,357	7,202	97.9	109	1.5	
하	525	498	94.9	22	4.2	
무응답	22	21	95.5		.0	

***p<.001, **p<.01, *p<.05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관한 비교결과에서는 가족유형, 학교급, 경제적수준만이 유의미했으며 성별과 학교소재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알아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양친부모가정은 29311.1원, 한부모가정은 36345.3원, 조손가정은 30651.7원, 기타가정은 31530.1원으로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9045.6원, 중학교가 28431.5원, 고등학교가 35881.0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휴대전화 요금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층이 26866.6원, 중층이 30083.8원, 하층이 35136.3원으로 하층으로 갈수록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2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사례수	평균(원)	F값
전체	8,418	29972.5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4,982	29311.1	16.070*
한부모가정	459	36345.3	
조손가정	92	30651.7	
기타가정	196	31530.1	
무응답	51	36471.1	
성별			
남자	2,901	29861.2	.215
여자	2,727	30092.3	
학교급			
초등학교	1,159	19045.6	380.451*
중학교	1,844	28431.5	
고등학교	2,625	35881.0	
학교소재지			
서울	826	29747.0	.233
광역시	1,463	30244.4	
시·군	3,339	29910.3	
경제적수준			
상	742	26866.6	16.143*
중	4,518	30083.8	
하	356	35136.3	
무응답	12	27250.0	

***p<.001, **p<.01, *p<.05

휴대전화 주 사용 용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성별, 학교급, 경제적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가족유형과 학교소재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유의미한 모든 영역에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93 휴대전화 주 사용용도

	사례수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위해		무선 인터넷을 하기 위해		음악을 다운받거나 듣기 위해		게임을 하기 위해		기타		모름/무응답		카이제곱값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사례 수	%	
전체	8,418	7,645	90.8	215	2.6	159	1.9	181	2.2	185	2.2	33	.4	
가족유형														
양친부모가정	7,481	6,804	91.0	193	2.6	139	1.9	159	2.1	157	2.1	29	.4	18.084
한부모가정	643	577	89.7	17	2.6	13	2.0	15	2.3	18	2.8	3	.5	
조손가정	82	71	86.6	3	3.7	2	2.4	4	4.9	2	2.4		.0	
기타가정	166	151	91.0	2	1.2	3	1.8	3	1.8	7	4.2		.0	
무응답	46	42	91.3		.0	2	4.3		.0	1	2.2	1	2.2	
성별														
남자	4,365	3,848	88.2	123	2.8	103	2.4	159	3.6	110	2.5	22	.5	121.290***
여자	4,053	3,797	93.7	92	2.3	56	1.4	22	.5	75	1.9	11	.3	
학교급														
초등학교	2,325	2,161	92.9	22	.9	29	1.2	46	2.0	59	2.5	8	.3	68.887***
중학교	2,659	2,387	89.8	65	2.4	57	2.1	81	3.0	59	2.2	10	.4	
고등학교	3,434	3,097	90.2	128	3.7	73	2.1	54	1.6	67	2.0	15	.4	
학교소재지														
서울	1,227	1,106	90.1	30	2.4	24	2.0	30	2.4	27	2.2	10	.8	12.483
광역시	2,163	1,977	91.4	51	2.4	45	2.1	39	1.8	48	2.2	3	.1	
시·군	5,028	4,562	90.7	134	2.7	90	1.8	112	2.2	110	2.2	20	.4	
경제적수준														
상	1,263	1,152	91.2	24	1.9	18	1.4	34	2.7	29	2.3	6	.5	34.688**
중	6,650	6,057	91.1	175	2.6	120	1.8	131	2.0	142	2.1	25	.4	
하	487	420	86.2	16	3.3	21	4.3	14	2.9	14	2.9	2	.4	
무응답	18	16	88.9		.0		.0	2	11.1		.0		.0	

***p<.001, **p<.01, *p<.05

4. 소결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가정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가정형편 즉 경제적수준이 ‘보통’보다 못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양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 사이에서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달 용돈의 평균은 한부모가정은 49448.5원, 양친부모가정은 34506.5원, 조손가정은 30905.5원, 기타가정은 40964.3원으로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부모가정이 21.1%, 조손가정이 15.1%, 기타가정이 12.6%, 양친부모가정이 9.9%의 응답을 보였고,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월등히 높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손가정도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기는 대다수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주말’에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가정만이 ‘방학 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외의 경제적 도움 경험 여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받은 적 없다’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친척’의 도움을 가장 높은 수치로 응답했으나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서 하층만이 유일하게 ‘국가’(15.8%)의 도움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냈다.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분석결과 먼저 가족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와의 친근함, 부모와의 대화,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 부모와의 다양한 가족활동, 그리고 가정의 화목에 대한 생각의 경우 예측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양친부모가정의 경우가 가족관계에 있어 보다 더 긍정적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양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모두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다만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긍정적인 면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친부모가정과 같은 일반적 가족유형에서 벗어날 경우 자녀들은 어떠한 가족유형에 속하든 동일하게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만족도를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가족형태는 양친부모가정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관계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가족들 간 또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말다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폭력사용 여부나 부모의 폭력행위 경험횟수에 있어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음주와 관련한 항목엔 차이가 드러났다.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가족들의 음주를 더 자주 목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아동·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할 한부모의 경우 직장생활에 몰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유의 깊게 보아야 할 사항은 가출시도경험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경우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와의 접촉이 단절될수록

가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가출이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학교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자녀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서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의 정립여부가 아동·청소년의 가출이나 인간관계에 핵심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 인식 및 문제 경험이 가족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면, 학업중단 생각, 가해(욕설, 폭력, 따돌림) 경험, 피해(폭력, 따돌림) 경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가 다른 가족유형들에 비해 문제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의 경우, 욕설이나 폭력, 그리고 따돌림과 같은 가해경험, 나아가 폭력이나 따돌림같은 피해경험 모두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행위주체가 선생님인가 학생인가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먼저 선생님에 의한 욕설, 폭력(매), 그리고 공개망신 등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교사의 경우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위주체가 학생인 경우, 즉 선생님에 대한 공개적 반항과 선생님에 대한 욕설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족유형의 자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방과 후 학교 활동, 학교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와 조손가정의 자녀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이 불만인 편이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조손가정의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불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마을, 동네)활동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행사에 대한 참여도나 만족도에 있어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었지만 지역사회

회의 주민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는 생각에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조손가정과 양친부모가정의 자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체에 있어서도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지역사회 행사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관계에 있어서 가족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조손가정의 경우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친부모가정과 기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실태결과 약물비행에서는 한부모가정(20.4%)이 음주나 흡연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양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음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흡연의 경우는 조손가정이 높았다. 본드흡입의 경우는 기타가정, 양친부모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순이었으나 각각의 비율이 낮아 유의미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생활비행과 관련하여 범죄행위 경험 여부 역시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조손가정(3.2%)의 경우가 가장 낮았다. 폭력, 갈취, 욕설 등의 반사회적 행위, 특히 가출이나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과 같은 부정적 경험의 통계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흥미로운 점은 거짓말의 경우 조손가정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른 가정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행이나 성범죄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가족유형과 경제적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여가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학교 수업 시간외의 활동 시간에 관한 조사의 모든 영역에서 ‘수면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기타시간’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과 ‘기타시간’을 제외한 활동시간을 알아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유형 중 한부모가정(103.0분)과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적 수준에서 하층(96.7분)만이 ‘인터넷 사용시간’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취미활동과 여가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이며,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이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시간의 경우 한부모가정(37.0%)만이 ‘컴퓨터’에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생활과 관련하여 휴대게임기 이용 빈도를 제외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와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일주일 컴퓨터 이용 빈도를 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컴퓨터보유정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빈도에 있어서도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한 달 평균 휴대폰 사용량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용요금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었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가족유형에 따른 외국의 아동·청소년지원정책 비교 분석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가족유형이 변화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정책 및 제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단 각국의 지원정책을 대상별로 분류하면 양친부모가정 지원정책과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표 V-1〉, 〈표 V-2〉 참조). 물론 현대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양친부모가정 역시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위기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동시에 양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위기가정에도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분리의 당위성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양친부모가정과 위기가정을 따로 분류한 것은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지향점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각 국의 정책을 보면 전자의 경우 특정 가족유형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정자체의 의미와 가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후자는 특정 가족유형의 문제해소에 더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된 특이점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이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지원정책도 그에 상응하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의 지원대책보다는 주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에 근거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12주의 무상휴가가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경우 유급휴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신생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워싱턴주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5주 동안의 양육비가 지급되고 그 외에 육아보조금이나 세금혜택같은 지원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별로 이루어지는 양친부모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 정책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17주의 모성휴직이 주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퀘벡 주의 경우 캐나다에서 유일한 경우지만 부성육아휴직을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대부분의 자치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37주에서 64주까지 보장되는 부모휴직을 통해 자녀양육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완 및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고무적으로 보인다.

양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이 포괄적·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다. 독일의 정책이 특히 유의미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1년 통과된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헌장” 이나 “성공적인 가족” 프로그램 등은 가족과 직업의 합일을 가능케 해주는 긍정적 제도로 여겨진다. 나아가 가족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통과시킨 「가족돌봄시간법」 등도 고무적이다. 독일은 이 외에도 다양하고 세부적인 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자녀·고령화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가족지원책을 시행중에 있다. 즉 기존의 가족분리적인 복지정책이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예방적 가족복지정책이나 다양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고, 대가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의 지급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의 경우는 양친부모가정과 비교하여 보다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혼 증가로 인한 가족유형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여러 프로그램과 더불어 양육권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의 이혼가정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이혼 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모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부모가정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이 있다. 부모들의 노동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필요가정 한시지원제도(TANF)는 모자가정의 취업률 증가, 전반적인 가정수입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한국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취약한 가정의 경제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 노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의 가정 등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가족유형의 변화에 대해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혼 및

별거를 경험하는 부모와 그 자녀를 돕는 법령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를 이혼가정의 부모 및 자녀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의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각 주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지만, 사회부조를 NCBS의 수입으로 간주하여 사회부조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비평을 듣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가족유형의 분류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나 지원보다는 가정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로부터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가족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미래지향적인 책임공동체로서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통해 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해체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도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2011년 “가족 우선”이라는 표어와 함께 발표된 6대 정강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물론 개별적인 지원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취학지원이나 교육지원 등 저소득가정 부모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재취업 여성을 위한 가계에 근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가사영역에서 3년 이상 머물렀던 여성들을 위한 ‘전망 재취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을 위한 교육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의 위기가정 지원정책은 지원정책 자체보다 소위 건전하고 정상적인 가정회복이라는 점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포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한부모가정의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하여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등 자녀양육과 생활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모자가정 자립지원 급여금의 취업지원책, 양육비의 확보책 그리고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등 경제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마더(Mother)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해 모자가정의 취업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자가정의 지원은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양육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의 확보책 그리고 경제적 지원책으로 구체화된다. 나아가 10대 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 양친부모가정과 한부모 등 위기가정에 대한 각 국의 지원책을 분석해보았다. 이제 양친부모가정의 지원대책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이미 지적한 대로 캐나다가 미국의 경우보다 보다 가족친화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책의 범위나 기간을 볼 때 보다 더 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정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정책보다 포괄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섬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나 다양한 아동·청소년지원정책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이 정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하게 소자녀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아동·청소년의 빈곤문제,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지원정책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시도들로 무장한 독일의 지원책에 견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독일의 정책이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생산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정책의 다양성이나 규모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서 목표중심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설립함으로써 가족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의 문제에 대해 잠정적 내지 보완적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근원적인 해결을 지향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독일은 아동·청소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자율성이 조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정책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의 행정체계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행정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6대 정강이 드러내듯 가족을 국가의 중심가치로 본 것이나 ‘직업과 가족의 합일’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점 역시 한국이 수용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가족해체를 막을 가족중심의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Girl's Day’, ‘Boy's Day’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인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 가정보육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한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위한 국고예산의 증액은 논리적 당위를 얻는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각 국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는 가족유형별 대응보다는 포괄적 대응을 선호하는 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그 외 비교 대상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다양한 위기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각 국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미국의 경우 이혼가정 부모교육이 주도적인 반면 캐나다는 그와 더불어 특별히 별거가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지원내용	국가별 지원정책 및 제도
미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 - 무상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워싱턴주: 부모휴직법령(Family Leave Insurance Law)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보조제도(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캐나다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 - 17주간의 모성 휴직 & 국가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제도 - 퀘벡주: 5주간 부성육아휴직(paternity leave) - 주정부 및 연방정부: 37~64주간 부모휴직(parental leave)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부모 15주간 부가적인 금전 지원(family supplement) - 퀘벡주: Québec Parental Insurance Plan(QPIO)
독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육구와 부모경력에 관한 육구의 공동 성취 정책 - 이니셔티브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 프로그램 “성공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 중산층 가족지원 계획 ■ 가족에서의 양성(兩性) 지원 정책 - 가족을 위한 여성정책: 단계적 계획 “지도자 위치에 여성을”, 재취업 여성을 위한 가계에 근접한 서비스 수행, 신뢰가 있는 출산,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전화, 「어머니보호법」, 프로그램 ‘Girl’s Day’ - 가족을 위한 남성정책: 독립적 소년정책과 남성정책, 프로그램 “더 많은 남성을 유치원으로”, 프로그램 “Boy’s Day” - 가족을 위한 양성(兩性) 정책: ‘전망 재취업(Perspektive Wiedereinstieg)’ 프로그램, 프로그램 “Logib-D”, 프로그램 “Equal Pay Day” ■ 가족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로서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공격적인 초기 기회들”, 이니셔티브 “청소년 강화” -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대화 인터넷”, “관용 지원-역량 강화”, 독자적인 청소년정책 -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정책: 성 학대에 대항한 원탁회의, 연방 「아동보호법」, 초기 지원 국가센터, 아동·청소년 보호 행동계획 II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육구와 부모경력에 관한 육구의 공동 성취 정책 - 부모비(Elterngeld) ■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 자녀비(Kindergeld)

국가	지원내용	국가별 지원정책 및 제도
일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관련 정책(자녀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의 설치, 자녀양육 부모자녀의 교류장소의 제공과 교류의 촉진, 자녀양육 등에 관한 상담·원조의 실시, 지역의 자녀양육 관련 정보의 제공, 자녀양육 및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강습 - 모자보건의료대책의 충실: 「건강한 부모자녀 21」의 추진, 아동의 마음 건강지원, 임신부검진 및 출산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와 방과 후 아동대책 등의 충실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등 요보호아동대책 등의 충실 ■ 아동·청년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중퇴자에 대한 지원 - 청년의 직업자립지원 - 취업 지원의 충실 - 은둔형외톨이, 청년무직자, 부등교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 장애가 있는 아동·청년의 지원 - 사회적 양호의 충실 - 요보호아동·청소년주거지원 - 외국인 등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년의 지원 - 왕따 피해, 자살 대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의 지급 ■ 아동·청년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연장아 자립지원의 확충 - 창업, 자립금 지원

표 V-2

외국(미국·캐나다·독일·일본)의 한부모가정 등 위기가정 지원정책

국가	지원내용		국가별 지원정책 및 제도
미국	서비스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isting Children through Transition(ACT) -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 이혼가정 부모역할 조정(Parenting Coordination)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별거가정 자녀 대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ds First - Sandcastles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가정 한시 지원제도(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캐나다	서비스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후 양육 세미나(Parenting After Separation Seminars: PASS) ■ 별거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Focus on Communication in Separation: FOCIS) ■ “자녀를 위해(For the Sake of the Children)”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에서의 책자 제공 ■ 아동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ught in the Middle - Just for Teens ■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s for Children: CAPC)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양육 보조금(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 자녀혜택 국가보조(the National Child Benefits) 	
독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가정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 학교나 유치원 소풍 참여 - 2일 이상의 학급 수학여행 참여 -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장비들 지원 - 취학에의 지원 - 적절한 교육 지원 - 가정의 공동 급식 시 추가 보조비용 지원 -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의 참여 지원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정 교육보조비 	
일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등의 자녀양육·생활지원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에 기반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정 자립지원 급여금의 취업지원책 - 양육비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양육비의 확보책 - 아동부양수당의 지급 등의 경제적 지원책 	

2)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영역은 크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제행동, 여가생활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친부모가정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조사 영역에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행동의 영역 중 거짓말에서 다른 가족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 예외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조손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스스로를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달 용돈의 평균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는 49448.5원, 양친부모가정은 34506.5원, 조손가정은 30905.5원, 기타가정은 40964.3원으로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부모가정이 21.1%, 조손가정이 15.1%, 기타가정이 12.6%, 양친부모가정이 9.9%의 응답을 보였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월등히 높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조손가정도 양친부모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친근함, 부모와의 대화,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 부모와의 다양한 가족활동, 그리고 가정의 화목에 대한 생각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만족스런 가족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양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더 좋은 가족관계를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와 보다 더 잦은 대화를 하고 또 더 친근함을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양친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하여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의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 즉 핵가족화에 따라 조부모가 있는 가족의 자녀들은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가속화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조부모와의 동거 가족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가출시도경험의 경우 한부모가정의 경우가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편모나 편부 혼자서 가정을 꾸려야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홀로 있을 시간이 많아져서, 어떤 형태로든 부모와의 접촉이 단절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출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학교생활의 경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과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반대로 학업중단 생각, 가해(욕설, 폭력, 따돌림) 경험 등 부정적 행위의 빈도는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았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들이 불만인 편이며, 양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조손가정의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불만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행사에 대한 참여도나 만족도,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양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정,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높고 동시에 긍정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수도 낮았으며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수는 높았다. 이상의 경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양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녀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아동·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친부모가정의 경우 맞벌이로 인한 가정문제의 야기를 방지해주는 대책과 이혼이나 별거 또는 가정폭력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정으로 나타났다. 일단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가족의 자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아르바이트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가족관계의 긍정적 측면에서 한부모가정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가출시도도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다른 가족 자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가족내의 삶에 그만큼 불만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먼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불공평한 대우, 친구들과로부터의 관심부재를 느끼는 등 인간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불만족이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높였고,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높았다. 더욱이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반항적 사고나 불만도 높음이 확인되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학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도 양친부모가정보다 떨어졌으며 지역사회 행사 같은 경우 참여도뿐만 아니라 만족도 모두에 있어 양친부모가정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이웃들과의 관계도 가장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유형 가운데 가장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돌보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조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비교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현저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관계에 있어 양친부모가정의 경우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핵가족화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사랑으로부터 유리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손가정 자녀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심각한 이탈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 양친부모가정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더 긍정적인 경우도 확인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도 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폭력, 협박, 갈취, 그리고 욕설 등 반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조손가정 자녀들의 참여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더욱이 폭력이나 갈취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조손가정 자녀들의 비율이 2~3배 정도까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교육에 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주로 양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이용 빈도가 높으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여가시간을 위하여 가장 많이 할애하는 것은 '수면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수면부족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원에 있는 시간'을 손꼽았다. 그러나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학원에 있는 시간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녀들은 컴퓨터보유 정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여가시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할애되고 있었다. 한달 휴대전화이용요금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가정이 아니라 PC방이나 인터넷 플라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휴대전화 과다사용의 위험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여가활용 및 정보화교육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제언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방향

우리나라는 양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활동영역이나 기능별로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나 청소년카드, 통신할인, 문화활동 할인 등이 있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이 제공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양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하여 전반적인 생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양친부모가정에 대한 정책은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정책 및 청소년기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 이니셔티브 '가족을 위한 근로시간' 정책과 '가족 돌봄 시간 정책'을 통하여 부모의 시간을 마련하였고, 'Girl's day'와 'boy's day' 정책을 통하여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며 따라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기업이 월1회 정도 직원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후 이를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상위학교 진학에 부모와 학교가 몰입하고 있어 학생들이 학업이외의 다른 활동에 투여되는 시간 확보가 거의 없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체험활동 시간을 정규시간으로 배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족과 함께하거나 부모이해 프로그램 등이 학교체험 활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입시중심의 교육제도개선과 가족관계중심의 체험활동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이해와 생활지도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도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부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에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제행동에 대한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관용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한 반편견교육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관용성 증진과 관련해서는 독일의 연방프로젝트로 ‘관용 지원-역량 강화’라는 정책이 존재하는데 이는 극단적 행동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와 관용성 강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나 집단폭력,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문화사회로서 시민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미국시민이 되는 이민가족과 자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중 ‘Hispanic Mother-Daughter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히스패닉계 여자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 및 부모상담을 위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제공하는 자아존중감, 갈등 해결, 분노 조절 및 학습 습관 등의 단체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단위의 여가 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12년도부터 주5일수업제가 본격화되면서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시설 등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주5일근무제와 주5일수업제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설을 개편·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주5일근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나홀로 아동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조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지역사회-가정을 연계하여 주말의 경우에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의미한 활동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주말에 청소년 기관·단체 등에 개방을 하여 위탁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한 시설운영, 종사자 처우여건 등을 주말활동에 맞추어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2)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방향

본 연구에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실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생계형 아르바이트 경험, 외부의 경제적 도움 증가, 낮은 가정화목도 등이 지적되었으며, 학교생활에서는 학업중단 생각, 학교 내 폭력사용, 방과 후 학교활동 만족도 저하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으로는 음주와 흡연의 과다, 절도나 폭력 사용, 가출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여가시간 활용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이 높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청소년 지원 방향은 경제적 지원 및 자립지원 정책,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 정책, 학교생활 지도 등이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부모가구는 사별보다는 이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가구가 대부분 모자가구인 점과 경제적 활동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복지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생계·의료·교육 등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구는 12세미만에 대한 월5만원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고 있고, 12년도부터는 중고생에 대한 학용품비,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및 조손가구에 대하여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여 복지급여를 먼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아동의 연령인 18세미만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동이 방치되는 문제, 안전의 문제를 고려하여 통신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지적 급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교육서비스, 부양서비스, 가사서비스, 가족관계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구의 한부모는 양육, 취업, 가사 등의 고통을 함께 수반하면서 가구를 꾸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는 대부분 아동이 나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시간에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부모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한부모가정의 경우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그 외의 기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한부모의 취업시간대에 게임중독 등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체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CYS-Net과 같은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중심 지원체제에서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 지원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 정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정책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여기서 여전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간과하고 있는 재혼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노력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기관에서의 폭넓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TANF(필요가정 한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각 주에 보조금을 부여하여 필요가정에 보조토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일과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정부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을 의무화하고 제한된 기간에만 보조금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근로의무 등이 규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시적, 영구적 혜택을 박탈하도록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양육보조금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해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자녀혜택 국가보조를 통하여 노동 참여를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넷째,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대한 정책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과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모에 의한 가정생활지도라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녀시간이나 모자시간 등 서로 다른 이성의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이해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캐나다는 부모대상 의무 프로그램으로 ‘별거 후 양육세미나(Parenting After Separation Seminars: PASS)’를 통하여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거나 ‘자녀를 위해(For the Sake of the Children)’을 통하여 의사소통 방법과 감정 및 분노 조절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는 9~12세 아동들이 가족법을 이해하고 부모의 별거에 대한 감정이 정상적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무부 프로그램이나 서적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모자상담원을 배치하여 한부모들이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상담해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한부모 모임 등을 만들어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폭력·흡연·음주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 문화활동, 정서함양,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가족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며,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학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방향

조손가구는 과거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생기는 육아와 양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였다면, 요즘의 추세는 가정해체로 인해 조부모에게 아동·청소년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손가구를 비정상적 또는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가구유형으로 보기보다는 일상적 가구 유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손가구는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가구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실태를 보면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생계형 아르바이트 경험, 외부의 경제적 도움 증가 등 한부모가정과 유사하게 지적되었으나 조손가정의 경우는 장기치료환자에 대한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에서는 무단결석, 학업중단 생각이 높고, 문제행동으로는 폭력피해 경험이나 집단 따돌림 피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 방향은 가족생활에서는 양육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학교생활 및 문제행동 부분에서는 세대 간 차이에 의한 손자녀 이해한계 등 돌봄 문제 해결과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담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조손가구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체계내에서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며, 조부모의 학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학습지원, 건강악화를 감안한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노인, 아동·청소년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접근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 학습증진, 조부모 가사 돌봄 서비스,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을 ‘11년도에는 4개시도에 시범운영하고, ’12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조손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조손가정은 기본적으로 노인과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이며, 양육자인 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이해연(2009) 연구에 따르면 조손가정의 절반이상이 6개월 이상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20%는 보다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등 경제적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상담이나 방문진료 등 정기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및 간병인 파견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심각한 질병이 있는 조손가정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부모들과 손자녀들간의 세대 간 차이로 인한 양육문제로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생활지도 역량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학교에서의 문제는 학교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비롯됨을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증명하였다. 따라서 조손가정의 양육자인 조부모에게 양육 방법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대표적으로 대리위탁 시행과 대부·대모 제도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 지원방법 등이 있다.

최근 독일은 가족의 노인지원정책은 가족결속을 강화하여 가족 구성세대간에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돌봄 시간법'을 2011년 3월에 제정하였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경찰청(2010).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2010). 가출청소년 신고 현황.
- 구인회(2003).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 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pp. 82-112.
- 권정순·박인숙(2001). 부자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부재경험. 아동간호학회지, 제8권 제1호, pp. 86-96.
- 김서영·안다영(2010). 가구 면접조사에서 무응답률과 무응답 편향 : 지역별고용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통계개발원.
- 김승권 외(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2002). 아동기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적 요인인가 또는 가족유형인가?.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1권 제4호, pp. 357-365.
- 김오남(2004).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모자녀 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507-520.
- 김희자(2008).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유형. 경제와 사회, 제78호.
-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제2호, pp. 7-37.
- 대검찰청(2010). 2010 소년, 학생범죄분석.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 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제2호, pp. 73-107.
- 민미희·이순형·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11호, pp. 109-125.

- 민하영·이윤주·김경화(2008). 여성 한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pp. 15-23.
- 박미자·이창식(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제1호, pp. 93-114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09).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 (201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자료*.
- 염동훈·김혜영·안치민(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5).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제10호, pp. 91-102.
- 이애재(2000). *편부모가족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관·송진숙(2007). 가족체계와 여가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여가 만족도: 대전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4호, pp. 723-732.
- 이종원·박창남(2004).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오승근·김은정(2010).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Ⅲ: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의식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한·강민완(2010). 결손가정의 기능적 특성과 적응유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pp. 175-200.
-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정소희(2006). 가족유형,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0권, pp. 185-213.
- 조성연(2003).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33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부모 가족: 실태, 문제, 가정관리전략*, pp. 33-56.
- 진미정(2008).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0권 제3호, pp. 187-211.
-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1). 2010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함은희(2002). 한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제14권 제3호.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동복지학*, 제17권, pp. 151-177
- Adolino, J. R. & Blake, C. H.(2011). *Comparing public policies: Issues and choic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Washington, D.C: CQ Press.
- Bianchi, S. M.(2011). Changing families, changing workplaces. *The Future Of Children*, Vol. 21 No. 2, pp. 15-36.
- Bandy, T. & Moore, K. A.(2008).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 family strength*, 2008 Child Trends Fact Sheet. USA. Retrieved from <http://www.childtrends.org>.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Attorney General(2003). *Children's programs on divorce and separation: Report*. (<http://www.ag.gov.bc.ca/justice-services/publications/fjsd/children/DivorceSeparationPrograms.pdf>)
- Bureau of Labor Statistics(2008-9). *Economic news release—able 5: Employment status of the population by sex, Marital status and presence and age of own children under 18*. 2008-9 Annual Averages. (www.bls.gov/news.release/famee.t05.htm)
- Cherlin, A.(2009). *The marriage-go-round*. New York: Vintage Books, pp. 19.
- Christiansen, S. L. & Palkovitz, R.(2001). Why the 'good provider' role still matters: providing as a form of paternal involv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22, pp. 84-106.
- ÇİVİTÇİ, M., ÇİVİTÇİ, A., & FİYAKALI, N. C.(2009).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with Divorced and Non-Divorced Paren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Vol. 9 No. 2, pp. 513-525.
- Cotter, D. A., Hermsen, J. A. & Vanneman, R.(2004). *Gender inequality at work*, in *The american people census 2000 ser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an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Duncan, G. J. & Brooks-Gun, J.(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Vol. 7 No. 2*, pp. 51-71.
- Pink, D. 김명철 역(2005).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사.
- Dawson, D.(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3*, pp. 573-584.
- DeLeire, T. & Kalil, A.(2002). Good things come in threes: Single-parent multi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adjustment. *Demography, Vol. 39 No. 2*, pp. 393-413.
- Demuth, S & Brown, S. L.(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41 No. 1*, pp. 58-81.
- Dye, J. L.(2008). *Fertility of American Women 2006*.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U.S. Census Bureau. pp. 20-558.
- Flewelling, R. L. & Bauman, K. E.(1990). Family structure as a predictor of initial substance use and sexual intercours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2 No. 1*, pp. 171-181.
- Hamplová, D. & Bourdais, C.(2010). Visible minorities and 'white'-'non-white' conjugal unions in Canadian large cit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3 NO. 9*, pp. 1537-1560.
- Hoffmann, J. P. & Johnson, R. A.(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0 No. 3*, pp. 633-645.
- Hoynes, H.(2007).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welfare reform, and the employment of low-skilled single mothers*. Paper presentation for Chicago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conference on "Strategies for improving economic mobility of workers."
- Jekielek, S. M.(1998). Parental conflict, marital disruption and children's

- emotional well-being. *Social Forces*, Vol. 76 No. 3, pp. 905-936.
- Kandal, W. A.(2011). *The U.S. foreign-born population: Trends and selected characteristic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Kreider, R. M. & Elliott, D. R.(2009). *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s 2007*.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U.S. Census Bureau, pp. 20-561.
- Lovell, V.(2004). *Incomplete development of state and voluntary temporary disability insurance. Strengthening the community: Social insurance in a diverse America*.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pp. 158-169.
- Luxton, M.(2011). *Changing families*. New understandings. York University.
- Lyotard, J. P. 유정완 · 이삼출 · 민승기 역(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 민음사.
- McLanahan,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http://www.vifamily.ca/media/node/876/attachments/06-29-2011_VIF_CFT_changingfamilies_ENG.pdf)
- Moore, K. A., Guzman, D. L., Hair, E., Lippman, L. & Garrett, S.(2004). *Parent-teen relationship and interactions: far more positive than not*. 2004 Child Trends Research Brief, USA. Retrieved From <http://www.childtrends.org>.
- Norusis, M. J.(1990). *SPSS base system user's guide*. Chicago, IL: SPSS Inc.
- Pollet, S. & Lombreglia, M.(2008). A national survey of mandatory parent education. *Family Court Review*, Vol. 46 No.2, pp. 375-394.
- Pollet, S.(2009). A national survey of programs for children of divorcing and separating parents. *Family Court Review*, Vol. 47 No. 3, pp. 523-543.
- Ray, R.(2008). *A Detailed look at parental leave policies in 21 OECD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Washington, D.C.
- Salem, D. A., Zimmerman, M. A. & Nataro, P. C.(1998). Effects of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father involvement on psychosocial outcomes among

-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Vol. 47 No. 4, pp. 331-341.
- Sayer, L. C., Cohen, P. N. & Casper, L. M.(2004). *Women, men, and work, in the american people census 2000 ser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an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Schroeder, R. D., Osgood, A. K. & Oghia, M. J.(2010). Family Transi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Inquiry*, Vol. 80 No. 4, pp. 579-604.
- Sieppert, J. D., Lybarger, D. S., Bertrand, L. D., & Hornick, J. P.(1999). An evaluation of Alberta's parenting after separation seminars. (<http://people.ucalgary.ca/~crilf/publications/pass-final-report.doc>Edmonton, AB: Alberta Children's Services)
- Toffler, A. 김중웅 역(2006). *부의 미래*, 청림출판.
- Thomson, E., Hanson, T. L. & McLanahan, S. S.(1994). Family structure and child well-being: Economic resources vs parental behaviors. *Social Forces*, Vol. 73 No. 1, pp. 221-242.
- Urban Institute(2006). *Children of immigrants: Facts and figures*. (http://www.urban.org/uploadedpdf/900955_children_of_immigrants.pdf)
- (2006, May). *Children of immigrants: Facts and figur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 Vandewater, E. A & Lansford, J. E.(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Vol. 47 No. 4, pp. 323-330.
- Williams, J. C. & Boushey, H.(2010). *The three faces of work-family conflict: The poor, the professionals, and the missing middle*. Washington: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西館有沙徳田克己・高玉和子編著(2009). *子ども支援學*. 文化書房博文社.
- 古川孝順、田澤あけみ(2008). *現代の児童福祉*. 有斐閣ブックス.
- 千葉茂明(2007). *エッセンシャル児童福祉論*. みらい.
- 小杉礼子編(2005). 『フリータとニート』, 勁草書房.
- 穴澤義晴(2006). *若年者の職業的自立支援という取り組み札幌市勤労青少年ホームの可*

- 能性 『社會教育研究』第24号, 北海道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 社會教育研究室.
 內閣府(2011). 2011년도 子ども·若者白書.
 內閣府(2010). 2010년도 少子化社會白書.
 內閣府(2010). 青年意識に關する調査(ひきこもりに關する實態調査)
 厚生勞動省(2011). 2011년도 厚生勞動白.
 文部科學省(2009). 2009年 兒童生徒の問題行動等生徒指導上の諸問題に關する調査.
 總務省統計局(2010). 「勞動力調査(詳細集計)」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1). Familie
 Zuerst! Deutschland auf dem Weg zur familienfreundlichen Gesellschaft.
 Berlin: trigger medien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1).
 Mutterschutzgesetz. Leitfaden zum Mutterschutz. Aschaffenburg: Druckhaus
 MainEcho GmbH & Co. K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 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Berlin: Druck Vogt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Vorteil
 Familie. Weil Gemeinschaft Chancen schafft. Berlin: Druck Vogt GmbH.
<http://www.justice.gc.ca/eng/pi/fcy-fea/abo-apr/index.html> (2011.10.17)
<http://www.justice.gov.sk.ca/parental-education> (2011.10.16)
<http://www.albertacourts.ab.ca/go/CourtServices/FamilyJusticeServices/CoursesSeminarsforParentsandFamilies/tabid/126/Default.aspx> (2011.9.30)
http://www.gov.mb.ca/fs/childfam/for_sake_of_children.html#top
 (2011.10.11)
<http://www.justice.gc.ca/eng/pi/fcy-fea/lib-bib/pub/cal/2011/index.html>
 (2011.9.22)
http://www.gov.mb.ca/fs/childfam/caught_in_the_middle.html (2011.9.19)
<http://www.statcan.gc.ca/survey-enquete/household-menages/3889i-eng.htm>
 (2011.9.23)
http://www.cra-arc.gc.ca/bnfts/cctb/fq_qlfyng-eng.html (2011.9.30)

- <http://www.phac-aspc.gc.ca/hp-ps/dca-dea/prog-ini/capc-pace/index-eng.php> (2011.9.27)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evaluation/isap/intro.asp#s2> (2011.10.4)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guide/section-04.asp> (2011.10.4)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welcome/wel-03e.asp> (2011.10.4)
- <http://www.ciwa-online.com/Services/employment.html> (2011.10.18)
- <http://swisontario.ca/2/About-Us> (2011.10.20)
- <http://www.tdsb.on.ca/> (2011.10.20)
- <http://de.wikipedia.org/wiki/Kindergeld>(2011.10)
- <http://www.mhlw.go.jp/general/seido/josei/kyufukin/bo2-2.html>
- <http://www.beauftragte-missbrauch.de>
- <http://www.bmfsfj.de>
- <http://www.dialog-internet.de>
- <http://www.erfolgsfaktor-familie.de>
- <http://www.fruehe-hilfen.de>
- <http://www.logib-d.de>
- <http://www.mehrgenerationenhaeuser.de>
- <http://www.perspektive-wiedereinstieg.de>
- <http://www.rundertisch-kindessmissbrauch.de>



부
부

부 록

◎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유형별 아동·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담당자 : 성운숙 연구위원(2188-8823)

김영한 선임연구위원(2188-8845)

조사기관 ID						
조사 일시	2011년 ___월 ___일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 다음은 학생의 경제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원)

문 2. 학생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 2-1」로 가세요
 ② 없음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학생은 주로 언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거의 매일 ② 주말 ③ 방학 때
 ④ 일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문 2-2. 학생이 최근 1년간 경험한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가장 오랜 시간동안 한 아르바이트를 아래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 ① 패스트푸드점 ② 신문,잡지배달 ③ 팜플렛,스티커 배달
 ④ 편의점, 주유소 ⑤ PC방 종업원 ⑥ 물건판매
 ⑦ 기타

문 3. 귀하는 부모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까?

- ① 받은 적 없다 ② 형제나 남매 ③ 친척
 ④ 이웃 등 지역에서 아는 사람 ⑤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⑥ 국가 ⑦ 기타

※ 다음은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가족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4.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부모와 매우 친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와의 자주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님과 운동, 여행, 영화감상 등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집은 매우 화목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학생은 가출하려고 마음먹거나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 ① 시도한 적이 있음 ② 시도한 적 없음

문 6. 학생은 학생의 가족들이 술을 마신 모습(예: 술을 마셔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취한 모습 등)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⑥ 한번도 본 적 없음

문 7. 학생은 학생의 가족들이 가족끼리 또는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⑥ 한번도 본 적 없음

문 8. 학생의 부모님들은 학생 및 학생의 형제/자매들에게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폭력을 사용하나요?

- ① 폭력을 사용함 ➔ 「문 8-1」로 가세요
② 폭력을 사용하지 않음 ➔ 「문 9」로 가세요

문 8-1.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주 폭력을 사용하시나요?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1회
④ 월 2-3회 ⑤ 월 1회 이하

문 9. 학생의 가족 중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몸이 아파 돌봐주어야 하는 가족이 있나요?

- ① 있음 ② 없음

※ 다음은 귀하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0. 다음 항목을 읽고, 각 항목마다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교 친구들이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학교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담임선생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에게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한 질문 사항입니다.

문 11. 다음 항목을 읽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각각 골라주세요.

	전혀 하지 않음	별로 하지 않음	약간 하는 편임	매우 자주 함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 이유없이 무단 결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구들과 대화 시 욕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들과 함께 특정한 다른 친구를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내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친구들은 내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를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손이나 매 등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욕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은 수업하실 때 잘못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선생님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께서 하고 있는 학교 활동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문 12.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는 학교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방과 후 학교 활동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방과 후 학교 활동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교과 외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 활동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3.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나의 지역사회(마을, 동네)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도움을 잘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지역사회(마을, 동네)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 귀하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매일 ② 주2-3회 ③ 주말
④ 월2-3회 ⑤ 월 1회 이하

문 15. 귀하께서 동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가장 자주만나는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주변 ② 학교나 공원 ③ 학원
④ PC방 ⑤ 기타

문 16. 귀하의 집과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다음은 학생의 일상생활 속 경험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7. 귀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1개월 내 술을 마신적은	①	②
2) 1개월 내 담배를 피운 적은	①	②
3) 1개월 내 본드를 흡입한 적은	①	②

문 18. 귀하는 생활 속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최근 1년 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	①	②
2) 최근 1년 내 후배나 친구 등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	①	②
3) 최근 1년 내 친구나 후배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았다.	①	②
4) 최근 1주일 내에 욕설을 사용하였다.	①	②
5) 최근 1주일 내에 부모,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①	②
6) 최근 1년 내 집을 나간(가출) 적이 있다.	①	②
7) 최근 1년 내 성인물(야동, 성인사이트, 성인게임, 성인잡지 등)을 보았다.	①	②
8) 최근 1년 내 유해업소(술집, 소주방, 호프집, 성인게임방, 성인바 등)를 출입하였다.	①	②
9) 최근 1년 내 성추행(강제로 이성의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	①	②
10) 최근 1년 내 성폭력을 당했다.	①	②

※ 다음은 학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입니다

문 19. 학생은 주중 하루동안, 아침 등교 전 혹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은 일은 얼마나 많이하나요? 아래의 각 내용에 대해 하루 평균 얼마나 하는지를 적어주세요.(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입해 주세요)

* 예를 들어 하루에 딱 6시간만 잔다고 하면 6 시간 0 분으로 기입해 주세요.

* 전혀 하지 않는다면 0 시간 0 분으로 기입해 주세요.)

- | | | | |
|----------------------|---|----|----|
| 1) 하루 중 수면 시간 | (| 시간 | 분) |
| 2) 하루 중 TV시청 시간 | (| 시간 | 분) |
| 3) 하루 중 인터넷 사용 시간 | (| 시간 | 분) |
| 4) 하루 중 집에서 공부시간(주중) | (| 시간 | 분) |
| 5) 하루 중 가족과 대화 시간 | (| 시간 | 분) |
| 6) 하루 중 학원에 있는 시간 | (| 시간 | 분) |
| 7) 하루 중 운동 등 바깥활동 시간 | (| 시간 | 분) |
| 8) 위의 시간외에 기타 시간은 | (| 시간 | 분) |

문 20. 다음 각 항목을 읽고, 항목에 대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골라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취미활동은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1 학생은 주로 누구와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십니까? 하나만 00골라주세요.

- ① 친구 ② 가족 ③ 컴퓨터
④ 게임기(닌텐도, X-BOX 등) ⑤ 기타

문 22. 학생의 집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23에서 문 25번까지는 학생의 컴퓨터, 인터넷, 휴대용 게임기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입해 주세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 0 회**로 기입해 주세요

문 23. 컴퓨터는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4.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터넷은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5. 휴대게임기(닌텐도, X-Box, PMP 등)는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 회)

문 26. 학생은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음

→ 「문 26-1」로 가세요

② 없음

→ 「배문1」로 가세요

문 26-1. 휴대폰 요금은 한달 평균 얼마 정도를 내나요?

① (월

원)

② 잘 모르겠음

문 26-2. 휴대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①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위해 ② 무선 인터넷을 하기 위해

③ 음악을 다운받거나 듣기 위해 ④ 게임을 하기 위해

⑤ 기타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5.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6. 귀하의 학업 성적(2011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귀하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8.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nalysis of Children · Youth Living Status by Family Typ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
– Focused on Children · Youth in Family with Parents –

This study aims to seek measures for the children and youth to grow as stable and healthy people in the society by understanding the living status of children · youth by various family types, investigating problems in their living, and seeking social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 youth by family types. Major methods of research include document research, surveys, case studies, consulting of specialists and holding of workshops.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 total of 9,396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e analysis of children · youth living status by the family types. First of all, the cases of families with both parents showed more positive results compared with other family types in most of surveyed areas such as lives in a family and a school. Therefore, in the cases of both parents family, preventive welfare is necessary such as measures to prevent family problems caused by working parents and to prevent divorces, separate living or violence in family.

The most problematic family type is one-parent family. Children in such a family type are confirmed to need more concerns and considerations in all surveyed areas compared with children in other types of families as they showed lower satisfaction in the family and school and lower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events and also form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An interesting result is that children, youth in families raised by grandparents show remarkably positive results compared with the families with one parents. Of course, it is inevitable to show less satisfaction in the family relationship compared with the families with both parents.

It is because they are separated from the direct love from parents. However, children in families raised by grandparents don't generally show serious deviation phenomena, and in most of human relationship, they are confirmed to show similar to or even more positive than families with both parents. Especially,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local community shows more positive results than the children in families with both parents. Most of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participation rate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showed the lowest in terms of anti-social behaviors such as violence, threat, extortion, and curse related with criminal behaviors. Furthermore, it is also confirmed that in terms of serious criminal behaviors such as violence or extortion, children with grandparents show 2~3 times lower rate than children in families with one parent. Such results show important implication that the role of grandparents is not really small in the education of children · youth.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politic suggestions have been presented tailored to family types to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types.

Key Words : family type, family structure, children · youth living status, family with both parents, single-parent family, family raised by grandparents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해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권순용·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최창욱·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조남익·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김경준·성윤숙·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현·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김기현·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김현철·안선영·최창욱·전명기·이진원·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최인재·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김영한·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양계민·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김기현·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임희진·장근영·김혜영·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장근영·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이혜연·황옥경·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김경준·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모상현·천정웅·김지혜·김명화·오정아·박경현·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김경준·모상현·김세광·박선영·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경준·오해섭·박정배·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종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종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지울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집 필 진

이민희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 교수)

정일교 (카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유진 (Oregon State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 대표)

박영숙 (지역아동정보센터 · 단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무관)

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과장)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과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교수)

조양자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 회장)

최승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무관)

황혜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교수)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 센터장)

홍성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연구보고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대책 연구
-양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리드릭 전화 02)2269-191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53-0(93330)

978-89-7816-952-3(세트)